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2

현안분석

-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기획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일본, '법인세 면제 회사허용' 추진 외

정책흐름

2004년 국세수입 실적 외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Ⅲ편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작은 정부와 일 잘 하는 정부 / 옥동석
연안분석	6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 노영훈
	26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 박형수
	54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 김진수
기획	82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 원중학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94	일본, '법인세 면제 회사 허용' 추진 의
정책흐름	105	2004년 국세수입 실적
	109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112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125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재정통계	133	부가가치세 Ⅲ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46	'고령친화산업' 육성 빈틈 없이 추진해야 의

작은 정부와 일 잘 하는 정부

옥동석 / 인천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1993년의 김영삼 정부와 1998년의 김대중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기치로 내세웠다. 제3·4·5공화국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또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젓는(rowing) 일을 직접 하면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만, 방향잡는(steering) 일에 충실하면 무리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이들 두 정부와 달리 2003년의 참여정부는 정부개혁의 비전과 목표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일 잘 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작은 정부’를 버렸다. 왜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버렸는가? 그것은 과거 정부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수 차례 정부조직 개편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오직 ‘인력감축’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는 인력감축을 의미하고, 정부개혁은 인력감축의 목표를 하향식으로 할당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의 이러한 우를 밟지 않으려 하였다.

참여정부의 진단대로 과거의 정부개혁은 ‘개혁대상으로서의 공무원, 집권적·하향식 개혁, 일회적·성과과시형 개혁, 일방적·주입식 개혁’이었다. 참여정부는 이를 대신하여 ‘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 분권적·상향식 개혁, 상시적·내실추구형 개혁, 자기학습적 개혁’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개혁의 올바른 원칙들이긴 하지만 정부개혁의 비전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작은 정부’의 비전을 버렸고 또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들만 강조하였다.

과거 정부개혁의 문제점은 그 목표와 수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한 집행에 있었다. ‘작은 정부’를 위해 선진국에서 채택하였던 다양한 ‘효율성 제고’ 개혁 프로그램들을 일관성 있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혁 프로그램들로는 민영화, 외부위탁, 시장성 테스트, 책임운영기관, 성과협약, 기능조정, 암묵적 보증폐지 등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들을 추진할 때에는 ‘집권적·하향식 개혁’이 아니라 ‘분권적·상향식 개혁’이 되도록 추진 방법과 추진체계를 사려 깊게 구축하여야 한다.

참여정부가 ‘작은 정부’를 포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일 잘 하는 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참여정부가 채택한 몇 가지 제도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매년도 예산편성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하고, 2년 여의 준비 끝에 ‘국가재정운용계획(2004년~2008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은 역사적 전기로 기록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국가는 분야별 금액한도 내에서 세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분야별 재정금액을 준수하는 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이러한 고통은 효율성 제고의 큰 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야별 재정금액은 ‘총액배분 자율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한정된 금액 자체를 위반한다면 국가재정의 방만함과 무질서가 재현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발간된 후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수정 보완(rolling plan)을 명분으로 큰 틀의 변경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재정총량 규모와 분야별 배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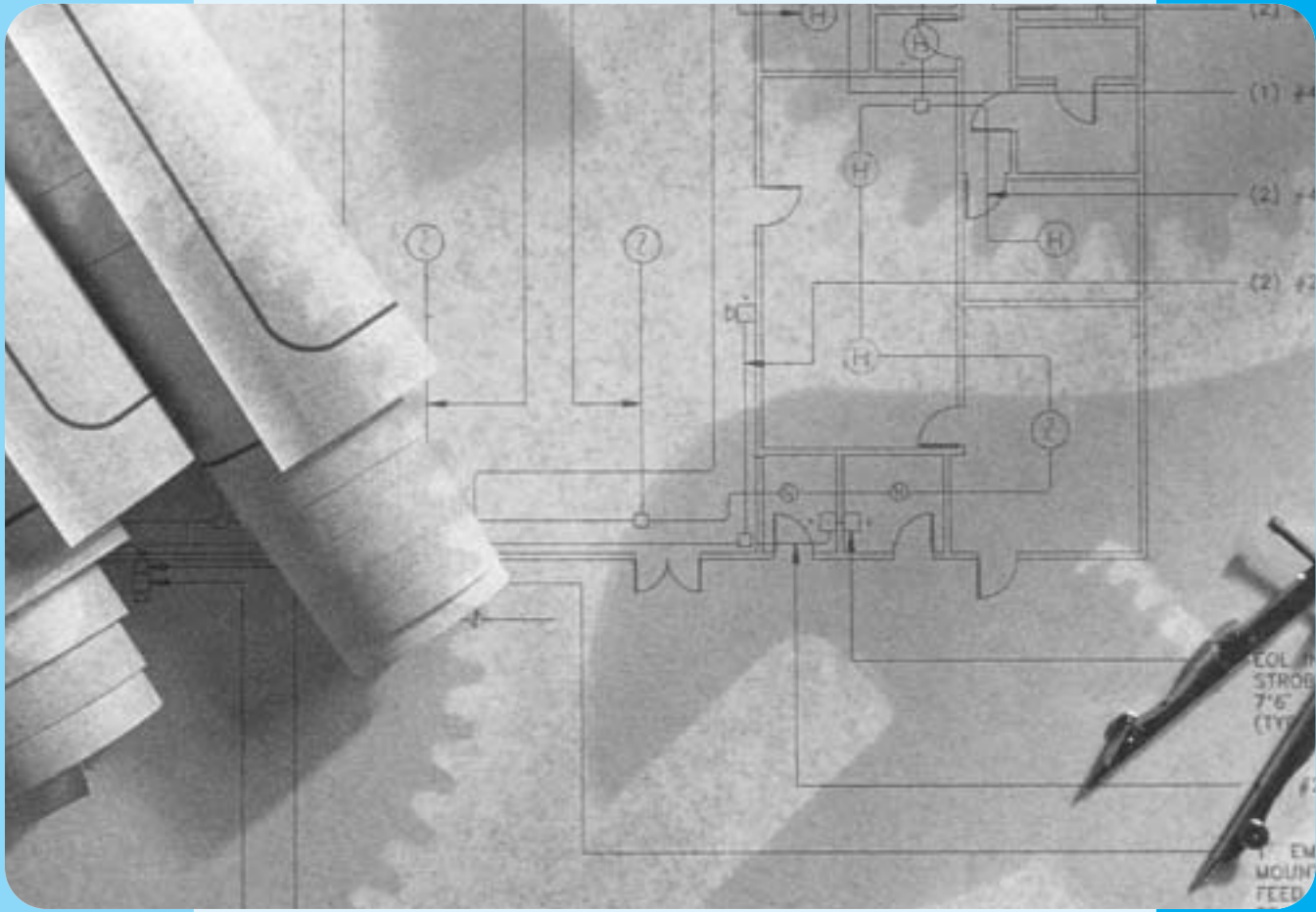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또다른 개혁작업으로는 1년 전에 설치한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를 개편하여 재정범위와 재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개혁작업은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지 못했으며, 수 개의 중앙관서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총괄 조정되지 못하였고, IMF 등의 국제기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정부회계제도는 사업의 원가정보, 예산 이외의 자원 정보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변화를 유인하는 가장 큰 개혁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 범정부적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은 회

계제도의 개혁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조급함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과실은 그것을 시작한 정권이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또 다른 정부개혁 과제는 재정의 지방분권이었다. 그 결과로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재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특별회계의 폐지와 신설은 큰 유인을 변화시키는 큰 개혁으로 보기 힘들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원방식을 지방의 자율선택권 보장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이는 예산편성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의 한 가지 변형에 불과하다.

국정운영방식을 권위주의적 지시 통제에서 민주주의적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부단히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포기하고 ‘일 잘 하는 정부’를 선택하였다. 재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선택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이들 개혁과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꾸준히 추진된다면, 참여정부가 비록 ‘작은 정부’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개혁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KIP



EOL IN
STROB
7'6"
(TY

EM
MOUN
FEED

현안분석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선임연구위원 (yhrut@kipf.re.kr)

I. 서론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1월 1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안, 2004. 11. 18)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8)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기존 세목의 세법개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세제개혁이지만, 추후 병행하여 추진될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과세 완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종합부동산세 세수배분 관련 지방재정법 등의 개편을 감안하면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가히 조세개혁(tax reform) 차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함께 토지자산에만 국한된 제한적 粗부유세(gross wealth tax)로 도입된 종합토지세가 기존의 재산세와 짝지워진 이래, (지방)부동산 보유세제의 틀이 (지방)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보유세 체계(system)로 개편되는 것이다.

본고는 2005년 1월 현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기초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당국이 향후 1년여 이상 추진할 추가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모든 조세정책의 개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가능성은 ① 정치적 수용성 ② 행정적 집행가능성 그리고 ③ 경제적 관점에서의 견고성에 달려 있는데, 본고는 ②와 ③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지만 중부세는 일차적으로 (지방)재산세 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두 개의 지방세 체계로 14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로서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지방세로서의 지방재정적 역할 문제, 부동산시장 대책으로서의 정책수단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왔다.

부분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서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세법은 세제가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수단 즉, 조세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발표된 법률안의 내용이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두 개의 지방세 체계로 14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로서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지방세로서의 지방재정적 역할 문제, 부동산시장 대책으로서의 정책수단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무엇을 문제로 보아 개편하는 부동산 보유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보유세제 개편안의 기본 성격이 결정되게 된다. 이 점에서 중부세법안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부세를 신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액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고액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어떤 유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부세 신설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를 측면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보유세제 개편내용의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매년 7월말과 9월말에 재산세를 1차로 정 부부과결정방식에 의해 과세한 후, 12월 15일에 (인별합산한) 재산세과표가 기준금액 이상 인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에 한해 2차로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해 과세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과세대상유형(종합 및 별 도)에 따라 관내합산하여 각각 3단계 저율누진과세하는 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시·군·구별로 그리고 물건별로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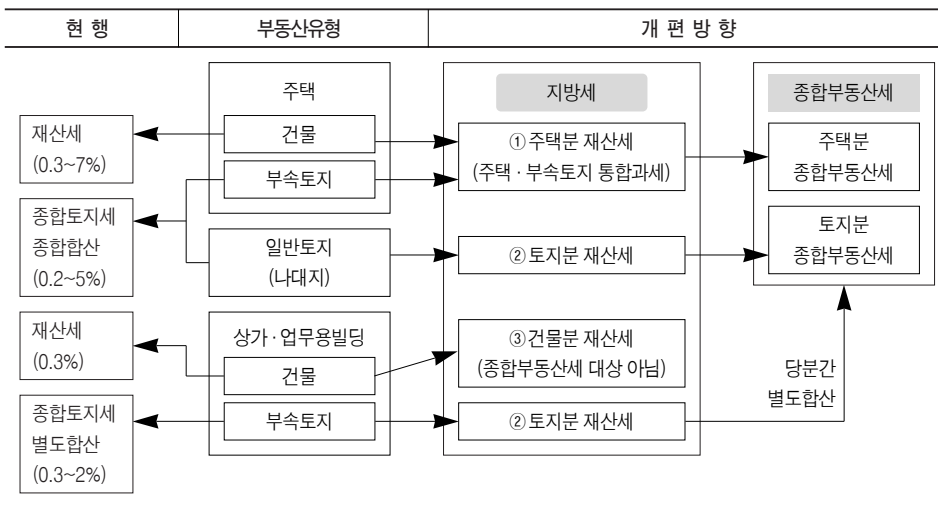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고액 부동산보유자 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고액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금액과 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한정하고 있다. 즉, 시가표준액의 50%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제할 경우 인별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시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시가로) 40억원 이상 소유자가 과세대상자이다. 결국 부동산자산 의 고액 보유정도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부동산 유형별로 차등기준금액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의 부동산보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

결국 매년 7월에 부과되던 기존의 건물만에 대한 재산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로 바꾸면서, 매년 10월에 지방세답지 않게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제의 틀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성격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축물에 대한 기존의 재산세 가 내포하고 있던 핵심적 문제점이었던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르는 ‘시가 대비 불공평성’ 논란을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통합재산세로 과세함으로써 해결 했다. 또한, 종래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한 토지가액을 인별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 극히 국세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징수액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매우 특 이한 토지보유세였는데, 주택을 추가하여 인별합산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넓혀 (부동산 중심 의) 부유세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 부동산 보유세인 (건물)재산세+종합토지세 체계를 [그림 1] 과 같이 지방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와 국세 종합부동산세 체계로 개편하는 접근방법이 기존의 세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정하는 방법론과 기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매년 7월에 부과되던 기존의 건물만에 대한 재산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로 바꾸면서, 매년 10월에 지방세답지 않게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제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제의 틀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성격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첫째,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재산세 및 중부세) 부과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통합과세하고, 영업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분리과세제도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이다¹⁾. 또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물건별로 지방세 과세하고 중부세 과세단계에서 인별합산한 후 일정기준금액 이상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세수배분공식이 세법상에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건물)재산세+종합토지세 체계와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별합산 후 중부세가 과세되는 대상에서 영업용 부동산의 건물부분은 제외되고, 건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분 중부세가 과세된다. 영업용 부동산의 건물은 일종의 생산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물자본(building capital)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토지와 건물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로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양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분된 과세평가액과 각자에 부과되는 세부담액의 합계가 토지·건물을 합한 부동산 전체의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과 대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는 노영훈(1997)을 참조바람.

셋째, 토지만 존재하는 나대지는 토지분 재산세 및 종부세가 모두 과세되는데,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용도별 차등과세제도인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의 토지구분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제182조에 과세대상의 구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1〉, 〈표 2〉, 〈표 3〉은 각각 나대지,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주택에 대해 기존의 보유세인 종합합산 종토세, 별도합산 종토세, 종토세 및 (건물)재산세 부담이 법정명목세율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각 표의 오른쪽 편에 있는 개편안은 1차적인 지방재산세 부과로 끝나는 경우와 2차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평균세율을 계산하였다.

〈표 1〉 종합합산대상(나대지 등) 토지보유세 세율 변화

(단위: 억원, %)

종합합산 종합토지세(현행)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종부세(개편안)		
과표(X)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과표(X, X) ² 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X \leq 0.2$	0.2	0.2	$X_i \leq 0.5$	0.2	0.2
$0.2 < X \leq 0.5$	0.3	0.2~0.26	$0.5 < X_i \leq 1$	0.3	0.2~0.25
$0.5 < X \leq 1$	0.5	0.26~0.38	$1 < X_i$	0.5	0.25~0.4375 ¹⁾
$1 < X \leq 3$	0.7	0.38~0.59	$3 < X \leq 10$	1.0	0.42~0.525
$3 < X \leq 5$	1.0	0.59~0.76			
$5 < X \leq 10$	1.5	0.76~1.13			
$10 < X \leq 30$	2.0	1.13~1.71			
$30 < X \leq 50$	3.0	1.71~2.23			
$50 < X$	5.0	2.23~5.0	$10 < X \leq 50$	2.0	0.525~1.27
			$50 < X$	4.0	1.27~3.5

주: 1)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방세 과세분 전액공제의 효과에 의해 법정세율 미만에서 수렴함.

2) X_i 과 X는 각각 인별 기초자치단체 관내합산 과표액과 인별 전국합산 과표액임.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용도별 차등과세제도인 종합합산대상과 별도 합산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의 토지구분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제182조에 과세대상의 구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2〉 별도합산대상(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토지보유세 세율 변화

(단위: 억원, %)

별도합산 종합토지세(현행)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중부세(개편안)		
과표(X)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과표(X _i , X) ¹⁾ 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X ≤ 1	0.3	0.3	X _i ≤ 2	0.2	0.2
1 < X ≤ 5	0.4	0.3~0.38	2 < X _i ≤ 10	0.3	0.2~0.28
5 < X ≤ 10	0.5	0.38~0.44	10 < X _i	0.4	0.28~0.4
10 < X ≤ 30	0.6	0.44~0.55	20 < X ≤ 100	0.6	0.34~0.55
30 < X ≤ 50	0.8	0.55~0.65			
50 < X ≤ 100	1.0	0.65~0.82	100 < X ≤ 500	1.0	0.55~0.91
100 < X ≤ 300	1.2	0.82~1.07	500 < X	1.6	0.91~1.6
300 < X ≤ 500	1.5	1.07~1.24			
500 < X	2.0	1.24~2.0			

자료: 1) X_i 과 X는 각각 인별 기초자치단체 관내합산 과표액과 인별 전국합산 과표액임.

〈표 3〉 주택분 토지 및 건물세부담의 변화

(단위: 억원, %)

현 행						개 편 안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			주택분 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		
과표(X)구간	세율	법정세율	과표(X)구간	세율	법정세율	과표(X _i , X) ¹⁾ 구간	세율	평균세율
X ≤ 0.12	0.3	0.3	X ≤ 0.2	0.2	0.2	X _i ≤ 0.4	0.15	0.15
0.12 < X ≤ 0.16	0.5	0.30~0.35	0.2 < X ≤ 0.5	0.3	0.2~0.26	0.4 < X _i ≤ 1	0.3	0.15~0.24
0.16 < X ≤ 0.22	1	0.35~0.53	0.5 < X ≤ 1	0.5	0.26~0.38	1 < X _i	0.5	0.24~0.44
0.22 < X ≤ 0.3	3	0.53~1.19	1 < X ≤ 3	0.7	0.38~0.59	4.5 < X ≤ 10	1.0	0.44~0.75
0.3 < X ≤ 0.4	5	1.19~2.14	3 < X ≤ 5	1.0	0.59~0.76			
0.4 < X	7	2.14~7.00	5 < X ≤ 10	1.5	0.76~1.13	10 < X ≤ 50	2.0	0.75~1.75
			10 < X ≤ 30	2.0	1.13~1.71	50 < X	3.0	1.75~3.0
			30 < X ≤ 50	3.0	1.71~2.23			
			50 < X	5.0	2.23~5.0			

자료: 1) X_i 과 X는 각각 시군구 관내 개별주택물건 과표액과 전국인별합산 주택과표액임.

Ⅲ. 세제 및 세정 측면의 쟁점사항들

1. 세부담 형평성의 기준과 형평성 효과

종부세법 신설 법률안과 정부발표문에 따르면 ‘고액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형평성의 개념에 따라서 형평성 제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개별물건별 시가 대비 세부담 형평성 제고는 종부세 도입 그 자체보다는 주택분 재산세의 (토지·건물)통합과세제도로의 전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과세 평가행정(assessment administration)의 질에 의존할 것이다.

둘째, 동일 부동산유형과 동일 이용용도에 대한 법정세율상 누진도는 유지될 수 있으나, 인별 부동산소유가액 대비(수평적) 세부담 형평성은 재산세의 이용상황별 그리고 재산세·종부세의 유형별 차등과세 요소로 인해 반드시 제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쉬운 예로 나대지 6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 주택 9억원이라는 기준금액들에 조금씩 못미치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가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시장가치로서의 부동산가액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인세로서의 부동산 보유세액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부세 쪽에서 사업용 건물가액이 제외되고 또한 유형별 기준금액이 각기 다른 것이 불공평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결국, 인별 부동산소유의 분위별 분포에서 동일분위(그룹) 내에 속한 소유자들의 실효세율 들간의 편차가 적어지는지에 의해 형평성이 판별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또한 개편안 내의 재산세 및 종부세 세제구조가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셋째, 경제적 처지나 형편(economic position)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척도(measure)로서 사용되는 ‘경제인(가구)의 소득’ 대비 수직적 형평성 또는 누진도는 소득분포의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실효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²⁾, 소득과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제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표현하여, 연봉 3억원의 고소득자이면서 10억원의 부동산자산가가 부담하는 보유세액이 연봉 3천만원이면서 10억원의 부동산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액과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의 문제이다.

2) 어떤 세금의 누진성(progressivity)은 수직적 형평성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정들하에서 누진적 세율구조를 갖게 되면 수직적 형평성을 대체로 만족시키게 됨.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시장가치로서의 부동산가액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인세로서의 부동산 보유세액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부세 쪽에서 사업용 건물가액이 제외되고 또 한 유형별 기준금액이 각기 다른 것이 불공평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기준금액 설정에 따른 문턱점(threshold)효과 문제는 현행의 종합토지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금액 설정의 근거 및 성격, 그리고 기준금액의 적정성과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설정된 기준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과다보유자에게만 추가로 국세로서 과세하는 근거(rationale)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데, 만일 종부세를 일종의 부동산에만 국한된 粗부유세로서 과세 성격을 규정한다면³⁾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기준금액을 넘는 고액 부동산보유자에게 추가과세 또는 중과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이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계기가 구입당시에는 기준금액에 훨씬 미달했었는데 거래시장가격이 올라버린 경우처럼 소유자 자신의 경제행위(예, 투기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종부세가 기준금액 이하로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소유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세계라면, 1주택 자가점유자나 생산용 토지소유자에게도 금액기준 일정금액 이하의 저가 부동산으로 대체하도록 유인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혹자는 소유한 부동산가액의 상승은 미실현이득이지만 세부담 능력에 대한 일종의 대리변수(proxy)로 보아 추계과세(presumptive taxation)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몇 년간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추후 처분시에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⁴⁾.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를 자가점유 부동산에 대한 귀속임대료(imputed rent)를 외형 부동산가액에 기초하여 소득세로 추계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격규명할 경우,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범위 및 기납부 부동산임대소득세와의 상계 허용 여부, 그리고 인별합산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 이렇게 부동산만에 대한 조부유세로 규정하면, 개인의 부를 구성하는 타 자산(예, 금융자산 등)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채(예, 주택구입자금대출금 및 주택담보대출금)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됨.

4) 가격상승이 많았던 부동산들을 주 대상으로 보유세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고자 했던 과거의 시도는 1990년대 초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토초세는 기본적으로는 미실현자본이득세를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었음.

특히, 인별합산한 부동산 과세평가금액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개별물건 별로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동일 유형 내에서도 과표평가율 균일성이 더 높아야 하고(예,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수도권 택지 vs. 산간 입야 등) 정부가 결정고시한 공적 평가액(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이 정확한지도 시비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턱점 설정에 따른 세부담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시·군·구별 및 관내 분산소유 정도에 따라 중부세 과세대상이면서도 지방세(부과)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세부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⁵⁾.

2. 경제적 비효율성

종합부동산세는 수직적 세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책목적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평성을 추구한 과거의 종합토지세와 달리 부동산 유형별 차등기준금액 설정이라는 문턱점 효과 때문에 더 큰 조세회피 행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초과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나대지 보유자가 중부세 부과기준일 전에 건물을 지으면 과세대상 유형(category)이 일반토지에서 부속토지로 변경되어 중부세 부과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쉽게 총체적 보유세부담을 줄이거나 중부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신축과 같은 소유자의 행위변화로 보유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신축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원래 의도였다면 더욱 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훼손의 가능성이 높다. 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의 토지이용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적정 개발시점 이전의 조기개발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⁶⁾.

재산세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중과세의 논란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체적 보유세부담이 기준금액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여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영업용 건물은 건물재산세 부

5) 이러한 현상은 세법조문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결정하면서 이중과세 및 문턱점효과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재산세 세액공제는 부과세액의 합계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합산과표액을 가지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개별 재산세 과표에 해당하는 개별 재산세 부과액의 합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함.

6) 1990년 초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도시 외곽의 여유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토초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저밀도건물을 양산하게 만들어 적정 개발시점에 해당하는 1990년대 후반에는 저층건물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이 부각된 경험을 갖고 있음.

나대지 보유자가 종부세 부과기준일 전에 건물을 지으면 과세대상 유형(category)이 일반토지에서 부속토지로 변경되어 종부세 부과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쉽게 총체적 보유세부담을 줄이거나 종부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담으로 끝나고 추가적인 종부세 과세가 없으므로 세부담이 기준금액(threshold point)을 전후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이 기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유형별로 기준금액 이하가 되도록 부동산자산을 재구성한다든가 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를 통해 명의이전을 하는 절세전략은 항상 이용가능하다. 또한 시가 대비 저평가되는 유형(예,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구성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종부세의 초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경제적인 효율성 논의는 아니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살펴보자. 건물자본을 제외한 부속토지가치 또는 부지가치만에 대한 보유과세는 그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인 토지에 대한 과세이므로 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적고 징세과정 중 왜곡을 최소화시키므로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이 적다는 의미의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뿐만 아니라, 해당 부속토지의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토지 용도(the best and the most efficient use)’로 과세평가된 가액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된다면 최선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토지이용의 효율성(efficient use of land)’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는 재산세를 토지에만 과세하거나 토지를 증과하는 ‘부지가치세(site value tax)’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설득력을 얻었다. 즉,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라는 현재 용도(current use)에 따른 토지평가가 아니라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토지 용도’를 상정했을 때의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물자본을 제외하고) 보유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분리하여 평가한 후 과도기에는 건물을 토지에 비해 가볍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재산세를 분리하여 운영해 왔던 기본 취지가 이러한 맥락에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로 그 가능성은 봉쇄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조세분야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던 토지·건물 차등과세를 실현할 경로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막히게 된 셈인데, 많은 국민들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시가 대비 형평성’의 유지를 선호한 데 따른 일종의 정책전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방세제당국이 토지·건물 분리과세가 갖는 ‘효율적 토지이용’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보유세제를 운영했던 데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다.

3. 세무행정(과세평가 및 과세자료 관리업무)의 중요성

납부세액 확보(liquidity) 및 세부담 급증 조정(transitional relief)의 문제는 분납 및 물납, 그리고 (전년 납부세액 대비) '연간인상률 제한'(예, 50%)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후자는 또다른 형평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제195조의 2)은 개별물건별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안(제15조)은 인별로 각각 전년 대비 50%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의 경우 필지별 세액안분을 요하고 2004년을 기준연도로 경과세된 부동산은 세액인상 상한(capping)에 따른 혜택이 누적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원래 재산세부담 조정장치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몇 개주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산세 안전장치(Circuit Breaker)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은퇴노인들 같이 재산세 납부세액 확보에 애로를 겪는 가구들에 대해 세금납부를 위해 집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소득의 일정비율이 넘는 주택재산세액을 주정부 소득세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도 집이 팔릴 때까지 세금납부를 이연해 주는 방법이 재산세액 환급제도보다 형평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세무행정당국의 과세자료 관리업무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의 (건물)재산세는 (인별합산없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의 특성상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과세대장이 관리되었고 비교적 최근에 호환성 등을 이유로 표준화작업을 시작하여 오류자료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인별합산의 전제가 되는 소유자의 인적 특성(예,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지 등) 정보의 오류율이 '일제조사'를 통해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켜야 할 정도로 높으며, '헤도닉(hedonic)가격방법론'으로 주택과세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특성 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산시장(property market)은 그 비효율성 때문에 '진정한 시장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거래가격은 일정범위 내의 가격대(price range)로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conventional view)이며, 이에 따라 과세평가모형이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① 거래당사자들의 수 ② 거래대상자산의 동질성(homogeneity) 정도 ③ 거래시장 내의 정보 등을 들 수 있는데 토지시장, 주택시장, 업무용 부동산시장 등이 이들 측면에서 모두 차별화된다. 특히 주택과세평가모형의 개발에 있어서 주택이 완전효율적 시장에 가까운 유형의 부동산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묵시적 시장(implicit market)을 상정하여 헤도닉가격결정 모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예, Lancaster(1971) 및 Rosen(1974)).

그러나 당장 내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과표산정업무를 위해서는 현재

납부세액 확보(liquidity) 및 세부담 급증 조정(transitional relief)의 문제는 분납 및 물납, 그리고 (전년 납부세액 대비) '연간인상을 제한'(예, 50%)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후자는 또 다른 형평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가격정보들의 종류와 그 내용, 그리고 한계점들을 분석한 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거래가격결정 모형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가능한 정보들로는 i) 시장 내에서 관찰된 반복매매가격(repeat sales) 자료 ii) 지수(index) 자료 iii) 감정평가액(appraisal) 자료 iv) 과세표준액(assessment) 자료들을 들 수 있다. 이 중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는 1년에 1~2차례밖에 고시되지 않는다는 비빈번성(infrequency) 문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동 내의 주택단위들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건물과 부속토지 지분을 통합하여 '시장거래가격비교법'에 의해 일정비율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세분화된 단지별 가격변동을 자료로 최신화(update)할 경우 평가모형 설정이 수월할 것이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는 i) 주택 부속토지의 매년 6월 30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액 ii) 주택 건물에 대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및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iii) 주변지역 유사 단독주택들의 거래사례가격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종합토지세 부과자료 중 단독주택 유형들에 대한 관찰치만을 추출하여 개별공시지가액을 최신화한 후 이를 기초로 토지가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주택 건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입한 건물가액을 합쳐 시장거래사례가격들과 부합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론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지역적으로 중개업소 등을 통해 수집한 단독주택 거래사례들의 빈도 및 범위에 따라 평가모형이 영향을 받기는 하나, 표준지를 사전적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후 개별지로 확대하는 공시지가방법론보다는 통계학적으로 우월할 것이다⁷⁾.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대체로 건축된 지 7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건물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액으로만 거래된다는 관행을 활용하여 건축연도와 부속토지의 면적 및 공시지가액으로 과세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신축주택들에 대한 평가모형의 개발이 난제로 남게 된다.

한편 토지의 경우 기존의 공시지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공시지가액 자료들을 이용

7)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토지만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공시를 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으로 국회에서 12월 29일 통과되었음. 이는 부동산 보유 과세 부과기준과 부동산실거래가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목적으로 개정됨.

할 수 있으나, 14년간 단 한 차례도 개별공시지가액의 거래가격 대비 적정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모형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주기적으로 모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및 세원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보통 부과징수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자가 부동산 유형별 합산가액이 일정기준금액을 넘어 중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협력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별 관내합산하여 물건별 세액을 안분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만 주택분 재산세처럼 전년 대비 세액상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일일이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인별합산 과표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중부세액의 세액상한 금액과 대비할 수 있다. 과거 3천여만건에 달하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 적이 없던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및 행자부와 긴밀한 세정협력관계를 과세평가 및 자료관리 측면에서 유지해야만 기준금액 초과 소유자들로부터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무사 등 납세대리인들은 중부세 과세대상 예정인원 6만여명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세제당국 역시 자진신고납부(self-assessment)라는 이름에 걸맞게 납세자가 스스로 과표 및 세액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안내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도 지방정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국세청이 1차적으로 책임지겠지만 국세심판원의 업무 또한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재정 및 시장 측면의 효과(fiscal and market impact)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재정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세수비중도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국세로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배분 문제와 중앙정부 세제결정권 강화에 따른 지방정부 과세권 및 지출자구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과거 (건물)재산세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에 의해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탄력세율제도를 모든 재산세(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에 대해 확대하여 지방세부담 결정과정에서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은 제도적으로 증대된다. 또한 국세로 징수하더라도 중부세 세액을 지방정부에 재원이전하고 중부세 세제운영권한을 중앙정부부처에서 갖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종토세와 유사하게 비추어질지 모르나 실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 결정에 주도적 역할

인별합산 이전에 이미 하나의 개별 부동산가격이 기준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자본환원화되어 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물량의 감소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도 병존하게 된다.

을 할 때에 비해 중부세의 도입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적 세제기능에 대한 강조가 높아질 것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수배분 기준이 설정된다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본 보유세제 개편의 중장기적 세수효과는, 공적 부동산평가액의 단계적인 상향조정과 함께 부동산관련 (지방)재산세 과세표준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세수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는 지방자치 기능과 지방세 과세자주권이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관련 국세부담은 (거주 및 소재) 지역별로 달라지고, (지방)재산세는 지역별로 달라지지 않고 공통·통일화 되는’ 우리나라만의 국세·지방세제도의 특징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별합산 이전에 이미 하나의 개별 부동산 가격이 기준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부담 증가가 자본환원화되어 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물량의 감소로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도 병존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주택) 관련 세제는 ‘(이미)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각종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로 점철되어 왔는데, 동 세제개편 또한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고시 후 실가과세한다든지,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를 2~3배 높게 낸다든지, 보유세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버린 주택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낸다든지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결국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한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된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버리면 취득자, 양도자, 보유자 모두에 대해 각종 세금을 증과하여 거래를 두절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매물들 중심의 ‘낮은 가격’을 놓고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장대응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맞추어 적기성(timeliness)을 갖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현주의 과세원칙(realization principle)이라는 기본 한계를 갖는 양도소득세를 시장대응수단의 중심으로 사용해 온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과거 1990년대 초의 토지초과이득세 역시 미실현 상태의 자본이득을 보유단계 상태의 보유과세로 정책수단화하려는 시도

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5. 법인납세자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부담 문제⁸⁾

과거 종합토지세의 경험을 통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개편된 보유세제의 효과를 살펴보자.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종합토지세 과세는 높은 과표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최고과표구간인 50억원 초과 계층에서는 실효세율이 1996년의 0.94%에서 2003년의 1.25%로 증가하여 인별합산 누진과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종토세 시행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전반적인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액과표구간의 실효세율을 상당히 높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과표구간 계층에 속하는 납세자는 그 해당인원도 적으면서 이미 매우 높은 실효세율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한계법정세율을 두 자릿수 이상의 세율로 설계하지 않는 한 전반적인 높은 실효세율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유세의 전반적인 실효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은 바로 저액과표구간 내에 속한 소유자들에 적용되는 세율 인상과 세부담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타단체를 포함한 전체 납세의무자들의 2003년 종합합산대상 종토세 과세현황을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실효세율 분포표와 비교하면, 법인 및 기타단체가 소유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들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의 과표구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높게 나타나 법인 등 납세자들이 소유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들의 가액 및 토지과표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억원 초과 토지과표액을 갖는 종합합산대상 법인 등 토지소유자는 개인에 대한 1.25%보다 높은 1.41%의 실효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영훈(2004. 12)을 참조 바람.

중도세 시행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전반적인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액과표구간의 실효세율을 상당히 높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종합합산대상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개인, 2003년)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세율 (%)	과표현실화율 (%)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0,577,694	100.00	4,635,338	100.00	1,670,960	100.00	5,189	100.00	0.11	36.05
~2천만원	8,393,031	79.35	1,612,887	34.80	582,988	34.89	1,166	22.47	0.07	36.15
2천만원~5천만원	1,595,657	15.09	1,363,561	29.42	491,842	29.43	1,156	22.29	0.08	36.07
5천만원~ 1억원	428,512	4.05	800,323	17.27	287,758	17.22	925	17.82	0.12	35.96
1억원~ 3억원	143,366	1.36	604,039	13.03	217,152	13.00	1,061	20.45	0.18	35.95
3억원~ 5억원	11,679	0.11	121,265	2.62	43,535	2.61	293	5.64	0.24	35.90
5억원~ 10억원	4,392	0.04	80,777	1.74	28,964	1.73	271	5.22	0.34	35.86
10억원~ 30억원	965	0.01	39,665	0.86	14,193	0.85	200	3.85	0.50	35.78
30억원~ 50억원	75	0.00	7,938	0.17	2,830	0.17	56	1.08	0.70	35.65
50억원~	17	0.00	4,883	0.11	1,697	0.10	61	1.18	1.25	34.76

〈표 5〉 종합합산대상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전체, 2003년)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세율 (%)	과표현실화율 (%)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0,701,486	100.00	4,945,778	100.00	1,781,916	100.00	7,541	100.00	0.15	36.03
~2천만원	8,481,051	79.25	1,625,881	32.87	587,684	32.98	1,175	15.59	0.07	36.15
2천만원~5천만원	1,612,146	15.06	1,378,089	27.86	497,061	27.89	1,169	15.50	0.08	36.07
5천만원~ 1억원	436,463	4.08	815,940	16.50	293,360	16.46	943	12.51	0.12	35.95
1억원~ 3억원	150,200	1.40	636,218	12.86	228,700	12.83	1,120	14.86	0.18	35.95
3억원~ 5억원	13,264	0.12	138,348	2.80	49,669	2.79	335	4.44	0.24	35.90
5억원~ 10억원	5,754	0.05	107,307	2.17	38,501	2.16	363	4.82	0.34	35.88
10억원~ 30억원	1,978	0.02	86,658	1.75	31,070	1.74	449	5.95	0.52	35.85
30억원~ 50억원	301	0.00	32,906	0.67	11,703	0.66	235	3.11	0.71	35.56
50억원~	329	0.00	124,431	2.52	44,168	2.48	1,752	23.23	1.41	35.50

〈표 6〉과 〈표 7〉은 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유형의 토지들에 대한 개인 및 전체 납세자의 2003년도 종토세부담의 실효세율 및 과표현실화율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2003년 0.13%로 나타나나 법인 등을 포함한 전체납세자는 0.22%로 나타나 법인 등이 소유한 별도합산용 토지가액 및 토지과표액이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개인 및 법인 등의 실효세율은 종합합산대상 토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과표현실화율도 높았다.

법인 등을 포함한 전체 납세자가 소유한 별도합산대상 토지들의 실효세율과 개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는 높은 과표구간 계층으로 갈수록 커져서, 토지를 외연적으로(extensively)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예, 골프장, 유통업 등)의 업무용 토지 소유 법인사업자들은 과세구조상 실효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내재적으로 갖게 된다. 특히 최고과표구간 500억원 초과에 대한 한계법정세율은 2%이지만 평균세율로는 1.24~2%대이며 실효세율로는 0.63% 수준에 달하게 된다.

종합토지세는 과표구간의 상하한금액을 일정금액으로 고정시킨 1989년 이후 15년 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 없이 과표현실화율 제고에만 연연한 결과 세부담이 종합·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간, 개인 및 법인간, 과표계층간 세부담 변화 등을 과표현실화와 함께 모니터링하지 못하였다. 역설적으로 말해, 이렇게 급격한 누진세율 과세구조하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의 길이 없었던 것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매우 보수적으로 토지과표를 운영하게 하여 과표현실화율이 낮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그 과세표준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적용률 결정고시 이외에는 과세자주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국세적 성격의) 종합토지세가 실효세부담이 그리 높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오히려 인별합산 및 급격한 누진구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산보유세 과세행정 실무에서 ①과세평가(valuation)와 ②납부세액 확보(liquidity)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대민행정을 통해 체득한 지방세제 및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토지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낮을 경우 낮은 과표현실화율 정책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종토세 및 (건물)재산세 과세의 시행경험들을 출발점부터 재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토지세 및 비주택 일반건물에 대한 (건물)재산세 기본구조를 (지방)재산세로 흡수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은 '기업에 대한 부유세(Net Worth Tax)'적 개념으

기본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은 '기업에 대한 부유세(Net Worth Tax)' 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분 중부세 부과 범위 문제나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중부세 부과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분 중부세 부과범위 문제나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중부세 부과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⁹⁾.

〈표 6〉 별도합산대상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개인, 2003년)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 세율 (%)	과표 현실화율 (%)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101,823	100.00	1,844,519	100.00	667,220	100.00	2,448	100.00	0.13	36.17
~ 1억원	942,255	85.52	605,941	32.85	219,667	32.92	659	26.92	0.11	36.25
1억원~ 5억원	142,984	12.98	770,161	41.75	278,631	41.76	972	39.69	0.13	36.18
5억원~ 10억원	11,807	1.07	221,103	11.99	79,865	11.97	328	13.42	0.15	36.12
10억원~ 30억원	4,307	0.39	181,144	9.82	65,309	9.79	323	13.19	0.18	36.05
30억원~ 50억원	327	0.03	33,967	1.84	12,236	1.83	73	2.98	0.22	36.02
50억원~100억원	118	0.01	21,194	1.15	7,576	1.14	55	2.25	0.26	35.75
100억원~300억원	24	0.00	9,870	0.54	3,541	0.53	33	1.37	0.34	35.88
300억원~500억원	1	0.00	1,138	0.06	394	0.06	5	0.19	0.41	34.63
500억원~										

9) 개인에 대한 부유세(Net Wealth Tax)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부유세(Net Worth Tax)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한 상태에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영훈(2004. 5)을 참조하기 바람.

〈표 7〉 별도합산대상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전체, 2003년)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 세율 (%)	과표 현실화율 (%)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139,401	100.00	2,743,069	100.00	989,988	100.00	5,915	100.00	0.22	36.09
~ 1억원	964,384	84.64	622,076	22.68	225,485	22.78	676	11.44	0.11	36.25
1억원~ 5억원	152,071	13.35	829,396	30.24	300,037	30.31	1,048	17.72	0.13	36.18
5억원~ 10억원	14,399	1.26	271,783	9.91	98,165	9.92	404	6.84	0.15	36.12
10억원~ 30억원	6,635	0.58	288,675	10.52	104,087	10.51	518	8.76	0.18	36.06
30억원~ 50억원	922	0.08	97,763	3.56	35,115	3.55	211	3.56	0.22	35.92
50억원~100억원	539	0.05	104,014	3.79	37,212	3.76	277	4.69	0.27	35.78
100억원~300억원	305	0.03	137,022	5.00	48,992	4.95	473	8.00	0.35	35.75
300억원~500억원	70	0.01	75,182	2.74	27,136	2.74	318	5.37	0.42	36.09
500억원~	76	0.01	317,158	11.56	113,760	11.49	1,988	33.62	0.63	35.87

6. 이중과세 등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

이중과세금지를 규정한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개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객체가 동일하다고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유과세의 대상은 ‘경제인(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행위’ 또는 ‘소유자의 재산권’이므로 보유단계 중 인별합산 여부 및 범위가 다르다면 (지방)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방정부 재산세부과분에 대해 완전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경제인의 행위 즉, 일정금액 초과 특정부동산 소유행위에 대해 이중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은 과세에 있어서 평등이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및 과세평가 수준의 차이 측면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가 사회현실을 감안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 대비 과세평가 균일성의 문제는 과세형평성이나 비례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세당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부동산평가모형을 개발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KIP**

보유과세의 대상은 '경제인(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행위' 또는 '소유자의 재산권' 이므로 보유단계 중 인별합산 여부 및 범위가 다르다면 (지방)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이 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노영훈,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월간조세』, 2005년 2월호.
- _____,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4. 12. (발간예정)
- _____,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15, 한국조세연구원, 1997. 12.
- _____, “종합토지세의 시행경험과 평가”, 1999년 춘계국제학술회의, 한국재정학회, 1999. 3.
- _____,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과 조세개혁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원고, 2004. 5.
- Lancaster K., *Consumer Demand : a New Approach*,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1.
- Rosen, S.,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1974, pp. 34~5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박형수 연구위원 (hspark@kipf.re.kr)

I.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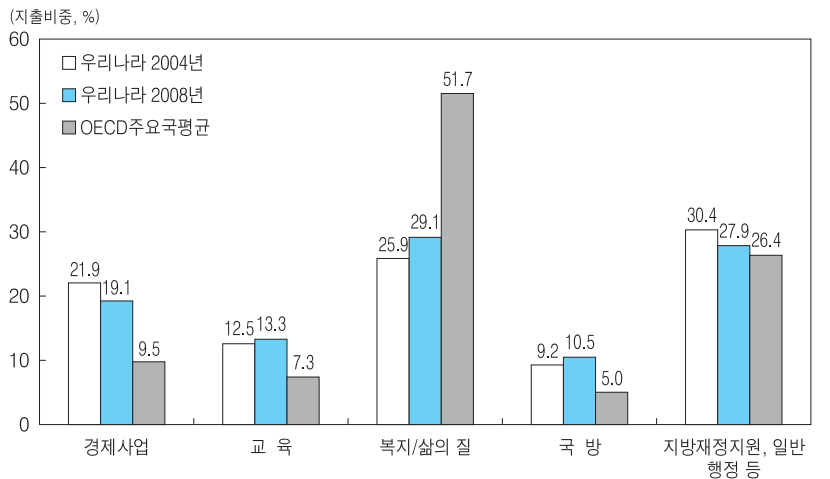
정부는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자기반을 확충하면서 재정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복지·국방·지방재정 분야는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정부지출의 2004~2008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6.3%인데 그 중 경제사업 지출은 2.9%, 일반행정 분야는 2.0%에 그치는 반면, 교육 분야는 7.9%,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는 9.5%, 국방 분야는 9.9%, 지방재정지원 분야는 8.3%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업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복지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그림 1]의 OECD 주요국과의 통계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의 ‘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물론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재정통계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OECD 주요국과의 통계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의 '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물론 분야별 자원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재정통계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자원배분 계획



주: 경제사업(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공적자금 상환 제외), 복지/삶의 질(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주택 등)

그런데 이러한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를 국가간에 비교할 때에는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국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과 분야별 자원 배분에 관한 재정통계를 비교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합산(특히 단순 합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일반정부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한 순계기준으로 합산)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치안·소방·교육¹⁾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선진국에서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출통계만을 놓고 국제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치안·소방·교육 분야의 지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지방정부 지출을 포함한 일반정부

1)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초등 및 중등교육을 교육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 재원조달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출분류상 중앙정부 지출로 나타난다.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지출비중이 높은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규모는 포함하는 정부기관의 범위 및 통계편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제비교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재정통계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IMF의 통합재정 통계(GFS)와 UN 및 OECD의 국민계정(SNA) 통계는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정부지출에 포함되는 거래, 회계기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들 통계마저도 최근까지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웠다. SNA 통계는 통계편제 방식이 SNA 1986 기준에서 SNA 1993 기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통계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GFS 통계도 우리나라 통계에는 지방정부가 제외되어 있고 통계작성 기준도 외국과 달라 국제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듯 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를 일반정부 기준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차례에 걸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004 KIPF 재정포럼(2004년 3월)에서 발표한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GFS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최근 진행중인 KDI의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는 GFS에 수록된 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단순합계 통계를 우리나라 SNA 통계와 직접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통계자료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4년 9월 OECD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 - 2004 Edition*(2004년 9월 발표)을 통해 일부 OECD 국가들(우리나라 제외)의 SNA 1993 기준에 의한 기능별²⁾ 재정지출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를 공표하면서 SNA 1993 기준에 의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기능별 구분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 발표된 국내외 통계들을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등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국제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2) OECD 및 한국은행의 통계에서는 '기능별' 재정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부나 재정학계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별' 재정지출로 표현하기로 한다.

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를 일반정부 기준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II.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1. 재정지출의 분야별 분류기준

재정지출의 분야별 분류를 위한 국제기준으로는 국민계정 통계 작성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정부기능 분류’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가 있다.

COFOG는 UN의 국민계정 작성 매뉴얼 중 *The SNA 1993* 제18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1999년 개편 이후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³⁾.

SNA 통계 이외에 IMF에서 발표하는 통합재정 통계에 포함되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구분 통계도 UN의 COFOG를 따라 작성되고 있다⁴⁾.

2. 국민계정에 의한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이제 국민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통계에 수록된 분야별 재정통계에 대해 살펴보자. SNA 통계에는 COFOG에 따른 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연간 통계가 “Expenditure of general government by function”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3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18개 OECD 국가들⁵⁾의 경우에는 OECD가 SNA 1993 기준에 따라 최초로 작성한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2004 Edition*(2004년 9월 발표)에 수록되어 있다.

3) 각 분야에 포함되는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http://unstats.un.org/unsd/cr/> 참조.

4) IMF에서 발간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중 Chapter 6 “Expense”의 Table 6.2 : Classification of Expense by Function of Government를 참조.

5)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nited Kingdom 등 18개국이다. 국제비교에서 빠질 수 없는 미국은 관련 재정통계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8개국 중 14개 국가⁶⁾에 대해서는 기능별 재정지출 통계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구성하는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민계정」에 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의 기능적 분류에 대한 연간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2004년 11월에 발표된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SNA 1993 기준으로 이행을 반영한’ 국민계정 통계에서는 부속표 중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II)’에 10개 정부기능별 지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는 OECD 통계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SNA 1993 기준에 따르면 국민계정상의 재정지출에는 최종소비지출(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중간소비), 보조금, 사회보장수혜금, 이자, 기타경상이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자본이전,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이 포함된다⁷⁾. 반면, 우리나라 통계는 재정지출 항목 중에서 최종소비지출, 보조금, 사회보장수혜금, 기타경상이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자본이전만 정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4.8조원 및 -0.4조원 등 총재정 규모의 2.5%에 달하는 이자 및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항목을 SNA 1993 기준에 따라 각각 ‘일반공공행정’ 부문 및 ‘경제’ 부문에 포함시켜 OECD 발표 통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국민계정」 통계를 수정하여 이용함으로써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3. 통합재정에 의한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이러한 국민계정 통계 이외에 기능별 재정지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 통계로는 IMF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합재정 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가 있다.

그러나 국민계정 통계와 통합재정 통계상의 재정지출은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정부지출에 포함되는 거래, 회계기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정부기관의 범

6) 18개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등 4개국이 제외되었으며, 노르웨이 및 영국은 사회보장기금이 누락되어 있음.

7) Total expenditure=intermediate consumption+compensation of employees+subsidies+interest+taxes+social benefits and social transfers in kind(via market producers)+current transfers and capital transfers(payable)+adjustment for the net equity of households in pension funds reserves+gross capital formation and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non-produced assets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최근에 발표한 통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국민계정」 통계를 수정하여 이용함으로써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또다른 국제적 재정통계인 「통합재정 통계」는 정확한 국내외 비교에 많은 문제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⁸⁾, 정부유자 등 금융거래에 대한 포함 여부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국민계정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일부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합재정 통계 편제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다.

IMF 회원국들에 대한 기능별 재정지출 통계는 IMF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GFSY)의 Table 7 “Outlays by Functions of Government”에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는 GFS 2001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능별 재정지출은 SNA 1993 기준인 COFOG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정부(각급정부간 거래를 차감한 순계기준)와 각급정부의 통계가 모두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정부 또는 중앙정부만의 기능별 재정지출 통계를 제시하거나 각급정부의 통계만을 발표하고 일반정부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경제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통합재정수지』의 표 3. “중앙정부 지출 및 용자지출의 기능적 분류”에 관련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나 GFS 2001 기준과는 크게 차이가 나 국제비교시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GFS 1986 기준⁹⁾에 따라 통합재정 통계를 편제하고 있으며, 아직 지방정부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반정부’에서 ‘비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해서만 분야별 분류를 하고 있다. 또한 통합재정상의 지출규모는 지출총액에 순유자(용자지출에서 용자회수를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분야별 분류에서는 용자지출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GFS 통계의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NA 통계만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8)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통합재정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계정 통계에는 포함되고 있는 반면, 통합재정 통계에 포함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국민계정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9) GFS 1986 기준은 SNA 1968 기준과 같이 14개 부문으로 재정지출을 분류하고 있어, GFS 2001 기준인 SNA 1993 기준에 따라 10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작성된 IMF 통계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Ⅲ.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1. 2002년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OECD 국가 중에서 통계가 발표된 18개국과 비교한 [그림 2] 및 <표 1>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재정지출 대비 '경제업무' 부문의 비중은 25.5%로 18개 OECD 국가 평균 10.2%의 약 2.5배, '국방' 부문도 10.2%로 OECD 평균(3.2%)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OECD 국가의 절반(25.2% 대 46.6%)에 불과하여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6.4% 대 4.7% 및 2.6% 대 1.5%)에 그친다.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총재정지출 대비 9.4%로 OECD 평균(37.4%)의 1/4에 불과하다. 명목GDP 대비 비중으로는 OECD 평균의 약 14%(2.4% 대 17.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문 구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사회보호' 부문을 합산하여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의 1/2 수준(25.4% 대 53.2%)으로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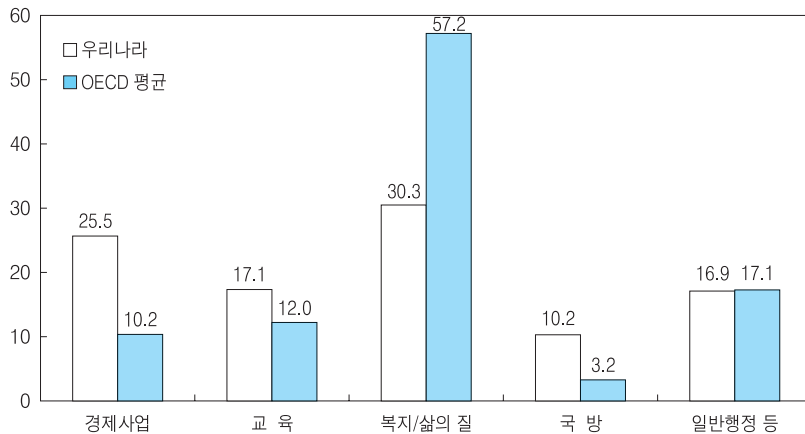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제업무' 부문의 비중은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이 낮은 국가로는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으나, 이들 국가의 '경제업무' 부문 비중은 15% 내외로 '사회보호' 분야 비중(20% 내외)보다 낮아 전자의 비중이 후자보다 높은 OECD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사회보호' 부문의 지출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교육' 분야의 지출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심한 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심한 편이다.

[그림 2] 일반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의 국제비교
(2002년 및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에서 재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표 1> 참조)로 OECD 평균(6.9%)의 3배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은 높아, 총투자에서 재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표 2> 참조)로 OECD 평균(16.1%)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투자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제업무'나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보건'이나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업무' 부문이 1.3배(47.4% 대 37.8%),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이 1.9배(14.4% 대 7.5%)인 반면, '보건' 부문은 8%(0.5% 대 6.5%),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36%(3.9% 대 10.9%)에 머물렀다.

〈표 1〉일반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우리 나라	외국 평균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2002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										
총재정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공공행정	11.3	13.7	15.0	19.7	15.3	12.1	13.5	12.9	22.9	5.3
2. 국방	10.2	3.2	1.7	2.5	2.9	2.9	4.6	2.5	5.8	
3. 공공질서 및 안전	5.6	3.3	2.8	3.1	1.8	2.8	1.9	3.3	2.3	3.5
4. 경제업무	25.5	10.2	10.1	9.2	6.6	9.9	8.9	8.2	9.7	14.8
5. 환경보호	2.6	1.7	0.7	1.5		0.7	2.2	1.2	1.3	
6. 주택 및 지역개발	3.7	1.9	1.6	0.7	1.6	1.0	1.9	2.3	1.0	2.3
7. 보건	12.4	13.8	13.0	13.2	10.1	12.6	15.7	13.2	6.6	18.7
8. 오락, 문화 및 종교	2.2	2.3	2.0	2.4	3.0	2.4	1.5	1.5	0.9	6.1
9. 교육	17.1	12.0	11.2	12.6	14.9	13.1	11.2	8.6	6.8	15.0
10. 사회보호	9.4	37.4	42.0	35.2	43.9	42.5	38.6	46.2	42.7	19.1
(참고) 총재정투자	20.9	6.9	2.4		2.4	5.7	5.9	3.4	8.1	9.8
명목GDP 대비 비중										
총재정지출	25.2	46.6	51.3	50.5	55.6	50.2	53.6	48.5	46.9	43.7
1. 일반공공행정	2.9	6.5	7.7	9.9	8.5	6.1	7.2	6.2	10.7	2.3
2. 국방	2.6	1.5	0.9	1.2	1.6	1.4	2.4	1.2	2.7	
3. 공공질서 및 안전	1.4	1.5	1.4	1.6	1.0	1.4	1.0	1.6	1.1	1.5
4. 경제업무	6.4	4.7	5.2	4.6	3.7	5.0	4.8	4.0	4.5	6.5
5. 환경보호	0.7	0.7	0.3	0.7		0.3	1.2	0.6	0.6	
6. 주택 및 지역개발	0.9	0.9	0.8	0.3	0.9	0.5	1.0	1.1	0.5	1.0
7. 보건	3.1	6.3	6.7	6.7	5.6	6.3	8.4	6.4	3.1	8.2
8. 오락, 문화 및 종교	0.6	1.1	1.1	1.2	1.7	1.2	0.8	0.7	0.4	2.7
9. 교육	4.3	5.6	5.7	6.4	8.3	6.6	6.0	4.2	3.2	6.5
10. 사회보호	2.4	17.6	21.6	17.8	24.4	21.3	20.7	22.4	20.0	8.3
(참고) 총재정투자	5.3	3.1	1.3		1.8	2.9	3.1	1.6	3.8	4.3

〈표 1〉의 계속

(단위: %)

	Ireland	Italy	Japan	Luxem bourg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										
총재정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공공행정	10.6	19.2	7.6	11.3	17.2	11.3	14.0	13.9	15.0	10.5
2. 국방	2.0	2.5	2.8	0.7	3.3	4.3	3.7	3.0	3.6	6.3
3. 공공질서 및 안전	4.4	4.1	4.1	2.4	3.5	2.4	4.4	5.4	2.5	5.2
4. 경제업무	15.0	8.1	13.0	11.8	11.4	10.2	11.4	11.0	8.3	5.9
5. 환경보호		1.8	4.6	2.8	1.6	1.3	1.3	2.3	0.6	1.4
6. 주택 및 지역개발	6.2	0.3	2.2	1.9	3.2	0.9	1.9	2.8	1.6	1.3
7. 보건	19.1	13.7	19.4	11.2	9.4	16.5	15.0	13.6	12.1	16.1
8. 오락, 문화 및 종교	1.6	1.8	0.5	4.3	2.3	2.3	2.6	2.8	1.9	1.3
9. 교육	13.0	10.2	11.8	11.5	10.4	13.0	15.3	11.0	12.9	12.6
10. 사회보호	28.1	38.3	34.0	42.1	37.8	37.8	30.4	34.1	41.4	39.5
(참고) 총재정투자	13.3	3.9	13.4	10.9	6.9	5.9	8.6	8.3	5.6	3.2
명목GDP 대비 비중										
총재정지출	33.3	47.7	34.3	44.3	47.5	47.5	46.1	39.4	58.5	39.7
1. 일반공공행정	3.5	9.2	2.6	5.0	8.2	5.4	6.5	5.5	8.8	4.2
2. 국방	0.7	1.2	1.0	0.3	1.5	2.0	1.7	1.2	2.1	2.5
3. 공공질서 및 안전	1.5	1.9	1.4	1.1	1.7	1.1	2.0	2.1	1.5	2.1
4. 경제업무	5.0	3.9	4.5	5.2	5.4	4.8	5.3	4.3	4.9	2.4
5. 환경보호		0.8	1.6	1.2	0.8	0.6	0.6	0.9	0.3	0.6
6. 주택 및 지역개발	2.1	0.1	0.8	0.9	1.5	0.4	0.9	1.1	0.9	0.5
7. 보건	6.4	6.5	6.6	5.0	4.5	7.8	6.9	5.3	7.1	6.4
8. 오락, 문화 및 종교	0.5	0.9	0.2	1.9	1.1	1.1	1.2	1.1	1.1	0.5
9. 교육	4.3	4.9	4.0	5.1	4.9	6.2	7.0	4.3	7.6	5.0
10. 사회보호	9.3	18.3	11.6	18.7	17.9	17.9	14.0	13.4	24.2	15.7
(참고) 총재정투자	4.4	1.8	4.6	4.8	3.3	2.8	4.0	3.3	3.3	1.3

〈표 2〉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투자 비중

(단위: %)

	우리 나라	외국 평균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2002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총재정투자 대비 비중										
총재정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공공행정	3.9	10.9	11.6		8.7	11.1	13.2	5.4	12.1	4.9
2. 국방	3.8	4.1	5.7		4.7	3.5	6.9	2.8	0.5	
3. 공공질서 및 안전	2.6	3.9	6.0		2.9	3.3	3.3	6.5	0.5	2.7
4. 경제업무	47.4	37.8	40.8		15.9	33.8	12.3	41.0	43.4	44.3
5. 환경보호	7.2	6.9	1.5			0.8	18.2	8.6	5.2	
6. 주택 및 지역개발	14.4	7.5	1.5		6.4	0.5	9.9	6.7	6.0	0.7
7. 보건	0.5	6.5	2.7		11.0	11.4	8.3	0.6	13.1	3.9
8. 오락, 문화 및 종교	4.5	6.4	9.1		10.1	5.8	8.0	5.8	2.4	10.3
9. 교육	14.3	15.0	19.0		29.8	19.8	17.1	19.2	14.0	15.6
10. 사회보호	1.4	4.1	2.0		10.6	9.9	2.8	3.4	2.8	4.6
총투자 대비 비중										
총재정투자	18.1	16.1	5.7		8.9	15.2	16.2	8.8	15.8	18.6
1. 일반공공행정	0.7	1.7	0.7		0.8	1.7	2.1	0.5	1.9	0.9
2. 국방	0.7	0.5	0.3		0.4	0.5	1.1	0.2	0.1	
3. 공공질서 및 안전	0.5	0.6	0.3		0.3	0.5	0.5	0.6	0.1	0.5
4. 경제업무	8.6	6.3	2.3		1.4	5.2	2.0	3.6	6.9	8.3
5. 환경보호	1.3	1.0	0.1			0.1	2.9	0.8	0.8	
6. 주택 및 지역개발	2.6	1.7	0.1		0.6	0.1	1.6	0.6	0.9	0.1
7. 보건	0.1	1.0	0.2		1.0	1.7	1.3	0.1	2.1	0.7
8. 오락, 문화 및 종교	0.8	0.9	0.5		0.9	0.9	1.3	0.5	0.4	1.9
9. 교육	2.6	2.2	1.1		2.6	3.0	2.8	1.7	2.2	2.9
10. 사회보호	0.3	0.6	0.1		0.9	1.5	0.5	0.3	0.4	0.9

세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통계 입수가 가능한 14개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을 보면 국가간에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표 3〉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출비중은 평균 44.4%(Germany 24.9%~Norway 72.5%),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은 평균 71.5%(Denmark 54.5%~Greece 95.5%)이다.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의 비중 측면에서 연방제 국가인 Austria(72.2%),

〈표 2〉의 계속

(단위: %)

	Ireland	Italy	Japan	Luxem bourg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2001	2002	2002
총재정투자 대비 비중										
총재정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공공행정	9.3	18.5	4.8	18.2	10.2	5.3	8.4	6.9	21.0	15.2
2. 국방	1.8	11.4	1.3	0.6	3.9	5.3	2.6	2.1	2.9	9.8
3. 공공질서 및 안전	3.1	5.8	2.9	2.7	6.5	1.6	2.4	4.2	4.0	8.6
4. 경제업무	42.3	43.2	57.9	40.1	54.6	29.2	38.4	40.5	33.2	32.0
5. 환경보호		7.7	19.1	4.6	3.2	4.6	8.4	7.0	1.0	6.3
6. 주택 및 지역개발	25.6		3.3	4.9	8.4	3.7	13.0	15.4	7.0	
7. 보건	6.1	9.1	0.3	0.2	0.2	19.1	4.8	5.9	9.7	4.8
8. 오락, 문화 및 종교	2.5	9.9	1.1	10.2	4.9	4.5	7.5	7.8	3.1	5.7
9. 교육	9.3	13.5	7.9	13.6	5.4	18.0	11.9	8.1	13.8	19.5
10. 사회보호	0.2	2.7	1.4	4.8	2.7	8.8	2.8	2.1	4.2	4.1
총투자 대비 비중										
총재정투자	49.0	9.3	19.1	21.4	15.8	16.4	14.7	12.8	19.1	7.7
1. 일반공공행정	4.5	1.7	0.9	3.9	1.6	0.9	1.2	0.9	4.0	1.2
2. 국방	0.9	1.1	0.2	0.1	0.6	0.9	0.4	0.3	0.6	0.8
3. 공공질서 및 안전	1.5	0.5	0.5	0.6	1.0	0.3	0.4	0.5	0.8	0.7
4. 경제업무	20.7	4.0	11.0	8.6	8.6	4.8	5.7	5.2	6.4	2.5
5. 환경보호		0.7	3.6	1.0	0.5	0.7	1.2	0.9	0.2	0.5
6. 주택 및 지역개발	12.5		0.6	1.1	1.3	0.6	1.9	2.0	1.3	
7. 보건	3.0	0.8	0.1	0.0	0.0	3.1	0.7	0.8	1.8	0.4
8. 오락, 문화 및 종교	1.2	0.9	0.2	2.2	0.8	0.7	1.1	1.0	0.6	0.4
9. 교육	4.5	1.3	1.5	2.9	0.9	2.9	1.8	1.0	2.6	1.5
10. 사회보호	0.1	0.3	0.3	1.0	0.4	1.4	0.4	0.3	0.8	0.3

Belgium (69.8%), Germany (63.4%)와 비연방제 국가와의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주로 '보건' 및 '사회보호' 부문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정부 포함)의 지출합계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출비중은 평균 60.9%(Germany 40.5%~Greece 93.5%)였다.

〈표 3〉 기능별 재정지출의 정부단위별 비중

(단위: %)

	우리 나라	외국 평균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중앙정부비중										
총재정지출		44.4	45.7	42.0	48.2	42.3	41.1	24.9	65.0	
1. 일반공공행정			72.1		86.8			48.3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업무				30.2				30.6		
5. 환경보호										
6. 주택 및 지역개발						53.3				
7. 보건			10.9	8.0		24.0	2.2	0.0		
8. 오락, 문화 및 종교										
9. 교육						46.1				
10. 사회보호			43.2	29.2	37.3	28.1	21.0	24.6	27.5	
사회보장기금비중										
총재정지출		29.3	26.5	27.8	6.3	26.4	41.7	38.4	30.5	
1. 일반공공행정			0.3	0.0	0.0	0.0	0.0	0.1	0.0	
2. 국방			0.0	0.0	0.0	0.0	0.0	0.0	0.0	
3. 공공질서 및 안전			0.0	0.0	0.0	0.0	0.0	0.0	0.0	
4. 경제업무			0.0	6.9	0.0	0.0	0.0	16.1	0.0	
5. 환경보호			0.0	0.0	0.0	0.0	0.0	0.0	0.0	
6. 주택 및 지역개발			0.0	0.0	0.0	0.4	0.0	0.0	0.0	
7. 보건			50.2	88.4	0.0	12.1	97.0	95.6	0.0	
8. 오락, 문화 및 종교			0.0	0.0	0.0	0.0	0.0	0.0	0.0	
9. 교육			0.0	0.0	0.0	6.3	0.0	0.0	0.0	
10. 사회보호			44.3	56.2	12.4	54.9	74.2	55.7	72.4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비중										
총재정지출		71.5	72.2	69.8	54.5	68.7	82.7	63.4	95.5	
1. 일반공공행정			72.4		86.8			48.4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업무				37.1				46.6		
5. 환경보호										
6. 주택 및 지역개발						53.8				
7. 보건			61.1	96.4		36.1	99.3	95.6		
8. 오락, 문화 및 종교										
9. 교육						52.4				
10. 사회보호			87.4	85.4	49.7	83.0	95.2	80.3	99.9	

〈표 3〉의 계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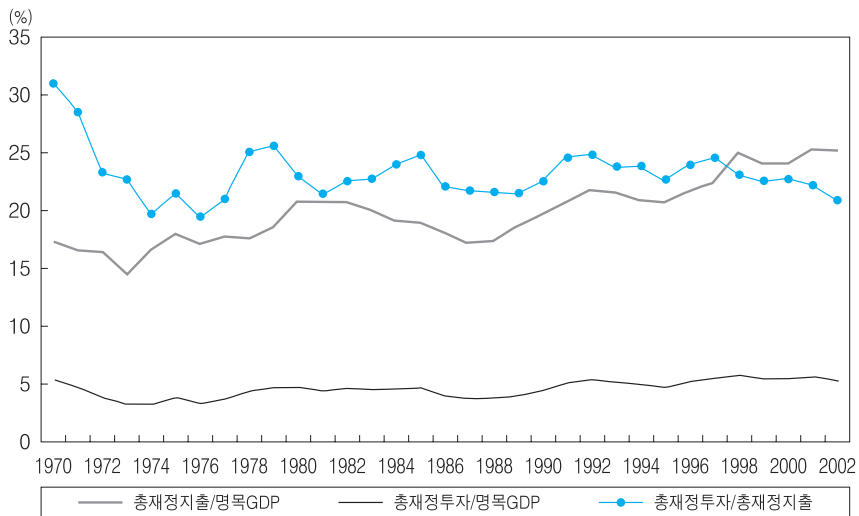
	Ireland	Italy	Japan	Luxem bourg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중앙정부비중										
총재정지출		34.3		43.5	31.4	72.5		36.6	50.1	76.7
1. 일반공공행정		81.5			71.9	81.1		78.7	74.7	90.8
2. 국방										99.9
3. 공공질서 및 안전						86.9				49.9
4. 경제업무						83.3		30.9		77.3
5. 환경보호						23.3				10.2
6. 주택 및 지역개발						19.5				79.8
7. 보건		2.0		6.5	2.4	68.9		1.5		
8. 오락, 문화 및 종교						39.0				32.6
9. 교육						37.2		6.7		35.4
10. 사회보호		2.0		21.0	15.7	79.6		9.1	48.4	81.3
사회보장기금 비중										
총재정지출		34.8		43.0	34.3			31.6	10.1	
1. 일반공공행정		0.0		0.0	0.2			2.4	0.0	
2. 국방		0.0		0.0	0.0			0.0	0.0	
3. 공공질서 및 안전		0.0		0.0	0.0			0.0	0.0	
4. 경제업무		0.0		0.0	0.0			7.4	0.0	
5. 환경보호		0.0		0.0	0.0			0.0	0.0	
6. 주택 및 지역개발		0.0		0.0	0.0			0.0	0.0	
7. 보건		0.3		93.1	93.3			88.0	0.0	
8. 오락, 문화 및 종교		0.0		0.0	0.0			0.0	0.0	
9. 교육		0.0		0.0	0.0			0.0	0.0	
10. 사회보호		94.5		77.3	67.4			86.1	24.8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비중										
총재정지출		69.1		86.5	65.7	72.5		68.2	60.1	76.7
1. 일반공공행정		81.6			72.1	81.1		81.0	74.7	90.8
2. 국방										99.9
3. 공공질서 및 안전						86.9				49.9
4. 경제업무						83.3		38.4		77.3
5. 환경보호						23.3				10.2
6. 주택 및 지역개발						19.5				79.8
7. 보건		2.2		99.6	95.7	68.9		89.6		
8. 오락, 문화 및 종교						39.0				32.6
9. 교육						37.2		6.8		35.4
10. 사회보호		96.6		98.3	83.2	79.6		95.2	73.2	81.3

2. 분야별 지출구조의 변천추이 : 우리나라

OECD의 SNA 1993 기준 통계는 1992~2003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계정 통계는 1970년까지 소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분석할 수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의 추이 비교는 다음 절에서 SNA 1986 기준에 의해 작성된 OECD 통계(1970~1996년)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그림 3]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대 GDP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상승, 1980년대 하락, 1990년대 및 최근 상승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73년 14.6%에서 1980년 20.9%로 상승한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987년 17.3%까지 낮아졌다.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는 25.2%를 기록하였다.

[그림 3]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재정투자 추이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방’ 부문의 하락추세와 ‘보건’ 및 ‘사회보호’ 부문의 상승추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투자 지출비중 및 분야별 재정투자 비중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그림 4]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방’ 부문의 하락추세와 ‘보건’ 및 ‘사회보호’ 부문의 상승추세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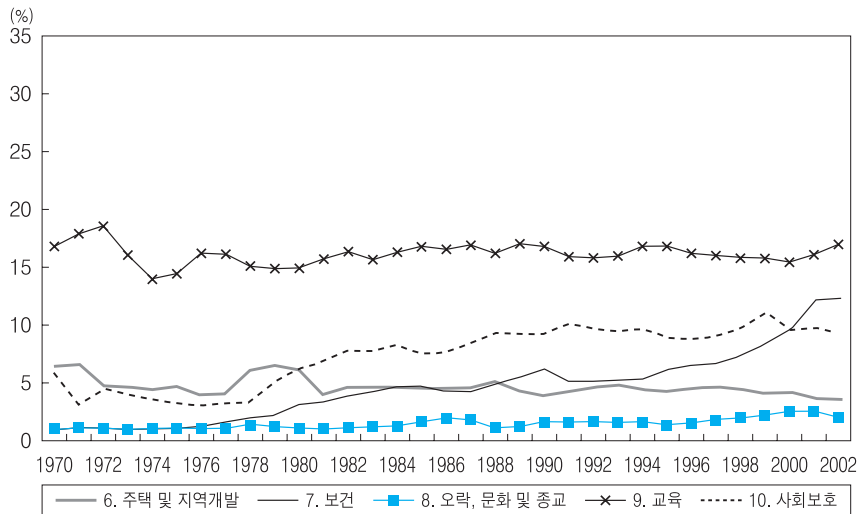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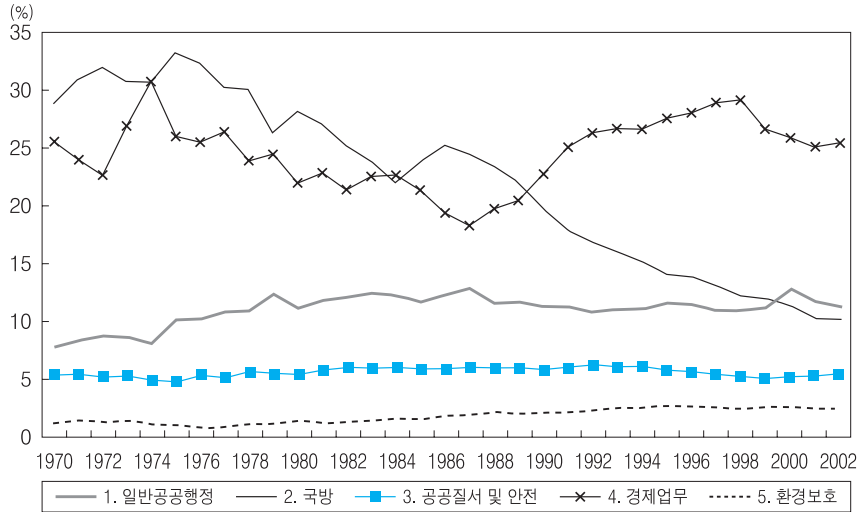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방’ 부문 지출비중의 급격한 하락이다. ‘국방’ 부문은 1974년 총재정지출의 30.8%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10.2%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보호’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보건’ 부문 지출비중은 1970년 1.0% 수준에서 2002년 12.4%로 상승하였으며, ‘사회보호’ 부문의 비중은 1971년 3.1%에서 1999년 11.2%까지 상승하였으나 2002년에는 9.4%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업무’ 부문은 1974년 30.8%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1987년 18.3%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9.2%까지 상승하였으며 2002년에는 25.5%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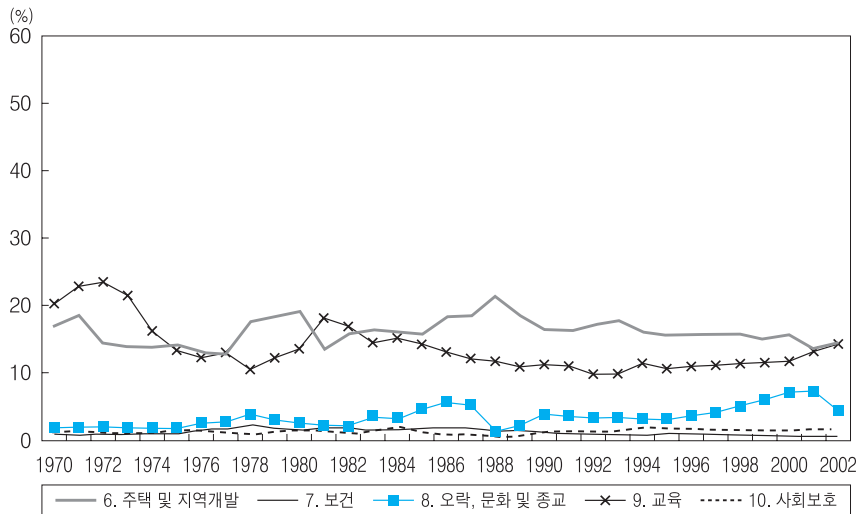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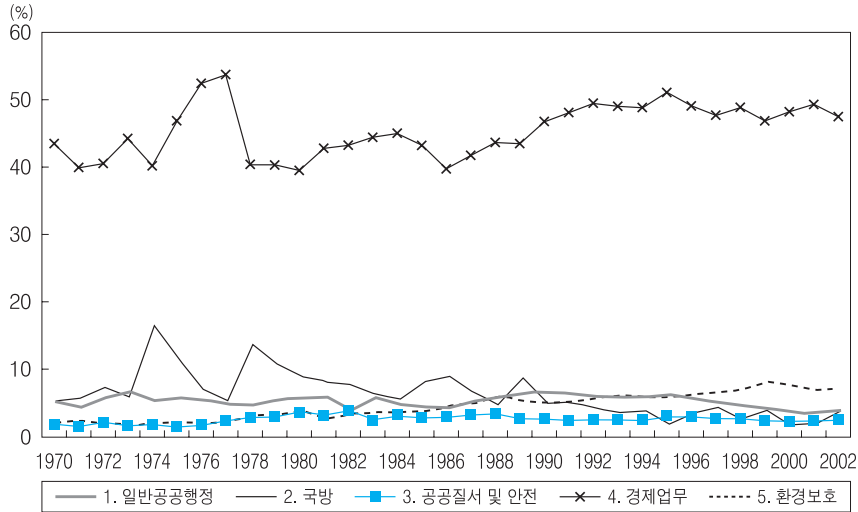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3] 및 [그림 5]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투자 지출비중 및 분야별 재정투자 비중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명목GDP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은 1970년 이후 25% 내외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7년 24.6%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하락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20.9%에 머물렀다.

분야별 재정투자 비중에서는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경제업무’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경제’ 부문 투자지출 비중은 기간중 40~50%를 유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주택 및 지역개발’ 및 ‘교육’ 부문 투자지출이 10~20%를 차지하였다.

[그림 4]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 추이
(총지출 대비 비중)



[그림 5]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투자지출 비중 추이
(총투자지출 대비 비중)



3. 분야별 지출구조의 변천추이 : 국제비교

본절에서는 이제까지 이용하던 SNA 1993 기준 통계가 1992~2003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어, SNA 1968 기준에 의해 보다 긴 기간에 대해 작성된 과거 OECD 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SNA 1968 기준에서는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정부지출을 SNA 1993 기준과는 다소 다른 14개 기능별로 구분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의 COFOG와 비교할 때 ‘환경부문’이 제외된 대신 ‘기타부문’이 포함되었으며, 각 부문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의 내용에서도 다소 차이가 난다.

<표 4> SNA 1986 기준에 의한 정부기능 분류

1. General public services	일반공공행정
2. Defence	국방
3. Public order and safety	공공질서 및 안전
4. Education	교육
5. Health	보건
6. Social security and welfare	사회보장 및 복지
7.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주택 및 사회환경 개선
8. Recre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affairs	오락 문화 및 종교
9-13. Economic services	경제
9. Fuel and energy	연료 및 에너지
10.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농업 임업 및 어업
11. Min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except fuel and energy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12. Transport and communication	운수 및 통신
13. Other economic affairs	기타경제
14. Other functions	기타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 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추세 및 ‘사회보장 및 복지’ 부문의 상승추세, 일부국가에서의 ‘교육’ 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변화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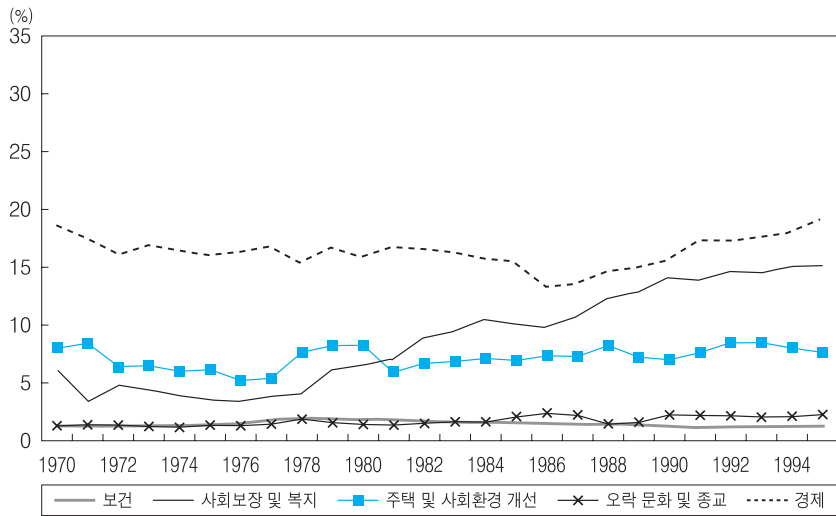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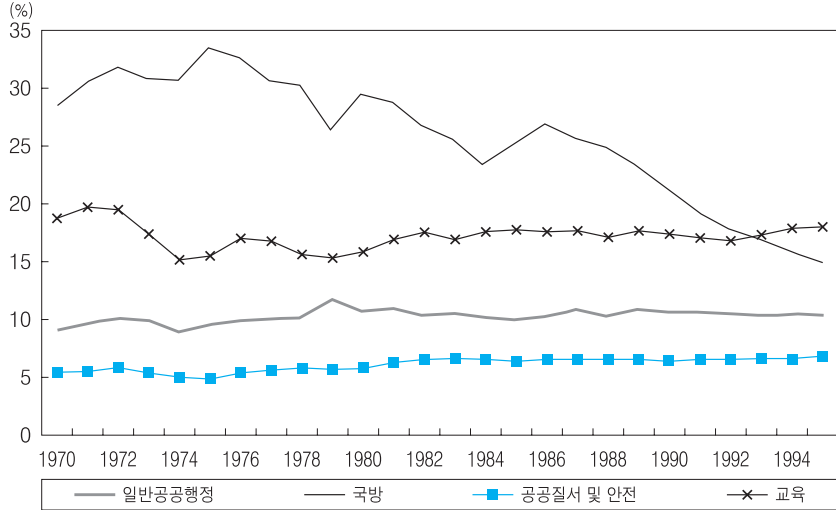
국제비교가 가능한 SNA 1968 기준 국민계정 통계자료로는 OECD에서 1999년 출간된 *National Accounts : Detailed Tables 1960/1997, 1999 Edition, Volume 2* 의 Table 5 “Total Government Outlays by Function and Type”이 마지막이었다. 1999년 OECD 통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Australia, Belgium, Denmark, France, Germany, Iceland, Ital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U.K. 등 13개국 통계가 수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기 전에는 1995년을 기준년으로 한 국민계정 통계의 부속표 중에서 “15.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에 SNA 1968 기준 정부지출 통계가 수록되었으나, OECD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OECD 자료(분석기간은 1970~1996년)를 이용하였다.

우선 [그림 6]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최근에 발표된 국민계정 통계에 의한 분야별 지출구조 변화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보건’ 부문의 지출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출항목의 기능별 분류기준이 최근 통계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부문을 합한 비중은 최근통계와 비슷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승추세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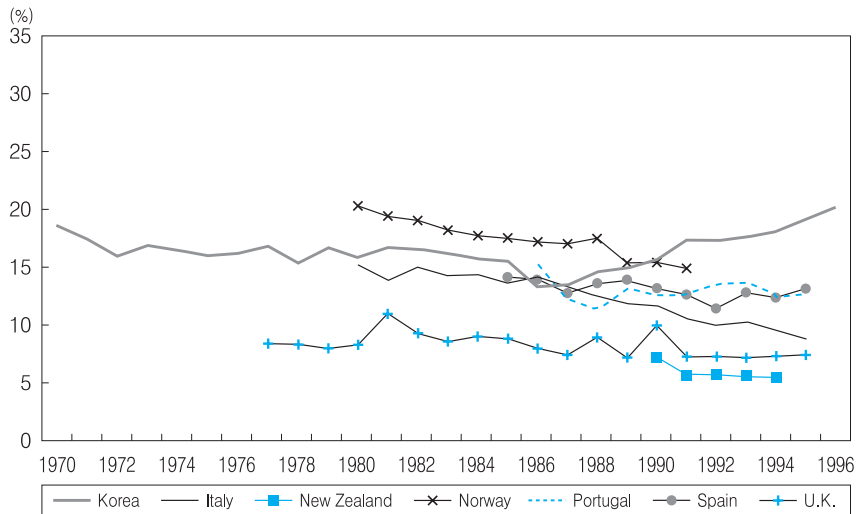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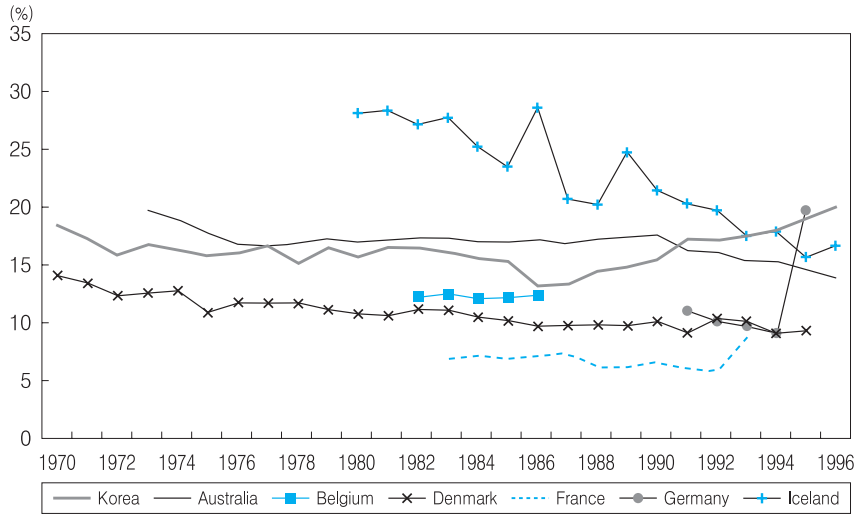
한편,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림 7]에 나타난 ‘경제’ 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추세 및 ‘사회보장 및 복지’ 부문의 상승추세, 일부국가에서의 ‘교육’ 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변화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 추이
(종전 국민계정 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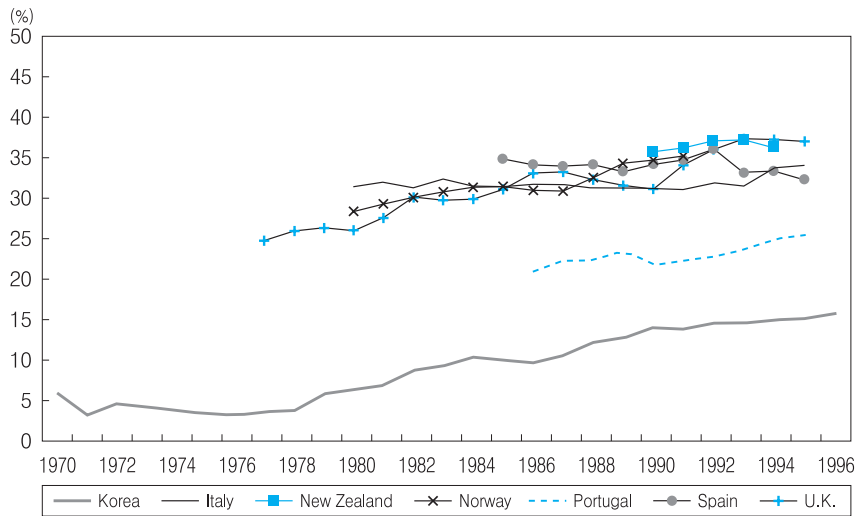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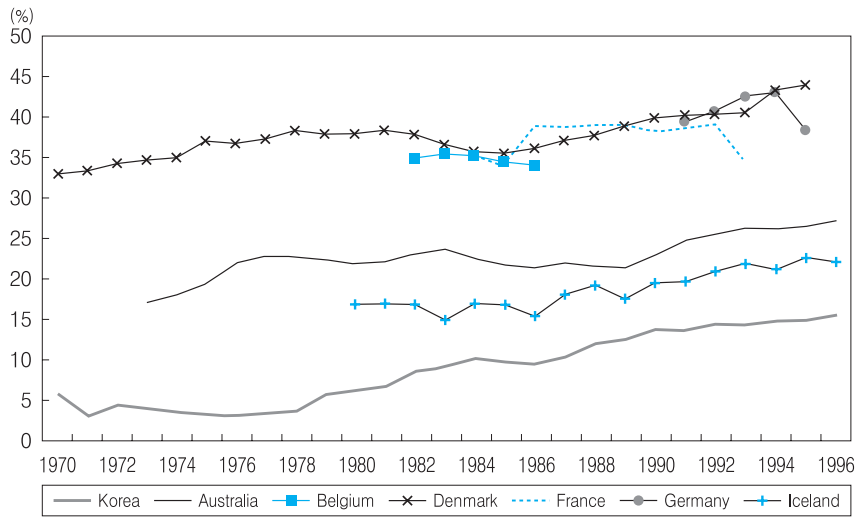


[그림 7] 일반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 추이의 국제비교
(중전 국민계정 통계 기준)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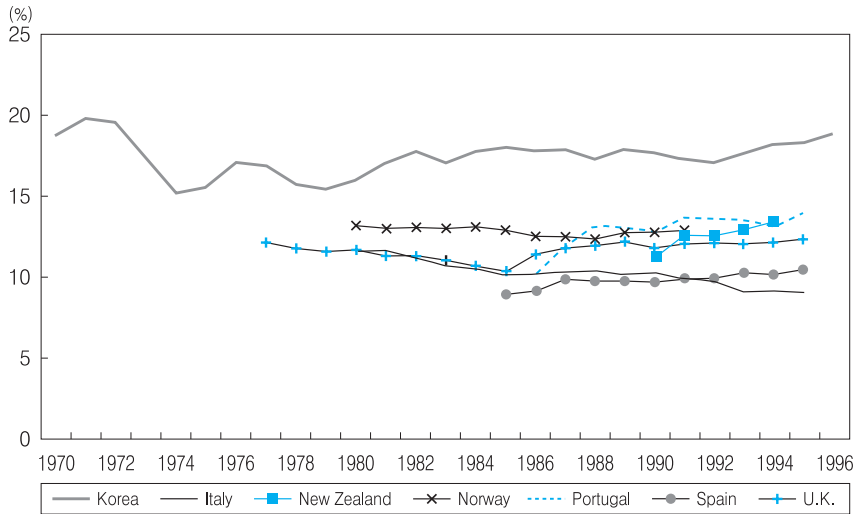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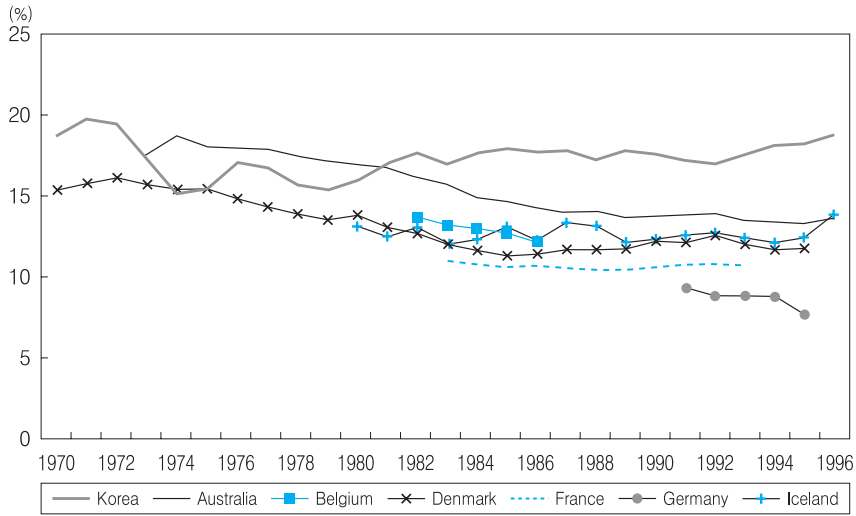


[그림 7] 의 계속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그림 7]의 계속

〈교육 분야〉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OECD 및 한국은행이 발표한 SNA 1993 기준에 의한 분야별 재정 지출 통계를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이제까지는 불가능하였던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정부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 현상의 특징은 바뀌지 않으며, 재정투자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편중현상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보건 및 사회보호' (또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지출비중은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 모두 상승한 반면,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 현상이 완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승하여 이러한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측면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경제사업 지출의 비중을 점차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도 향후 5개년 연평균 총지출증가율을 6.3%, 사회복지 분야 지출증가율을 12.2%로 유지하는 데 반해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증가율을 3.1%, 3.7%, 2.8%로 억제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13.8%(2004년)→12.2%(2008년), 6.3%→5.7%, 5.8%→5.1%로 낮추어 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중장기 재원배분 계획이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난 분야별 재원배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평가해 본 결과, 대체적인 재원배분 방향은 일치하였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과잉조정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국방, 외교통일, 지방재정지원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및 외교통일 분야의 2005년 증가율이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2.0%p 및 27.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SOC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2005년 증가율이 1.6%p 및 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 분야는 단기간에 대폭 증가되고 농어촌 분야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지출비중 조정이 어려웠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분야별 재

향후에도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측면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경제사업 지출의 비중을 점차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배분 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경제에 반영되어 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통합재정 통계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국민계정 통계에 의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는 한편, IMF에서 수 차례 시도된 바 있는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즉 해당 국가의 GDP,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 하거나와 이러한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분야별 재원배분시 참고할 사항 정도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앞으로 통계에 의한 국제비교 연구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맞는, 또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연구 및 의견수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IP**

〈표 5〉 정부의 2005년 및 중기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금 액 (조원)							비 중 (%)					
	2004	2005 (A)	2006	2007	2008	평균 (B)	차이 (B-A)	2004 (C)	2005	2006	2007	2008 (D)	차이 (D-C)
총지출 (증가율)	196.2	208.0 6.0	220.7 6.1	234.2 6.1	250.9 7.1	6.3	-0.3	100	100	100	100	100	-
교육 (증가율)	24.5	25.9 5.7	28.2 8.9	30.7 8.9	33.3 8.5	7.9	-2.2	12.5	12.5	12.8	13.1	13.3	0.8
SOC (증가율)	27.1	27.5 1.5	28.6 4.0	29.6 3.5	30.6 3.4	3.1	-1.6	13.8	13.2	13.0	12.6	12.2	-1.6
(민자 포함시) (증가율)	29.6	30.5 3.0	32.0 4.9	33.4 4.4	34.9 4.5	4.2	-1.2	15.1	14.7	14.5	14.3	13.9	-1.2
농어촌 (증가율)	12.3	13.4 8.9	13.7 2.2	14.0 2.2	14.2 1.4	3.7	5.2	6.3	6.4	6.2	6.0	5.7	-0.6
(132조원 계획) (증가율)	9.7	10.7 10.3	11.3 5.6	11.8 4.4	12.1 2.5	7.2	3.1	4.9	5.1	5.1	5.0	4.8	-0.1
산업·중소기업 (증가율)	11.4	11.2 -1.8	11.4 1.8	11.9 4.4	12.7 6.7	2.8	-4.6	5.8	5.4	5.2	5.1	5.1	-0.7
(금융자원제외시) (증가율)	9.5	10.0 5.3	10.3 3.0	10.8 4.9	11.6 7.4	5.3	0.0	4.8	4.8	4.7	4.6	4.6	-0.2
사회복지 (증가율)	32.4	37.0 14.2	40.6 9.7	45.4 11.8	51.2 12.8	12.2	2.0	16.5	17.8	18.4	19.4	20.4	3.9
문화·관광 (증가율)	2.3	2.5 8.7	2.6 4.0	2.8 7.7	3.0 7.1	7.0	1.7	1.2	1.2	1.2	1.2	1.2	0.0
환경 (증가율)	3.5	4.0 14.3	4.1 2.5	4.2 2.4	4.4 4.8	6.1	8.2	1.8	1.9	1.9	1.8	1.8	0.0
국방 (증가율)	18.1	19.7 8.8	21.5 9.1	23.6 9.8	26.4 11.9	9.9	-1.1	9.2	9.5	9.7	10.1	10.5	1.3
외교통일 (증가율)	1.4	1.9 35.7	2.3 21.1	2.0 -13.0	1.9 -5.0	8.0	27.7	0.7	0.9	1.0	0.9	0.8	0.0
사회안정 (증가율)	7.6	8.1 6.6	8.5 4.9	8.9 4.7	9.4 5.6	5.5	1.1	3.9	3.9	3.9	3.8	3.7	-0.1
일반행정 (증가율)	25.4	26.0 2.4	25.8 -0.8	26.2 1.6	26.6 1.5	1.1	1.3	12.9	12.5	11.7	11.2	10.6	-2.3
지방재정지원 (증가율)	18.3	19.5 6.6	21.2 8.7	23.1 9.0	25.2 9.1	8.3	-1.7	9.3	9.4	9.6	9.9	10.0	0.7
국채이자·예비비 (증가율)	12.1	11.1 -8.3	12.3 10.8	11.9 -3.3	12.2 2.5	-	-	6.2	5.3	5.6	5.1	4.9	-1.3

자료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

참고문헌

- 고영선, 「분야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KDI, 2004.
- 대한민국정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10.
-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호
- 최준욱·박형수,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04 KIPF 재정포럼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3.
-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2004. 11.
- _____, 『국민계정 2004』, 2005. 1.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각 호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2004 Edition*, 2004. 9.
- OECD, *National Accounts : Detailed Tables 1960/1997, 1999 Edition, Volume 2*, 1999.
- UN, *The SNA 1993*, <http://unstats.un.org/unsd/sna1993/introduction.asp>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jinskim@kipf.re.kr)

I. 서론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은 개인이 소득세 신고시에 소액의 돈을 특정한 목적(예: 정치자금의 기탁 등)을 위해 기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Check-off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의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은 1972년 도입이 결정되었다. 연방정부는 납세자가 납부할 금액 중 1달러(1993년 이후는 3달러)를 대통령후보 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서의 'check-off'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부패하였다는 인식을 감소시켜 주고 정치자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미국의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은 1977년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check-off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곧 여러 주에서 정치후원, 아동학대 방지 등 다양한 형태의 check-off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후원뿐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 아동학대 방지 등 여러 부문의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대체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만으로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운 공익사업을 납세자들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부패하였다는 인식을 감소시켜 주고 정치자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패한 정치자금이 정치·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선거운동기금 또는 정치후원금의 조성을 위한 check-off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 현황

1. Check-Off 프로그램의 유형

가.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1966년의 대통령선거운동법(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ct)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다음 해 반대의견에 의해 철회되었다. 사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 자금이 이용될 뿐 부패한 사적 자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2년에는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한 자발적인 check-off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운동 자금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66년과는 달리 의회는 아주 우호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으며, 민주당 상원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수용되었다.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3달러(합산신고시 6달러)를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1040)의 첫 페이지에 본인 또는 배우자(합산신고시)가 기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Yes 또는 No 항목에 체크하여야 한다(신고서 양식은 부록 참고). 만일 납세자가 대통령선거운동기금에 기꺼이 3달러를 기탁

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결정된 납세액 중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인 3달러가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Yes에 체크하여 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세금이 변경되거나 환급액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회가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되는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개별 대통령후보가 많은 후원금을 내는 개인 또는 그룹에게 의존하는 폐해를 줄이고 선거에서 후보간 동등한 금전적 상태에 있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법에서의 규정(IRC Sec.6096)은 납세자가 3달러를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기탁한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의 기탁은 기존의 기부금 한도¹⁾와는 관계가 없고, 세제상 어떤 혜택을 받지 않는다.

나.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check-off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는 18개, 오레곤 주는 17개의 check-off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 3개의 주만이 1개의 check-off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FTA(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는 각 주의 소득세 신고서를 토대로 check-off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첫해인 1989년에 전체 주에서 103개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후 check-off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179개, 2002년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220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저지주(신고서 양식은 부록 참고)를 예로 들어 check-off 프로그램 신고서 양식 및 기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후원금 check-off 프로그램이 있으며, 신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Governatorial Election Fund' 항목 옆 칸에 1달러(합산과세시 배우자도 1달러) 기부 여부를 Yes 또는 No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Yes에 표시를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증가되거나 환급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정치후원금 이외의 check-off 프로그램이 신고서 Line 53-58에 걸쳐 ①야생동물 보호 ②아동학대 방지 ③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기념사업 ④유방암 ⑤USS뉴저지 ⑥기타(instruction 참고, 코드기재) 등 6개가 있으며 각 항목 옆 칸에 10달러, 20달러, 기타(원하는 금액)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Yes에 표시하면 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납부세액을 증가시킨다.

1) 공공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의 50% 내에서 공제되며, 민간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의 30% 내에서 공제됨.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check-off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FTA는 각 주의 check-off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1989년에 전체 주에서 103개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179개, 2002년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220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주정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선거운동기금에 기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는 check-off 프로그램에 대한 기탁금으로 납세자의 납세액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받을 환급액의 일부를 기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는 기부금을 환급액만큼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환급액을 초과하여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정치관련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납세액을 통해 기부금을 조성한다.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많은 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check-off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호 check-off 프로그램으로서 2002년 기준 35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1개 주에서 정치후원금 check-off 프로그램, 20개 주에서 아동학대(아동방치) 방지 check-off 프로그램이, 17개 주에서 유방암·자궁암 연구와 예방 check-off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주에서 다양한 개인소득신고서 내 check-off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각 주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병행하고 있는 check-off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각 주의 Check-Off 프로그램 현황

주	정치후원	이생동물 보호	이동학대 방지	유방암	기 타
앨라배마	○	○	○	○	1, 2, 3, 4, 5, 6, 7, 8
애리조나	○	○	○		8, 9, 10, 11, 12, 13
아칸소					14, 15, 16, 17
캘리포니아		○	○	○	1, 18, 19, 20, 21
콜로라도			○		3, 9, 14, 25, 26, 27, 28
코네티컷		○		○	30, 31, 32
델라웨어		○	○	○	3, 14, 31, 33, 34
조지아		○	○	○	
하와이	○				35
아이다호	○	○	○		
일리노이		○	○	○	18, 36, 37, 38
인디애나		○	○		
아이오와	○	○			39, 40
캔사스		○			41
캔터키	○	○	○		3, 42
루이지애나		○	○	○	43
메인	○	○	○		44
메릴랜드	○	○			45
메사추세추	○	○			14, 31, 46
미시간	○				
미네소타	○	○			
미시시피		○			10, 47, 48
미주리			○		1, 3, 49
몬타나		○	○		50
네브라스카	○	○			
뉴저지	○	○	○	○	3, 31, 51, 52, 53
뉴멕시코	○	○			3, 52, 54
뉴욕		○	○	○	14, 18
노스 캐롤라이나	○	○			12
노스 다코다		○			54
오하이오	○	○			55
오클라호마		○		○	3, 16, 31, 56, 57
오레곤		○	○		3, 18, 27, 34, 46, 58, 59, 60, 61, 62, 63
펜실베이니아		○		○	14, 31, 53
로드아일랜드	○	○			14, 31, 52, 68, 69
사우스 캐롤라이나		○	○		1, 3, 52, 60, 70, 71
유타	○	○			10, 31, 36, 72
버몬트	○	○	○		
버지니아	○	○	○		1, 2, 14, 33, 45, 54, 55, 73, 74, 75, 76, 77
웨스트버지니아		○	○		
위스콘신	○	○			81
콜롬비아 특별구					52

주: 1.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2. 예술기금 3. 퇴역군인 4. 동전신탁기금 5. 인디안 아동 6. 입양 7. 정신건강 8. 이웃봉사 9. 올림 픽 10. 교육 11. 가정폭력 12. 정당 13. 깨끗한 선거 14. 올림픽기금 15. 재난구제기금 16. 맹인학교 17. 청각장애인 학교 18. 알츠하이머 19. 고령시민을 위한 기금 20. 소방관 기념비 21. 평화봉사단 기념비 22. 긴급구호식품 23. 루프스 재단 24. 천식·폐병 25. 노숙자 26. 아동보호 27. 애완동물과잉 28. special advocate 29. 강유역 보호 30. 에이즈 31. 장기이식 32. 안전망 33. 주택기금 34. 당노병 교육 35. 학교 수리 36. 노숙자 37. 전립선암 38. 다발성경화증 39. 주 박람회 40. 아이 오와주 환경보호 41. 연료 42. Bluegrass State Games Fund 43. 전립선암 44. 백혈구 환원 45. Chesapeake bay 46. 에이 즈 기금 47. 자원봉사자 서비스 48. 소방관 화상센터 49. 국가안보 50. 교내 농예 51. USS 뉴저지 52. 약물 남용 53. 한국 및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기념사업 54. 숲 보호 55. 천연보호구역 56. 빈곤자 케어 57. 폭력 기념행사 58. 가정폭력 59. 인간 성 회복 60. Head start 61. 연안수조관 62. 조기사자 63. 깨끗한 강 64. St. Vincent de Paul Society 65. 환경보호단체 66. 소아병원 67. 구세군 68. 예술과 관광여행 69. 소아병 70. gift of life 71. 시민전쟁유산 72. 대학도서관 73. 지역사회 치 안 74. 역사유물 75. 비보험 의료 기금 76. 인문과학 및 공공정책 77. 정부연구기관 78. 법 및 경제센터 79. 제임스타운 & 오클타운 80. 미국의 희망 81. Packers 미식축구장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Summary of Check-off Programs.

Check-off 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운 위험수위 상태에 있는데 이는 지출한도 및 지출액은 선거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check-off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Check-Off 프로그램 기탁 현황

가.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

Check-off 프로그램의 도입 첫 해인 1973년의 실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이 제도의 도입 초기 닉슨행정부 선거기금의 일반 모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IRS는 소득세 신고서가 아닌 별개의 반 페이지짜리 check-off 서식을 만들었으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서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입 첫 해에 기탁금액이 저조함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 첫 페이지에 check-off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납세자의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다음 해인 1974년에는 2,760만달러로 증가하였다.

Check-off 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의 비율은 1981년에 28.7%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그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2002년에는 10.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운 위험수위 상태에 있다. 이는 지출한도 및 지출액은 선거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check-off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에 단 한번 1달러에서 3달러로 증가시키는 조정이 있었을 뿐이다²⁾.

IRS의 Taxpayer Usage Study (TPUS) 보고서에 의하면, 참여도는 어떤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종이로 된 신고서로 신고하는지 또는 전자신고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종이로 된 신고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다³⁾. 그러나

2) 이와 같은 단 한번의 조정으로 check-off 프로그램으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유입된 총수입액이 약 3배 정도로 증가하였음. 3달러로 조정된 후 1994년 check-off 금액은 7,132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3) 종이로 된 신고서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양식이 복잡할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40(과세소득 5만달러 이상,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 반영)이 1040A(과세소득 5만달러 미만, 상세공제 미반영)보다 참여도가 높았고, 1040EZ(과세소득 5만달러 미만, 65세 이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의 경우 참여도가 가장 낮았음. 이는 신고 양식의 복잡도가 참여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신고할 소득이 높은 부유한 납세자일수록 기부 참여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말할.

check-off 선택방식을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차이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전자신고를 덜 선호하기 때문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표 2〉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 기탁 현황 및 참여율

(단위: 백만달러, %)

연도 ¹⁾	check-off	참여율	연도	check-off	참여율
1973	2.4	n.a.	1988	33.0	21.0
1974	27.6	n.a.	1989	32.3	20.1
1975	31.7	n.a.	1990	32.5	19.8
1976	33.7	25.5	1991	32.3	19.5
1977	36.6	27.5	1992	29.6	17.7
1978	39.2	28.6	1993	27.6	18.9
1979	35.9	25.4	1994	71.3	14.5
1980	38.8	27.4	1995	67.9	13.0
1981	41.0	28.7	1996	66.9	12.9
1982	39.0	27.0	1997	66.3	12.4
1983	35.6	24.2	1998	63.3	11.3
1984	35.0	23.7	1999	61.0	11.7
1985	34.7	23.0	2000	60.7	12.2
1986	35.8	23.0	2001	58.1	11.8
1987	33.7	21.7	2002	67.0	10.9
			2003	55.2	10.2

주: 1) 연도는 소득세 신고를 받은 해를 말함. 예를 들어 1992년의 경우, 대통령선거운동자금 약 2,960만달러는 1991년 소득세 신고의 17.7%에 해당하는 check-off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것임.

자료: 1997년까지의 자료는 'Federal Election Commission, January, 1998'에 기초함. 1998년 이후의 자료는 IRS Data Book 및 IRS Taxpayer Usage Study에 기초함.

나.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

2000년에 전체 납세자가 주정부의 check-off를 통해 기탁한 금액은 3,280만달러였다. 전체 주에서 캘리포니아가 10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390만달러를 징수하여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애리조나가 9개 프로그램에서 380만달러, 미네소타가 2개 프로그램에서 260만달러를 기부금으로 징수하였다. 반대로 루이지애나와 노스다코타는 각각 4개, 2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2만 9,757달러와 3만 5,719달러만을 징수하였다. 개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입 실적을 낸 프로그램은 애리조나의 정치후원금 프로그램으로 310만달러이며, 그 다음으로 미시간의 정치후원금 프로그램이 160만달러였다. 비정치적 check-off 중 가장 높

2000년에 전체 납세자가 주정부의 check-off를 통해 기탁한 금액은 3,280만달러였다. 전체 주에서 캘리포니아가 10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390만달러를 징수하여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애리조나가 9개 프로그램에서 380만달러, 미네소타가 2개 프로그램에서 260만달러를 기부금으로 징수하였다.

은 수입실적을 낸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의 Chesapeake Bay 보존을 위한 check-off로 약 120만달러의 기부금을 징수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3가지 check-off 프로그램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평균 기부금액 및 check-off 참여율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정치후원 기부금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7.7%라는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기부금은 2.13달러로 가장 낮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과 낮은 평균 기탁액이라는 정치후원 기부의 특징은 자선기부금과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이는 다음의 2가지 이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 기부금은 납세자 납세액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납세자들이 개인소득세 신고시 기탁표시를 하게 된다. 정치후원 기부금액은 대부분의 주에서 그 한도를 1달러 또는 2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자선기부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을 환급금의 규모만큼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액에 차이가 있게 된다.

2002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check-off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평균 기부금을 산정한 결과, 1인 납세자가 약 11.07달러씩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66만 7,875장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740만달러의 기부금을 징수하였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heck-off 프로그램의 평균 기부액은 10.62달러이며, 소득세 신고시 check-off 평균 참여율은 0.5%로 나타났다.

〈표 3〉 Check-Off 프로그램의 1인당 평균 기부금 및 참여율

(단위: 달러, %)

州	정치후원금		야생동물 수렵 방지		이동학대 방지	
	평균 기부금	평균 참여율	평균 기부금	평균 참여율	평균 기부금	평균 참여율
앨라배마	0.66	0.7	20.33	0.1	11.44	0.2
애리조나	23.33	0.1	17.00	0.5	17.00	0.6
캘리포니아			12.07	0.4	10.86	0.4
콜로라도			10.85	1.8	10.05	1.5
코네티컷			8.21	0.6		
델라웨어			14.53	0.4	13.61	0.4
조지아			8.81	0.9	8.18	0.8
하와이	2.68	15.0				
아이다호	1.52	3.7	12.81	0.8	14.34	0.9
일리노이			11.36	0.4		
인디애나			11.38	1.1		
아이오와	1.50	6.8	10.63	1.0		
캔사스			10.62	0.9		
캔터키	2.82	4.6	6.65	0.6	6.28	0.7
루이지애나			11.57	0.0	12.75	0.0
메인	9.67	0.4	13.43	0.6	15.07	0.5
메릴랜드	10.49	0.5				
메사추세츠	0.37	10.2	9.36	0.8		
미시간	3.00	12.0				
미네소타	7.07	8.8	13.23	3.6		
미시시피			4.87	0.1		
미주리						0.0(#)
몬타나			13.05	0.4	14.19	0.5
네브라스카	3.68	0.4	5.91	1.6		
뉴저지	1.00	18.1	12.72	0.5	10.76	0.5
뉴멕시코	8.83	0.2	20.35	0.2		
뉴욕			11.28	0.5	8.45	0.3
노스 캐롤라이나	1.00	11.1	11.62	0.9		
노스 다코타			8.28	0.7		
오하이오	1.32	7.1	7.35	1.0		
오클라호마			5.89	0.5		
오레곤			6.51	1.2	6.76	1.6
펜실베이니아			7.59	0.3		
로드아일랜드	3.79	27.7	4.17	0.3		
사우스 캐롤라이나			10.39	0.4	8.75	0.3
유타	2.00	7.5	10.25	0.5		
버몬트	8.40	0.7	13.54	2.3	13.24	1.7
버지니아	18.85	0.1	24.19	0.2	22.25	0.1
위스콘신	1.41	9.1	14.87	1.7		
웨스트버지니아					7.43	1.0
주 평균	2.13	7.7	11.07	0.7	10.62	0.5

주: 메사추세츠 주는 2000년 기준이고 나머지 주는 모두 2002년 기준임.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State Check-off Programs : Average Contribution and Percent Yield.

대통령선거에 사용되는 공적인 기금, 즉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을 4년마다 대통령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대통령후보자와 전국정당위원회에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는 경우 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III. 미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대통령선거운동기금

1.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조성 및 분배

대통령선거에 사용되는 공적인 기금, 즉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을 4년마다 대통령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대통령후보자와 전국정당위원회(national party committees)에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는 경우 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선거에서 후보자는 대통령선거운동기금 외의 다른 재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⁴⁾.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령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 ① 대통령예비선거후보자(Presidential Primary Candidates)
- ② 대통령본선거후보자(Presidential Nominees in the General Election)
- ③ 대통령지명 전당대회(Party Nominating Conventions)

대통령예비선거후보자 및 대통령본선거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광범위한 전국적 지지를 증명할 수 있는 대통령후보
- ② 다른 사적인 기부금(예: 개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 political action committees))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본선거후보
- ③ 선거운동에 자기 자신의 부담(personal fund or the personal funds of his immediate family)으로 5만달러 이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후보⁵⁾
- ④ 수령자는 총지출한도를 지켜야 함.

4) 만일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정치위원회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재무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정당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를 대신해서 제한된 금액을 지출할 수 있음.

5) 대통령 후보자와 그 가족이 대통령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기부 가능한 한도는 50,000달러라는 1971년의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가 그대로 적용된 것임. 여기서 가족(immediate family)이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붓자녀를 말함. 이러한 관계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붓자녀도 해당됨.

2.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분배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역할

가.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는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 금액이 대통령선거기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감독한다.

나.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의 운영예산은 check-off 프로그램이 아닌 정부의 일반수입 (general government revenues)으로 이루어지므로 check-off 금액은 모두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 FEC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후보자의 적격성 및 예비선거후보자가 받는 보조금(matching fund)의 금액의 적합성 판정·승인
- ②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받은 위원회 감사
- ③ 후보자와 위원회에 의해 보고된 선거운동 재정데이터 보고·발간
- ④ 위반사항 조사 및 법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제

다.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재무부는 후보자와 위원회에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재무부는 법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대로 남아 있는 기금을 분배한다. 법에 의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대통령지명 전당대회 (party nominating conventions), 2순위는 대통령본선거후보자 (general election nominees), 3순위는 대통령예비선거후보자 (primary election candidates)이다.

3.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분배방법

미국의 대통령선거운동자금법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은 대통령 선거운동기금의 분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비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주에서 5천달러씩, 최소 20개 주에서 각 10만달러 이상을 모집하여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부자 1인당 250달러까지를 매칭해서 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요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 달러를 기부하더라도 이 중 기부금의 첫 250달러의 총합에 대해 250달러를 기금에서 지급한다.

가. 예비선거 보조금(Primary Matching Payments)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또는 Presidential primaries)의 적격 후보자는 자신들이 모금한 사적 기부금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적 기부금은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만 해당하며, PACs와 정당위원회에서 받은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비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주에서 5천달러⁶⁾씩, 최소 20개 주에서 각 10만달러 이상을 모집하여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부자 1인당 250달러까지를 매칭(matching)해서 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요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달러를 기부하더라도 이 중 기부금의 첫 250달러의 총합에 대해 250달러를 기금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연방선거법이 정한 지출한도를 지켜야 하는데, 1974년 기준으로 1천만달러인 지출한도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000년 선거시 지출한도는 약 3,378만달러였다.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금액의 20%는 지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지출한도는 20%까지 늘어난 셈이다. 법에 의해 지출된 법적 비용 및 회계비용은 지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 예비선거에서 11명의 대통령후보 중 9명이 기금에 참여하였으며, 공적 보조금은 총 6,100만달러가 소요되었다.

예비선거의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예비선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총지출한도는 약 4,500만달러(2004년 예비선거시)
- ② 각 주에서 선거운동 지출한도는 약 74만달러(2004년 예비선거시) 또는 주에서 투표 가능한 연령해당자 수를 기초로 산정된 특정금액 중 큰 금액
- ③ 개인적 자금(personal funds)의 지출한도는 5만달러

6) 이 때 각 주에서 모금하는 5천달러의 경우 각 기부자의 250달러 이하 금액의 총합이어야 함. 즉, 한 개인이 1,000달러를 기부했다더라도 최대 250달러만 계산됨.

나. 본선거 보조금(General Election Grants)

본선거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중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에서 승리한 경우 본선거운동(general election)에 사용된 모든 경비를 충당할 기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본선거 보조금으로 George W. Bush와 John F. Kerry가 각각 7,462만달러를 받았다. 소수 정당 후보자와 신당 후보자도 본선거운동의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수 정당 후보자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5~25%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대통령지명자이다. 신당 후보자는 5%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 선거 후 부분적인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의 경우 본선거 보조금으로 Patrick J. Buchanan이 1,261만달러를 받았다. 기금을 받은 후보자는 개인이나 PACs 또는 정당위원회로부터 사적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그들이 받은 보조금을 한도로 선거운동 경비를 제한한다. 보조금은 선거운동경비로만 사용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는 제한된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금액(예: 법적 비용 및 회계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해 compliance fund를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1천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출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전당대회 보조금(Party Convention Grants)

주요 정당은 전국 대통령지명 전당대회(National Presidential Nominating Convention)를 위해 사용할 비용을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주요 정당은 각각 1,351만달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1,460만달러를 받았다. 다른 정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최소한 5%의 득표를 한 후보자인 경우 부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당대회위원회(Party Convention Committee)는 주요 정당이 받은 기금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 그러나 2002년 초당적 선거개혁법(BCRA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이전에는 연성자금(soft money)⁷⁾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여 지출한도가 의미가 없었다. 2000년의 선거를 예로 들면,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4,650만달러와 5,3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연성자금이었다.

7) 경성자금(hard money)은 선거운동시 사용되는 인건비, 개인홍보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 등등 직접적으로 '후보자 개인'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연성자금(soft money)은 선거시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홍보, 선거홍보를 배포, 투표자 명부 작성, 그리고 투표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수송 등 정당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을 말함. 특정후보에게 실명으로 기부되는 것으로 금액과 사용처를 규제받는 경성자금과는 달리 연성자금은 보통 부유한 사람들과 기업으로부터 10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기부금 형태로 모금하였으며, 특정 정당에 무제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데다 자금이동경로가 확실치 않아 논란이 있었음. 2002년 초당적 선거개혁법(BCRA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에 의해 연성자금(soft money)의 모집은 금지됨.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FECA)은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 정당위원회, PACs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 한도는 개별선거마다 각각 적용된다. 예비선거, 결선투표, 본선거는 각각의 선거로 간주되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경우 모든 선거(대통령 본선거 제외)는 하나의 선거로 간주된다.

V.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와 관련한 기부한도

1. 미국

가. 정치자금 기부한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FECA)은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 정당위원회, PACs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 한도는 개별선거마다 각각 적용된다. 예비선거, 결선투표, 본선거는 각각의 선거로 간주되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경우 모든 선거(대통령 본선거 제외)는 하나의 선거로 간주된다. 기부금 지출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노동조합, 연방정부사업의 계약자, 그리고 외국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없다. 셋째, 현금으로 100달러 이상 기부할 수 없다. 넷째, 외국인, 전국은행(national bank), 연방정부가 승인한 기업(federally chartered corporation)은 연방선거뿐 아니라 주와 지역선거와 관련한 기부금과 지출도 금지된다.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예:PACs)는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은 무제한 사용가능하다. 또한 기업 및 노동조합은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나 지출을 할 수 없지만, PACs를 조직할 수 있다. PACs는 제한된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을 연방 후보자와 정치 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나.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취급

개인소득세의 경우 정치기부금(Political contributions)은 세금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단체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법인세의 경우 정치기부금은 기부금공제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표 4〉 기부 한도

		수령자				
		개별후보 또는 후보위원회	전국정당 위원회	주/지구/지역 정당위원회	PAC	특별한도
기 부 자	개인	\$2,000/선거	\$25,000/년	\$10,000(합)/년	\$5,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마다 총한도 \$95,000 (A) 모든 개별후보 또는 후보위원회에게 \$37,500 (B) 주/지구/지역정당 위원회와 PACs 에게는 \$57,500
	전국정당위원회	\$5,000/선거	한도 없음	한도 없음	\$5,000/년	• 선거마다 상원의원에게 \$35,000
	주/지구/지역 정당 위원회	\$5,000(합)/선거	한도 없음	한도 없음	\$5,000(합)/년	한도 없음
	복수후보 PAC	\$5,000/선거	\$15,000/년	\$5,000(합)/년	\$5,000(합)/년	한도 없음
	비복수후보 PAC	\$2,000/선거	\$25,000/년	\$10,000(합)/년	\$5,000/년	한도 없음

자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 우리나라

가. 정치자금 기부한도⁸⁾

누구든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년 3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준위 포함)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인의 연간납입한도액 내의 금품을 모집하여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참조.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준위 포함)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인의 연간납입한도액 내의 금품을 모집하여 당해 정당 등에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다음과 같다.

- ①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표 5> 후원인의 기부한도

후 원 회 별	연간 납입·기부한도
중앙당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 시·도당후원회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	각각 500만원 이하

- ③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④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③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⑤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함.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는 다음과 같다.
 - ①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표 6>과 같으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 등’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음.
 - ② 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①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함.

③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음

〈표 6〉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후원회별	평년	공직선거연도
중앙당(중앙당창준위 포함)후원회	50억원	100억원
시·도당후원회	5억원	10억원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후원회	1억 5천만원	3억원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후원회에 한함.
국회의원후보자 등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기부의 제한⁹⁾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나.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한 세제상 취급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다만,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정당 등으로부터 기부 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제혜택대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기탁금 등이다.

9)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7대 국회부터는 법인후원이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전면금지하고 온라인 송금만을 허용하고 있음.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VI. 시사점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¹⁰⁾. 다만 우리나라의 목적세의 경우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한 세목으로 과징하는 조세이지만,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징수되는 세수 중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납세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check-off 프로그램이 없이도 공익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범위 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¹⁾.

첫째,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부패되었다는 인식을 감소시켜 주고 정치자금의 공개적인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기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둘째, check-off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소액씩을 모아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일부 부유층이나 이익단체들의 자기에 의한 선거 결과에 따라 공공정책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패한 정치자금이 정치·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check-off

10) Check-off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check-off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자금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11) 미국의 주정부는 주지사 선거를 위한 정치후원금 이외에도 연방정부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check-off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주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check-off 프로그램을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주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호, 아동학대 방지 등 다양한 부문의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대체수단이 되고 있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후원금을 제외한 check-off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주는 납세자의 납세액 일부를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받을 환급액의 일부를 기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둘째,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만으로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운 공익사업을 납세자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check-off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자선단체에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기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¹²⁾.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정치자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 중에서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므로 결국 재정이 선거자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선거자금을 부담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도로 인한 차이가 정치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에 대한 세제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그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만큼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효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중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적인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check-off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운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가 정치자금을 재정으로 부담하면서도 현행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에 대한 세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check-of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소액의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하므로 수많은 납세자, 즉 국민들이 자신이 부담한 세금 중에서 소액

12) 먼저 정치자금 이외의 공익과 관련한 check-off 프로그램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판단됨. 첫째,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민간 부문이 국민복지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익과 관련한 check-off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둘째, 공익과 관련한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각종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신고서식은 두 페이지에 불과한데, check-off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기부금의 수혜기관 또는 사업내용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서식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13) 다만 후원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한정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님.

Check-of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소액의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하므로 수많은 납세자, 즉 국민들이 자신이 부담한 세금 중 소액씩을 모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된다. 이는 특정 후보를 후원하는 현행 정치자금의 기부와는 달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치 전체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씩을 모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된다. 이는 특정 후보를 후원하는 현행과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와는 달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치 전체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허용받은 세수를 기금으로 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므로 수많은 납세자, 즉 국민들은 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거자금 사용처에 대한 사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후점검은 각 후보자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점검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후보자 또는 정당은 특정 후보를 후원하는 현행과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비해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훨씬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이다.

Check-off 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선거기금이 마련된다면 수많은 기금에 더하여 또 하나의 기금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한 대통령선거기금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면 이 기금은 가장 의미가 있는 기금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사한 check-off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선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으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heck-off 금액의 한도, 기금의 운영방안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5년에만 번씩 있기 때문에 납세자 1인당의 한도가 많은 금액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check-off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 정치의 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고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 제도를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은 check-off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검토 이외에도 check-off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과세당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 쉬운 정치자금제도』, 2004.

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 “Contribution Limits and Prohibitions”.

_____, *Federal Election Commission RECORD*, April 2004.

_____, “The Campaign Finance Law”.

_____, “The FEC and the Federal Campaign Finance Law”.

_____, “The \$3 Tax Checkoff,” December 1993.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Check-off Programs See Strong Growth,”
April 2003.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John Surina, “Statu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January 13,
1998.

Joseph E. Cantor, et. al,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nd Tax Checkoff :
Background and Current Issues”, March 18, 1997.

Public Citizen, “How the Presidential Public Financing Program Works”

Wikiverse, Campaign Finance Reform, (<http://campaign-finance.wikiverse.org/>).

〈부록 1〉 미국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 Department of the Treasury—Internal Revenue Service **2004**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99) (99) Use Only—Do not write or stamp in this space.

For the year Jan. 1–Dec. 31, 2004, or other tax year beginning _____, 2004, ending _____, 2004. **OMB No. 1545-0047**

Label
[See instructions on page 16.]
Use the IRS label.
Otherwise, please print or type.

L A S T N A M E
Your first name and initial _____ Last name _____ Your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If a joint return, spouse's first name and initial _____ Last name _____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H O M E A D D R E S S
Home address (number and street). If you have a P.O. box, see page 18. Apt. no. _____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If you have a foreign address, see page 18.

Important!
You must enter your SSN(s) abov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See page 75.) Note. Checking "Yes" will not change your tax or reduce your refund.
Do you, or your spouse if filing a joint return, want \$3 to go to this fund? Yes No Yes No

Filing Status
Check only one box.
1 Single
2 Married filing jointly (even if only one had income)
3 Married filing separately. Enter spouse's SSN above and full name here. ▶
4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See page 17.) If the qualifying person is a child but not your dependent, enter this child's name here. ▶
5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see page 17)

Exemptions
6a Yourself. If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do not check box 6a.
6b Spouse
6c **Dependents:**
(1) First name _____ Last name _____ (2) Dependent's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3) Dependent's relationship to you _____ (4) If qualifying child (see page 13), did he or she live with you? Yes No
If more than four dependents, see page 18.
6d Total number of exemptions claimed _____

Income
Attach Form(s) W-2 here. Also attach Forms W-2G and 1099-R if tax was withheld.
If you did not get a W-2, see page 19.
Enclose, but do not attach, any payment. Also, please use Form 1040-V.

7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s) W-2		7
8a	Taxable interest. Attach Schedule B if required		8a
b	Tax-exempt interest. Do not include on line 8a	8b	
9a	Ordinary dividends. Attach Schedule B if required		9a
b	Qualified dividends (see page 20)	9b	
10	Taxable refunds, credits, or offsets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see page 20)		10
11	Alimony received		11
12	Business income or (loss). Attach Schedule C or C-EZ		12
13	Capital gain or (loss). Attach Schedule D if required. If not required, check here ▶ <input type="checkbox"/>		13
14	Other gains or (losses). Attach Form 4797		14
15a	IRA distributions	15a	15b
b	Taxable amount (see page 20)		
16a	Pensions and annuities	16a	16b
b	Taxable amount (see page 20)		
17	Rental real estate, royalties, partnerships, S corporations, trusts, etc. Attach Schedule E		17
18	Farm income or (loss). Attach Schedule F		18
19	Unemployment compensation		19
20a	Social security benefits	20a	20b
b	Taxable amount (see page 24)		
21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see page 24)		21
22	Add the amounts in the far right column for lines 7 through 21. This is your total income ▶		22

Adjusted Gross Income

23	Educator expenses (see page 26)		23
24	Certain business expenses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and fee-basis government officials. Attach Form 2106 or 2106-EZ		24
25	IRA deduction (see page 26)		25
26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see page 26)		26
27	Tuition and fees deduction (see page 26)		27
28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Attach Form 8889		28
29	Moving expenses. Attach Form 3903		29
30	One-half of self-employment tax. Attach Schedule SE		30
31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see page 30)		31
32	Self-employed SEP, SIMPLE, and qualified plans		32
33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33
34a	Alimony paid & Recipient's SSN ▶	34a	
35	Add lines 23 through 34a		35
36	Subtract line 35 from line 22.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		36

For Disclosure, Privacy Act, and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page 75. Cat. No. 112208 Form **1040** (2004)

Form 1040 (2004) Page **2**

Tax and Credits	37 Amount from line 36 (adjusted gross income) 37 38a Check <input type="checkbox"/> You were born before January 2, 1940, <input type="checkbox"/> Blind, <input type="checkbox"/> Total boxes if: <input type="checkbox"/> Spouse was born before January 2, 1940, <input type="checkbox"/> Blind, checked ▶ 38a 38a	
Standard Deduction for— • People who checked any box on line 38a or 38b or who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see page 31. • All others: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4,950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 \$9,700 Head of household, \$7,150	39 Revis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or your standard deduction (see left margin) 39 40 Subtract line 39 from line 37 40 41 If line 37 is \$107,025 or less, multiply \$3,100 by the total number of exemptions claimed on line 6d. If line 37 is over \$107,025, see the worksheet on page 33 41 42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41 from line 40. If line 41 is more than line 40, enter -0- 42 43 Tax (see page 32). Check if any tax is from: a <input type="checkbox"/> Form(s) 9814 b <input type="checkbox"/> Form 4572 43 44 Alternative minimum tax (see page 35). Attach Form 6251 44 45 Add lines 43 and 44 45	
	46 Foreign tax credit. Attach Form 1116 if required 46 47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Attach Form 2441 47 48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Attach Schedule R 48 49 Education credits. Attach Form 8863 49 50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Attach Form 8880 50 51 Child tax credit (see page 37) 51 52 Adoption credit. Attach Form 8839 52 53 Credits from: a <input type="checkbox"/> Form 8396 b <input type="checkbox"/> Form 8859 53 54 Other credits. Check applicable box(es): a <input type="checkbox"/> Form 3800 b <input type="checkbox"/> Form 8801 c <input type="checkbox"/> Specify 54	
	55 Add lines 46 through 54. These are your total credits 55 56 Subtract line 55 from line 45. If line 55 is more than line 45, enter -0- 56	
	Other Taxes	57 Self-employment tax. Attach Schedule SE 57 58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on tip income not reported to employer. Attach Form 4137 58 59 Additional tax on IRAs, other qualified retirement plans, etc. Attach Form 5329 if required 59 60 Advance earned income credit payments from Form(s) W-2 60 61 Household employment taxes. Attach Schedule H 61 62 Add lines 57 through 61. This is your total tax 62
	Payments	63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Forms W-2 and 1099 63 64 2004 estimated tax payments and amount applied from 2003 return 64 65a Earned income credit (EIC) 65a b Nonrefundable combat pay election ▶ 65b 65b 66 Excess social security and tier 1 RRTA tax withheld (see page 54) 66 67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ttach Form 8812 67 68 Amount paid with request for extension to file (see page 54) 68 69 Other payments from: a <input type="checkbox"/> Form 2439 b <input type="checkbox"/> Form 4136 c <input type="checkbox"/> Form 8885 69 70 Add lines 63, 64, 65a, and 66 through 69. These are your total payments 70
	Refund	71 If line 70 is more than line 62, subtract line 62 from line 70. This is the amount you overpaid 71 72a Amount of line 71 you want refunded to you 72a ▶ b Routing number <input type="text"/> ▶ c Type: <input type="checkbox"/> Checking <input type="checkbox"/> Savings ▶ d Account number <input type="text"/> 73 Amount of line 71 you want applied to your 2005 estimated tax ▶ 73 73 74 Amount you owe. Subtract line 73 from line 62. For details on how to pay, see page 55 ▶ 74
	Amount You Owe	75 Estimated tax penalty (see page 55) 75
	Third Party Designee	Do you want to allow another person to discuss this return with the IRS (see page 56)? <input type="checkbox"/> Yes. Complete the following. <input type="checkbox"/> No Designee's name ▶ Phone no.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 ▶
	Sign Here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is return and accompanying schedules and state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y are true, correct, and complete. Declaration of preparer (other than taxpayer) is based on all information of which preparer has any knowledge. Your signature ▶ Date ▶ Your occupation ▶ Daytime phone number ▶ Taxpayer's signature. If a joint return, both must sign. ▶ Date ▶ Spouse's occupation ▶
	Paid Preparer's Use Only	Preparer's signature ▶ Date ▶ Check if self-employed <input type="checkbox"/> ▶ Preparer's SSN or PTIN ▶ Firm's name (or yours if self-employed, address, and ZIP code) ▶ EIN ▶ Phone no. ▶

Form 1040 (2004)

<부록 2> 뉴저지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NJ-1040 2004  **STATE OF NEW JERSEY INCOME TAX-RESIDENT RETURN** **1 of 4**

For Tax Year Jan. - Dec. 31, 2004. Or Other Tax Year Beginning _____ 2004, Month Ending _____ 25.

IMPORTANT! YOU MUST ENTER YOUR SSN (s). Fill in if application for Federal extension is enclosed or enter continuation # _____

Your Social Security Number [][]-[][]-[][][][]		Last Name, First Name and Initial (with last name only on this sheet) (Do not include DOB initials)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		Home Address (Include an area, multiple apartment or unit number)	
County/Municipality Code (See Table g, 3d)		City, Town, Post Office State Zip Code	

For Privacy Act Notification, See Instructions

FEILING STATUS (Fill in only one) 1. <input type="checkbox"/> Single 2. <input type="checkbox"/> Married, filing joint return 3. <input type="checkbox"/>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Enter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in the boxes provided above 4. <input type="checkbox"/> Head of household 5. <input type="checkbox"/> Qualifying widow(er)	EXEMPTIONS 6. Regular <input checked="" type="checkbox"/> Yourself <input type="checkbox"/> Spouse <input type="checkbox"/> Domestic Partner 7. Age 65 or Over <input type="checkbox"/> Yourself <input type="checkbox"/> Spouse 8. Blind or Disabled <input type="checkbox"/> Yourself <input type="checkbox"/> Spouse 9. Number of your qualified dependent children _____ 10. Number of other dependents _____ 11. Dependents attending colleges _____ 12. Totals (For Line 12a - Add Lines 6, 7, 8, and 10) (For Line 12b - Add Lines 9 and 10)	ENTER NUMBERS HERE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a [][] [][] [][] [][] 12b [][] [][] [][] [][]	
--	---	--	--

RESIDENCY STATUS 13. If you were a New Jersey resident for DRC, if part of the taxable year, give the period of New Jersey residency. From [][][][] To [][][][]

GUBERNATORIAL ELECTIONS FUND Do you wish to designate \$1 of your taxes for this fund? Yes No Include if you file in this box, which is not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If joint return, does your spouse wish to designate \$1? Yes No

14. Wages, salaries, tips, and other employee compensation (Enclose W-2)	14	[][]	[][]	[][]	[][]	[][]	[][]
15a. Taxable interest income (See instructions)	15a	[][]	[][]	[][]	[][]	[][]	[][]
15b. Tax-exempt interest income (See instructions) DO NOT include on Line 15a	15b	[][]	[][]	[][]	[][]	[][]	[][]
16. Dividends	16	[][]	[][]	[][]	[][]	[][]	[][]
17. Net profits from business (Enclose copy of Federal Schedule C, Form 1040)	17	[][]	[][]	[][]	[][]	[][]	[][]
18. Net gains or income from disposition of property (Schedule D, Line 4)	18	[][]	[][]	[][]	[][]	[][]	[][]
19. Pensions, Annuities and IRA Withdrawals a. Taxable Amount Received	19a	[][]	[][]	[][]	[][]	[][]	[][]
b. Less N.J. Pension Exclusion	19b	[][]	[][]	[][]	[][]	[][]	[][]
c. Subtract Line 19b from Line 19a	19c	[][]	[][]	[][]	[][]	[][]	[][]
20. 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Income (See instruction page 32)	20	[][]	[][]	[][]	[][]	[][]	[][]
21. Net pro rata share of S Corporation Income (See instruction page 32)	21	[][]	[][]	[][]	[][]	[][]	[][]
22. Net gain or income from rents, royalties, patents & copyrights (Schedule C, Line 3)	22	[][]	[][]	[][]	[][]	[][]	[][]
23. Net Gambling Winnings	23	[][]	[][]	[][]	[][]	[][]	[][]
24. 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received	24	[][]	[][]	[][]	[][]	[][]	[][]
25. Other (See instruction page 33)	25	[][]	[][]	[][]	[][]	[][]	[][]
26. Total Income (Add Lines 14, 15a, 16, 17, 18, 19c, 20, 21, 22, 23, 24, and 25)	26	[][]	[][]	[][]	[][]	[][]	[][]



27. Total Income (From Line 26, Page 1)	27								
28. Other Retirement Income Exclusion (See Worksheet and inst. page 34)				28					
29. New Jersey Gross Income (Subtract Line 28 from Line 27)	29								
See instruction page 35.									
30a. Exemptions: From Line 12a _____ x \$1,000 = _____									
30b. From Line 12b _____ x \$1,500 = _____									
30c. Total Exemption Amount (Add Line 30a and Line 30b)	30c								
Part-Year Residents see instruction page 16.									
31. Medical Expenses	31								
(See Worksheet and instruction page 35)									
32. 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32								
33. 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	33								
34. Total Exemptions and Deductions (Add Lines 30c, 31, 32, and 33)	34								
35.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34 from Line 29)	35								
If zero or less, MAKE NO ENTRY.									
36. Property Tax Deduction (See instruction page 35)				36					
37. NEW JERSEY TAXABLE INCOME (Subtract Line 36 from Line 35)	37								
If zero or less, MAKE NO ENTRY.									
38. TAX (From Tax Table, page 5T)	38								
39. Credit For Income Taxes Paid to Other Jurisdictions (See instructions)	39								
40. Balance of Tax (Subtract Line 39 from Line 38)	40								
41. Use Tax Due on Out-of-State Purchases (See instruction page 41)	41								
If no Use Tax, enter ZERO (0.00).									
42. Total Tax (Add Line 40 and Line 41)	42								
43. Total New Jersey Income Tax Withheld (Enclose Forms W-2 and 1099-R)	43								
44. Property Tax Credit (See instruction page 36)					44				
45. New Jersey Estimated Tax Payments/Credit from 2003 tax return	45								
Fill in <input type="checkbox"/> if Form NJ-2219 is enclosed.									
46. New Jersey Earned Income Tax Credit (See schedule Page 3)					46				
47. EXCESS New Jersey UNEMPLOYMENT Withheld (See inst. page 43) (Enclose Form NJ-2493)					47				
48. EXCESS New Jersey Disability Insurance Withheld (See inst. page 43)					48				
(Enclose Form NJ-2493)									
49. Total Payments/Credits (Add Lines 43 through 48)	49								

BE SURE TO COMPLETE PAGES 3 AND 4

TR-1040
2004



STATE OF NEW JERSEY
FAIR REBATE APPLICATION (FOR TENANTS)

4 of 4

IMPORTANT! YOU MUST ENTER YOUR SSN (s).

<p>Your Social Security Number [][]-[][]-[][][][]</p> <p>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p> <p>County/Municipality Code (See Table p. 53) [][][][]</p> <p>1. <input type="checkbox"/> Single 2. <input type="checkbox"/> Married, filing joint return 3. <input type="checkbox"/>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4. <input type="checkbox"/> Head of household 5. <input type="checkbox"/> Qualifying widow(er)</p>	<p>Last Name, First Name and Initial (provide also because no index of last - line space but use 00/1 if absent)</p> <p>Home Address (include unit first including apartment number if not used)</p> <p>City, Town, Post Office State Zip Code</p> <p>RESIDENCY STATUS 6. If you were a New Jersey resident for ONLY part of the taxable year, give the period of New Jersey residency From [][]/[][]/[][] To [][]/[][]/[][]</p>
--	---

For Forms Act/Instructions, See Instructions. Please indicate how you completed information on this Form. Attachments. Enter your name and address.

7. On October 1, 2004, I rented and occupied an apartment or other rental dwelling in New Jersey as my principal residence.
 Yes No If "No," STOP. You are not eligible for a rebate as a tenant and you should not file this application. See instruction page 53.

8. On December 31, 2004, I (and/or my spouse) was a. i-- Age 65 or older b. ii-- Blind or disabled c. iii-- Not 65 or blind or disabled
Fill in only one oval. See instruction page 53.

9. Enter the GROSS INCOME you reported on Line 28, Form NJ-1040 or see instructions: 9 [][][][] [][][][] [][][][]

10. If your filing status is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and you and your spouse MAINTAIN THE SAME PRINCIPAL RESIDENCE, enter the gross income reported on your spouse's return (Line 28, Form NJ-1040) and fill in oval: 10 [][][][] [][][][] [][][][]

11. TOTAL GROSS INCOME (Add Line 9 and Line 10) 11 [][][][] [][][][] [][][][]

STOP - IF LINE 11 IS MORE THAN \$108,280, YOU ARE NOT ELIGIBLE FOR A REBATE.

12. Enter the address of the rental property in New Jersey that was your principal residence on October 1, 2004.
Street Address (including apartment number) _____ Municipality _____

13. Enter the total rent you (and your spouse) paid during 2004 for the rental property indicated at Line 12: 13 [][][][] [][][][] [][][][]

14. Enter the number of days during 2004 that you (and your spouse) occupied the rental property indicated at Line 12. (If you lived there for all of 2004, enter 365) 14 [][][][]

15. Did anyone, other than your spouse, occupy and share rent with you for the rental property indicated at Line 12?
Yes No (If yes, you must complete Lines 15 a, b, and c) No

15a. Enter the total number of tenants (including yourself) who shared the rent during the period indicated at Line 14. (For this purpose, husband and wife are considered one tenant). 15a [][][][]

15b. Enter the name(s) and social security number(s) of all other tenants (other than your spouse) who shared the rent.
Name _____ SSN _____ / _____ / _____
Name _____ SSN _____ / _____ / _____
Name _____ SSN _____ / _____ / _____

15c. Enter the total rent paid by all tenants during the period indicated at Line 14: 15c [][][][] [][][][] [][][][]

SIGN HERE

Under the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is income tax return and Fair Rebate application, including accompanying schedules and state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and that I occupied the rental property for which I am applying for the Fair Rebate as my principal residence on October 1, 2004. If prepared by a person other than taxpayer, this declaration is based on all information of which the preparer has any knowledge.

• Your Signature _____ Date _____
• Spouse's Signature (if filing jointly, BOTH must sign) _____ Date _____
• If you do not need forms mailed to you next year, fill in (See instruction page 22)
• I authorize the Division of Taxation to discuss my return and endorsement with my preparer (below)
Preparer's Signature _____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 [][][][] [][][][]
Firm Name _____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 [][][][]

If you are ONLY filing a Fair Rebate Application, mail your application to:
NJ Division of Taxation
Revenue Processing Center
P.O. Box 187
Trenton, NJ 08646-0187

기획

기획 주요국의 세계개편 동향

2005년도 일본의 세계개편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23.00	29.81	25.92	141.21	187.05
480.29	123.98	75.81	24.52	25.24
207.87	484.13	122.07	77.35	75.07
2,607.36	209.53	-476.45	124.84	121.76
212.28	2,628.21	206.2	7.49	473.09
2,068.18	213.97	2,587.4	10.98	204.76
555.98	2,084.72	3.2	46.47	2,568.25
305.52	560.42	2,099.20	215.46	209.10
638.36	307.96	554.31	310.10	300.94
172.72	643.4	310.10	647.93	628.79
526.89	174	175.11	534.79	170.13
93.76	57	95.16	93.38	93.38
31.01	33.79	31.47	31.47	31.47
987.29	987.29	987.29	987.29	987.29

* 『재정포럼』에서는 2005년 1월호부터 주요국의 세계개편 동향을 기획특집으로 마련하여 매월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2005년도 일본의 세계개편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원 중 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weon@kipf.re.kr)

I. 서론

일본의 세제개편 과정을 보면, 먼저 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에서 매년 경제·사회의 구조 및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세제가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을 작성하여 수상에게 보고한다. 이후 집권당인 자민당의 세제조사회가 정부세제조사회가 작성한 답신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세제개정대강(稅制改正大綱)」을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정요강(稅制改正要綱)」이 각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 세제개정요강에 근거하여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²⁾, 이 법률안

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05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일정을 보면, 작년 11월 25일에 정부세제조사회에서 「헤이세이(平成) 17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을 작성, 보고하였으며, 12월 19일에 여당인 자민당에서 「헤이세이(平成) 17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작성하였다. 이후 올해 1월 17일에 「헤이세이(平成) 17년도 세제개정요강」이 각의 결정된 상태이다³⁾.

2005년도의 세제개정은 2004년도의 개정에 이어, 경제·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구축에 관한 검토가 행해졌으며, 세제개정은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정부세제조사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국중호(2002)를 참조하기 바람.

2)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명은 연도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2004년에 제출된 법률명은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었다.

3) 통상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월 초이며, 2월중, 늦어도 3월 안에 최종 확정된다.

2005년도의 세제개정은 2004년도의 개정에 이어, 경제·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구축에 관한 검토가 행해졌으며, 세제개정은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는 2005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⁴⁾」과 「세제개정요강」을 중심으로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II절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주요 세제개혁 및 최근의 세제개혁 동향,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세제개혁 방향 등을 검토한 다음, III절에서는 2005년도의 세제개정을 세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IV장은 정책적 시사점이다.

II 일본의 세제개혁

1. 일본의 주요 세제개혁

2005년도의 세제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일본의 세제개혁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1949년 5월 일본에 도착한 샤우프(C. Shoup)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은 동년 9월에 일본세제의 전면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이를 샤우프 권고안이라고 한다. 포괄적 세제개혁을 제시한 샤우프 권고안은 1949년, 1950년의 세제개정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일본세제

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샤우프 권고안의 이념은 영구적이며 안정적인 세제를 확립하여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소득세는 과세단위를 동거친족 합산과세에서 개별소득자 단위과세로 변경하였으며,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전액 과세나 이자소득의 원천선택과세 폐지 등을 통해 과세 베이스를 포괄적으로 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었다.

법인세는 35%의 단일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1948년에 도입된 배당세액공제에 관해 법인은 개인의 집합체라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이를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써 위치부여를 함과 동시에 배당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이외에도 500만엔을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0.5~3.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부유세의 도입, 상속세·증여세를 일원화한 누적적 취득세 제도의 도입, 조세특별조치의 감축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장부서류에 거래내역을 기장하게 하는 관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방세는 지조(地租), 가옥세를 개정하여 고정자산세(부동산세)로 통합하였으며, 집행상의 곤란

4) 정부세제조사회가 작성하는 답신을 집권당의 세제조사회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부세제조사회의 답신 내용이 전부 법률화 되는 것은 아니나 거의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

을 이유로 실시 전에 폐지는 되었으나 사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여 입법화까지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샤우프 권고에 근거한 세제는, 이론적으로 수미 일관된 조세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나, 집행상의 어려움과 2차대전 직후의 일본의 경제·사회 실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 도입 직후부터 수정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집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953년 부유세, 누적적 취득세 제도가 폐지된 것 외에도, 1954년 부가가치세가 한번도 실시되지 못한 채 폐지되어 사업세가 계속해서 부과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샤우프 세제 이후 일본의 주요 세제개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 및 소비세의 도입을 비롯한 간접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정을 실시한 1987~1988의 세제개혁, 지가세(地價稅)의 도입을 포함한 토지세제의 종합적인 개정을 실시한 1991년도의 세제개혁,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중견 소득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배경으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의 누진구조 완화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소비세 특별조치 등의 개혁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을 결정한 1994년의 세제개혁, 그리고 경기회복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인소득과세의 정률감세 등의 영구적인 감세가 행해진 1999년의 세제개혁을 들 수 있다.

2. 최근 일본의 세제개편

이상의 개략적인 세제개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세제는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천하여 왔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형태 및 개인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고 장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활성화 실현을 위해 세제를 새로운 사회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최근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친 답신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제개혁방안을 보면, 1)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사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실시할 것 2)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세부담의 왜곡이나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는 세제상의 조치를 적정화 할 것 3)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간소화할 것 4)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구축할 것 5)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세의 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점에 입각하여, 최근 들어 실시한 세제개혁을 보면 먼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저하 경향에 대응하고, 개인 금융자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의 유용한 활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증권세제의 경감·간소화, 상속세·증여세의 통합화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이나 자원·자본·지식의 흐름변화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설비투자 감세의 집중·중점화 외에도 약 30년 만에 미·일조세조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의 노력과 상호 작용하여 착실하게 경제·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조세부담의 왜곡을 시정하는 관점에서

오늘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을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형태 및 개인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고 장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활성화 실현을 위해 세제를 새로운 사회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배우자특별공제(증가분에 대한)의 폐지, 연금과 세 개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세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제도 등의 개혁도 실시하였다.

3. 앞으로의 세제개혁 방향

최근 일본 경제는 불량채권처리를 비롯한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기업부문의 이자부채가 버블 붕괴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민간경제의 체질강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이익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설비 투자도 증가하였다. 유효구인배율⁵⁾의 상승과 더불어 실업률이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개인소비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정은 버블 붕괴 이후 대규모 경기대책 실시로 인한 장기부채 잔액 누증으로 인해 선진국 중 최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방치하면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저하를 배경으로 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기능,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에 대한 국민이나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 등 미증유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세제조사회는 위기적인 재정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공적 부문을 구축하기 위해 세입·세출 양면으로부터의 재정구조개혁, 중앙·지방의 삼위일체 개혁, 조세·사회보장부담에 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세입·세출 양면으로부터의 재정구조개혁은 경제규모에 비해 공채잔고가 누증하지 않는 재정 체질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1)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2) 사무·사업의 민영화, 규제개혁 추진 3) 각종 제도·시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 자주성,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이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중앙·지방정부간의 삼위일체 개혁을 들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간의 삼위일체 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원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에 관한 개혁을 지칭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개혁의 달성을 위해서는 2006년도까지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에 맞춰 본격

5) 최근 3개월간의 구인배율. 구인배율= 구인자수 / 구직자수.

적인 세원이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세 체계 가운데 개인주민세가 응익성,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합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의 이양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사회보장부담에 관한 개혁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의 활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예컨대 조세·사회보장부담에 재정적자를 더한 잠재적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의 목표를 50% 정도로 하면서, 정부규모 상승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사회보장급부의 형태에 관해 연금, 의료, 간호(介護)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정책이나 출산율 저하 대책과의 관련도 고려하면서,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던 우상향 경제의 종언이나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경제·사회의 질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중앙·지방간의 삼위일체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수미상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세제개혁 방안을 개별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소득과세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여러 번에 걸친 감세 결과, 주요국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다. 지속가능한 공적 부문의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소득

과세에 대해 재원 조달이나 소득재분배 등 본래 소득세가 달성해야 할 기능 회복에 힘을 필요로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변경할 때는 이상의 재분배 기능의 회복에 더하여 저출산율, 고령화의 진전, 가족세대 유형이나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하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한 한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부담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세원이양

중앙·지방의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서 보조금 개혁과 함께, 2006년까지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 본격적인 세원이양이 실시되게 된다. 이 세원이양은 폐지되는 국고보조부담금에 관한 재원조치로서 실시되는 만큼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영구조치로서 실시되는 것이 적당하다.

한편 세원이양시에는 개인소득과세 체계에서의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역할분담의 명확화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응익성이나 편재도(偏在度) 축소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할(所得割)의 세율 평탄화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2) 정률감세

정률감세는 소득세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1999년도 세정개정 당시 현저히 정체한 경제활동의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소득과세의 근본적 개혁까지 긴급피난적인 특별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은 구조개혁의 진전으로 인해 민간경제의 체질강화

정부세제조사회는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던 이상향 경제의 종언이나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경제·사회의 질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중앙·지방간의 삼위일체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수미상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실현되고 있어 정률감세가 실시된 1999년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호전되고 있다. 또한 계속하여 개혁이 결실을 맺는다면 민주주의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률감세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개인주민세

주민세란 도도부현(道都府縣)세와 시정촌(市町村)⁶⁾세를 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민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개인주민세의 납세자는 시정촌(도도부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시정촌(도도부현) 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당해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이 있는 시정촌(도도부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로서, 전자에 대해서는 시정촌민세 3천엔과 도도부현민세 1천엔(均等割額) 및 소득에 따른 주민세(所得割額)의 합산액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균등할액에 따라 과세한다.

균등할(均等割)인 세율은 이제까지의 국민소득이나 지방세출 등의 추이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세율 인상이 요구되고 있

다.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할액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비용을 주민이 그 능력에 따라 부담을 넓게 분담한다고 하는 개인주민세의 성격이나 응익원칙에 근거하여 과세 베이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관한 비과세 한도액 제도는 현역세대와 고령자간의 조세부담 공평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자와 같이 정말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나. 소비세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대 초반에 기초적인 재정수지 흑자를 위해 세입·세출 양면에서 재정 구조개혁을 추진해 가야 한다. 세출개혁 노선의 견지·강화와 함께 소비세에 관해서도 국민적인 논의를 해 갈 필요가 있다.

소비세는 모든 세대가 넓게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세목이다. 앞으로 소비세 체계구축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장래 소비세

6) 도도부현(道都府縣)과 시정촌(市町村)은 일본의 행정단위임.

을 수준이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경우, 식료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의 채용 여부가 검토 과제가 된다. 그러나 소비세의 세율구조의 형태에 관해서는 제도의 간소화, 경제활동에 대한 중립성의 확보, 사업자의 사무분담, 세무집행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는 세제 전체나 세출을 포함한 재정 전체의 입장에서, 최근 민간 비영리활동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세는 재정 전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세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재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세율을 인상할 때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사회보장의 급부수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상속세

상속세 부담은 누차에 걸친 감세나 각종 특례의 확충에 의해 대폭 완화되었다. 한편, 최근 경제의 스톡(stock)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배경으로 고령자층의 자산보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득, 소비, 자산 등의 다양한 과세베이스에 적절한 부담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과 특히 앞으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자산의 재분배기능을 지니는 상속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저출산율, 고령화의 진전이나 노후부양 사회화에 따라 현역 세대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시에 남겨진 자산에 관해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관점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절한 조세부담을 추구하기 위해 상속세의 과세베이스 확대를 계속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003년도 세제개정에서 생전 증여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자산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청년층의 주택 취득이나 사업 계승에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법인과세

1) 법인세

법인세에 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고, 기업 활동에 왜곡을 적게 주는 중립적인 세제를 목표로 하여 과세 베이스를 확대·적정화하면서, 세율을 낮추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설비투자 감세라고 하는 정책세제의 집중·중점화를 피한 것 외에도,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인프라 정비로서 조직재편세제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으로도,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법인세율은 이미 다른 선진국 정도의 수준이므로, 당분간 인하를 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설비투자 감세의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경제·재정 상황, 일본의 조세부담 수준이나 조세체계 전체의 형태와의 관련, 다른 선진국과의 세율 균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조세특별조치에 관해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면서, 계속하여 합리화를 과감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환경세의 역할은 가격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 억제 효과를 중시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온난화 대책의 재원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경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난화 대책 예산과의 관계, 세수의 사용처를 특정하는 것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유효한 정책세제에의 집중·중점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는 복수의 도도부현(道都府縣)에 사무소 등을 두는 법인에 대해 사업 활동과 행정 서비스의 수익관계를 적확하게 반영하고 세원 귀속을 적정하게 행하기 위해, 분할 기준에 의해 과세 표준을 도도부현 사이에 분할하는 제도이다. 이 분할 기준은 1989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으나, IT화의 진전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의 활용이라는 법인의 사업 활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세에서 사회보험진료보수에 관한 과세의 특례 조치에 관해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신속히 철폐해야 한다.

마. 주세

최근 생활양식 변화 등을 배경으로 주류 소비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진전과 함께 종래에는 다른 원료나 제조법에 의해 동종·동등한 것이면서 조세부담이 다른 주류가 생산되고 있다. 주세에 관해서는 주류의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라, 세제의 중립성이나 공평성

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류 분류의 간소화를 꾀하고 주류간 조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긴급하면서 포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바. 지구 온난화 문제의 대응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정한 교토 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제적 책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배출량은 민생·운수부문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삭감을 위해 조금 더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환경세 도입에 관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온난화 대책 전체 가운데에서의 구체적인 위치를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다른 정책 수단과의 관련에 있어 환경세의 위치 부여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환경세의 역할은 가격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 억제 효과를 중시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온난화 대책의 재원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경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난화 대책 예산과의 관계, 세수의 사용처를 특정하는 것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세는 국민에게 넓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도입을 검토할 때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 국민경제나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주는 영향, 기존 에너지 관계제세와의 관계, 기타 세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과제가 많다. 앞으로 온난화 대책 전체의 논의 전개를 고려하여 환경세에 관한 많은 논점을 가능한 한 조급히 검토해야 한다.

바. 기타

1) 기업연금 등에 관한 세제

공적 연금에 더해지는 기업연금 등의 사적 연금은 보다 여유 있고 다양한 노후 생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연금 등에 대한 과세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금제도를 둘러싼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특별 법인세(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거출·운용·급부의 각 단계를 통한 부담의 적정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2) 조합사업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

오늘날 법인형태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에 의한 사업·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가운데, 조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용한 절세를 꾀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I. 2005년도 세제개정안의 내용

1. 개인소득과세

II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률감세는 1999년도 세제개정시 당시 현저히 정체한 경제활동의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소득과세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도입되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없이 매년 3조 수 천억엔이라는 규모로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구조개혁의 진전으로 인해 민간경제의 체질강화가 실현되고 있어 정률감세가 실시된 1999년 당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호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률감세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정률감세제도의 폐지가 제기되어, 2006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단, 경제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2006년에 일시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여 2005년도 세제개정에서 정률감세에 관해 현행의 소득세액 20% 상당액(20% 상당액이 25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25만엔)을 소득세액의 10% 상당액(10% 상당액이 12만 5천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12만 5천엔)으로 1/2로 감축하였다.

2. 주택세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소득세가 경감되는 「주택 차입금 감세」 대상범위가 2005년도부터 확대된다. 현재 맨션인 경우 건축 후 25년, 목조 주택인 경우 동 20년 이내의 물건만이 대상이나,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국가가 정한 내진(耐震)기준을 만족하면 현재는 대상 외인 물건도 차입금 감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도의 세제개정으로 2005년도 4월부터는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정계좌에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계좌로 관리되어 온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의 청산종료 등에 의해 무가치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식 등의 양도손실로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3. 금융·증권세제

고령화, 저출산율의 진전 등으로 인해 저축률이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의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소위 장롱주식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현재 장롱주식은 간편한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회사 등의 '특정계좌'에 맡길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2005년 3월로 일단 폐지되나, 이번 개정으로 2005년 4월 이후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특정계좌에 넣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정계좌란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증권회사가 연간 매매손익의 계산을 대행하고 고객이 희망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를 완료하는 제도이다. 증권세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신고 납세하는 신고분리과세가 원칙이나 특정계좌의 경우는 신고분리과세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계좌에 예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개별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 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가격의 산정

방식이 이번 개정으로 약간 변경되었다. 과거 절세의 온상이었던 특정계좌 예금시의 '인정 취득가액'이 신제도에서는 폐지된다.

현행제도는 취득가격에 관해 1) 실제 취득가액 2) 명의변경시의 주가 3) 인정취득가격(2001년도 10월 1일 증가의 8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득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는 구입시의 거래보고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모르는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나, 실제로는 주가가 대폭 하락한 주식을 구입하여 보다 높은 '인정 취득가액'으로 특정계좌에 맡긴 다음 나중에 매각시, 실제로는 차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05년도의 세제개정으로 2005년도 4월부터는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정계좌에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계좌로 관리되어 온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의 청산종료 등에 의해 무가치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식 등의 양도손실로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4. 국제과세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나라와의 사이에 조세조약 네트

워크의 확충은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강화와 연결된다. 2005년의 세법개정으로 국제적인 투자교류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인 조세조약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자회사 합산세제에 관해 국제적인 기업 활동 실태에 대응한 합리화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일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현행제도에서는 해외투자자의 계좌가 있는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가별로 거래 정보를 국채구입의 창구인 일본의 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5년 4월부터는 통지를 분기에 1회로 줄이고 통지할 정보도 투자가별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일괄하여 통지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 국내 부동산과의 형평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해외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이제까지는 토지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거주자도 과세하였으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매각익은 일본에서는 과세할 수 없었는데, 2005년 4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보유 기업의 주식 매각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5. 기타

가. 중소기업 관련 세제

- 1)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가칭)의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혁신·창조촉진

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 2) 특정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관한 양도익을 1/2로 경감하는 특례(소위 엔젤세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 3)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 농업신용기금협회 등 저당권 설정 등기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경감조치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나. 지방분권의 추진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서, 2006년도 세제 개정에서는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의 본격적인 세원이양을 실시한다. 2005년도에는 잠정적 조치로서 소득양여세로부터 1조 1,159억엔의 세원이양을 실시한다.

다. 특정비영리법인(소위 NPO 법인) 등의 지원

- 1) 인정 NPO 법인의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 2) 소득세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총소득의 25%에서 30%로 인상한다.

라. 기업재생관계세제

민사 재생법 등의 법적 정리 및 일정 사적 정리가 행해지는 경우 채무자인 법인에 관해 자산의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조치와 기한이 다 된 결산금을 우선 공제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세계개혁의 기본 방향은 '활력', '환경', '지속가능'을 주제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과 세대간 공평을 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 교육훈련비에 관한 세액공제

교육훈련비의 증가액의 2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각 연도의 교육훈련비의 총액에 대해 교육훈련비 증가율이 40% 이상인 경우는 20%, 교육훈련비 증가율이 40% 미만인 경우는 교육훈련비 증가율에 0.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우대조치를 취한다.

IV. 정책적 시사점

현재 일본은 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으로 대표되던 일본형 고용제도의 붕괴,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 환경부담의 증대와 글로벌화의 진전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과감하게 정리한다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충실', 그리고 '표준'에서 '다양'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세·재정 제도 역시 변화의 방향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검토하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세계개혁의 방향

을 살펴본 결과, 세계개혁의 기본 방향은 '활력', '환경', '지속가능'을 주제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과 세대간 공평을 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소의 시차 및 정도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고 곧 직면할 변화이다. 따라서 일본의 세계개혁의 방향과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재정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KIPF**

참고문헌

- 국중호, 「일본 세계개혁의 최신 동향」, 『재정포럼』 2002년 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佐藤愼一, 『圖説・日本の税制』, 財經詳報社, 2004.
- 財務省, 「平成17年度税制改正の要綱」, 財務省, 2005.
- 税制調査會, 「平成17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財務省, 2004.
- 日本經濟新聞, 2004年 12月.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일본, '법인세 면제 회사 허용' 추진

- 벤처창업 장려를 위해 일본에서 법인세를 면제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가 허용된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벤처창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조합의 중간형태인 '유한책임사업조합(LLP)'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달 중 열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키로 함
- LLP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이익배분도 출자액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음. 또 사업에 실패할 경우 출자액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를 적용받음
- 일본 정부가 LLP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
-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LLP를 허용하면 기업과 연구자 등 개인이 공동투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면제조치도 투자촉진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함

- LLP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단계에서 기타 소득과 합쳐 세금이 부과됨. 다만 과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목적으로 자금만 출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헤럴드경제 1/4>

홍콩, 역외펀드 소득세 면제 추진

- 홍콩이 국제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역외펀드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정부는 5일 홍콩 비거주자가 역외펀드를 통해 홍콩자산에 투자해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음
- 이 같은 조치는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역외펀드에 대한 면세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제자금이 대거 싱가포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임
- 홍콩은 역외펀드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소득

세를 징수할 움직임이 보여 왔음

- 홍콩 세무당국인 IRD는 케이만아일랜드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적을 두고 있는 역외펀드가 주식·부동산 등 홍콩자산에 투자해 올린 소득에 대해 1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내놓았음
- 그러나 이 법안은 펀드매니저들의 홍콩 펀드시장에 대한 고사 가능성 제기와 아예 홍콩에서 철수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폐기되었음

□ 홍콩이 역외펀드에 대한 면세조치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헤지펀드 등 국제 금융자본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펀드운용 수입에 대한 해당 국가의 세금인데 홍콩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투명한 세금체제를 갖추게 되기 때문임
- 최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홍콩과의 정면대결보다는 외환거래와 과생상품 운용부분을 특화시키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쟁력을 따지자면 홍콩이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음
- 홍콩 내 헤지펀드 자산총액은 86억달러를 넘는 반면 싱가포르는 20억달러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서울경제신문 1/7〉

멕시코, 2005년 대규모 관세 인하

- 멕시코 경제부는 2004년 12월 30일자 관보를 통해, 2004년 12월 31일부로 9,336개 HS CODE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
- 이번 조치로 멕시코 전체 수입품목의 7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가 적용

〈2005년 관세 인하안〉

산 업	해당	관세인하 전	관세인하 후
	HS CODE(개)	평균관세율(%)	평균관세율(%)
장난감	88	24.9	18
가구	59	22.2	17
신발	5	21.8	16
섬유, 의류	152	20.4	15.6
농업	776	19.4	14.9
목재	144	18.2	14.8
자동차 및 부품	246	17.7	13.9
기타 제조업	1,068	17.1	13.2
금속제품	1,191	16.1	12.7
기계 장비	2,187	14.6	11.4
제지, 출판	226	14.2	10.9
화학, 의약품, 고무, 플라스틱	2,993	12.1	9
광물	201	11.8	8.8

주: 평균관세율은 제3국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의미
 자료: 멕시코 경제부

□ 소비재부문 평균관세는 25.6%에서 18.3%, 중간재는 13.8%에서 10.8%, 자본재는 13.6%에서 10.6%로 인하

○ 부문별로는 장난감, 섬유, 의류, 가구 등 소비재가 가장 큰 관세율 인하를 보였는데, 장난감 부문의 평균관세율이 24.9%에서 18%로, 의류 20.4%에서 15.6%, 가구 22.2%에서 17%로 낮아지게 되었음

○ 원자재, 중간재 및 농업, 목재, 금속, 제지, 출판, 화학, 의약품, 고무, 플라스틱 등은 다소 낮은 관세인하율이 적용

○ 차량의 경우, 트랙터, 화물자동차 등은 관세가 인하되었으나, 일반 승용차류는 제외되었으며, 타이어도 일반 승용차용은 제외되었다. 또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제품에는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음

□ 멕시코 경제부는 이 관세 인하 조치가 각 산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밀수억제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초기 단계에서는 관세수입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 및 불법수입 감소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물론 제품가격 인하로 멕시코 소비자들이 연간 5억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
-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 이외에도, 올해 초에 신발용 화학제품 60개 HS Code에 대한 5% 관세 인하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화학제품들을 멕시코 산업개발 프로그램(PROSEC) 제도에도 포함시킬 계획임
- 멕시코 정부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대한 평균관세를 인하 및 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관세 인하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한 향후 추가 관세 인하 조치가 기대됨

〈KOTRA 경제무역정보 1/4〉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 기업소득세 단일화 5~10년 과제 요구

- 54개 다국적기업, 건의서 초안 마련
- 최중안, 재정부·상무부·세무총국 등에 전달 방침...중국은 다른 생각
- 중국이 내·외자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단일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와 베이징에 진출한 54개 다국적기업들이 5~10년간의 과도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관한 중국투자 다국적기업의 생각(在華投資的跨國公司對新企業所得稅法的若干看法)』이라는 건의서를 마련, 조만간 최종 수정안을 재정부,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업소득세 단일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GE 등 중국에 투자한 지 오래된 다국적기업들이 컨설팅사에 의뢰하여 상하이와 베이징 주재 54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신(新)기업소득세법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
- 다국적기업들이 마련한 건의서 초안에는 ▲단일화 조치 시행 이전에 5~10년간 과도기 ▲연구개발(R&D) 및 외주 서비스(External Service) 등에 대한 기업소득세 혜택 조치 부여 등의 요청 사항이 담겨 있음
- 이번 건의서 작업에 참여한 다국적기업의 한 세무 관계자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 조치가 시행되도 중국의 전체 세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국적기업들의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세율인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

- 그러나 중국 측에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진버성(金伯生) 상무부 외자연구부 주임은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어쨌든 해야 할 일”이고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중국의 투자환경”이라며 세계개혁이 다국적기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아 중국은 여전히 최고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중국 세무학회 이사인 후이지엔(胡怡建) 상하이 재정대학 교수는 “내·외자기업에 대한 동일세율 적용이 외국기업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이라 언급하며 “다국적기업들의 일부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세계개혁의 목적은 평등과 공평성을 위한 것이며,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 이는 외자유치 방향이 일반업종에서 중점업종,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 일반투자에서 하이테크 및 환경투자 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상무부 국제경제무역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박사는 “근본적인 원칙은 내·외자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우대정책을 쓸 수는 있지만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다국적기업들이 요구한 세제혜택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며 다국적기업들의 5~10년 과도기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 “너무 길다”는 지적

□ 중국 정부의 세제 단일화 조치는 원칙은 세웠으나 시행되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시한 다양한 자기주장 및 의견들이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 단일화 법안(초안)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국제 세미나도 2차례 개최했으나 단일세율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

〈KOTRA 경제무역정보 1/13〉

□ 한편 프라드코프 러시아총리는 부가가치세 삭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사회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나 금융부장관 쿠드린은 크게 반대하고 있음

- 사회안정화기금은 러시아가 고유가 시기에 원유를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기금으로서 장차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현재 약 19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 기금을 창안한 쿠드린 장관은 “러시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나, 외채가 많은 점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 기금으로 먼저 외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

〈KOTRA 경제무역정보 1/19〉

러시아, 부가가치세 추가삭감 검토

□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가가치세 요율을 현재의 18%에서 13%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러시아 GDP는 2003년 7.3%의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4년 6.8~6.9%, 2005년 4.5~6.2%의 성장률(2004년, 2005년은 전망치임)을 보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이미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20%에서 18%로 내린 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함
- 러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3%로 내릴 경우, 러시아 GDP가 많게는 연간 2%까지 추가 성장하며, 업계에서는 올 부가가치세 1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재정 정책

일본, 올해 일본 경제의 10대 서프라이즈

□ 올해 세계 경제 10대 서프라이즈를 예언한 모건스탠리
가 이번에는 일본 경제 10대 서프라이즈를 발표

□ 모건스탠리 로버트 펠드먼 일본담당 이코노미스트는 6
일 올해 일본 경제 10대 이슈를 발표

○ 펠드먼은 이 같은 이슈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33% 정도지만 자신은 50% 이상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밝힘

○ 펠드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이 이익 감소, 일·중
관계개선, 위안화 절상 타격 미미 등을 10대 서프라이
즈로 지목

◆ 기업이 이익 감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일본 기업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 기업이 이익은 여
전에는 증가하기 힘들며 2006회계연도가 되어야 가시적
인 개선 조짐이 나타날 것임

◆ 에너지 중요도 강화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에너지 개발, 에너지 기술향상 등
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임

◆ 일본·중국 관계개선

일본·중국 관계악화로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은 과도한 것임. 두 나라는 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며 남중국해 가스 개발사
업 등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음

◆ 위안화 절상 타격 미미

위안화 절상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절상된다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임. 현재 중국의 인
건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엔화 기준으로 10~20%의
임금상승이 일어나도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타격받지
는 않을 것임. 오히려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인의 구매력이
대폭 증가해 일본제품의 소비를 늘릴 전망

◆ 우정국 개혁

자민당 내 개혁 반대세력 등은 총선 악영향을 우려해 우
정국 개혁을 반대하고 있으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우정
국 민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우정국 개혁은 도로,
운송, 펀드 운용 등 여러 분야의 사업기회를 대폭 늘려줄
전망

◆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강화

일본기업의 인수합병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 내 경영효율성 및 구조조정 강
화를 이끌어 내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
(ROE)을 높일 것임

◆ 재정개혁

국가부채가 과도한 일본의 경우 재정개혁이 매우 중요
함. 의료, 복지, 교육 등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부문에
서 아웃소싱이 필요함. 아웃소싱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짐. 의료부문 지출은 IT솔루션
구축에 집중되어야 함

◆ 세제개혁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게 유지할 것임. 따라서 세금이 인상되어도 기업의 부담
은 크지 않을 전망

◆ 엔 강세 타격 미미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상승하겠지만 달러/엔 환율 하락은 90엔에서 제한받을 것이며 추가 엔 강세가 일본 기업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전망하지 않음. 엔 강세는 원유수입 가격 하락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음.

〈edaily 1/6〉

쓰나미로 인한 경제피해 얼마나 될까

□ 아시아 곳곳이 쓰나미로 인한 대형 참사에 휩싸인 가운데 쓰나미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참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하였으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와 국제 구조 기구들이 전염병 등의 발병과 사회적 불안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망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제활동에 중요한 핵심 인프라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

○ 쓰나미 관련 피해규모가 아직 집계중인 상황이지만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 220억~250억달러의 피해를 낳은 허리케인 등 최근 발생한 여타 자연재해보다 이번 쓰나미의 피해 규모는 적을 것으로 전망

○ 지난해 전 세계를 위협한 유가상승 문제나 2003년 아시아에 발생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보다 충격이 덜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음

○ CSFB의 조셉 라우 이코노미스트는 “피해 수치만 봐서는 타격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중요한 사실은 주요 산업분야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 지적

□ 발병 위험 남아

○ 단 이코노미스트들은 추후 신속한 구제금 및 의료지원

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망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병이 발발할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며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 지적

○ 또 피해복구 지원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상황이 커질 수 있어 쓰나미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

○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생산시설은 말레이시아 북동부 폐당섬에 위치해 있어 쓰나미로 인해 해안가에 위치한 호텔과 선박의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공장 시설의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페낭의 경제계획장관인 토 킨은 “당장 관광객의 수는 줄어들겠지만 경제에 별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관광문제는 태국이 제일 심각

○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발리 등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타 국가들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임

○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년간 태국의 관광객이 50% 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며 관광산업이 태국 경제의 6%(인도네시아 2.1%, 인도 0.7%)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측

○ CSFB는 “태국은 유명 리조트 시설뿐만 아니라 인기 관광상품인 산호초가 파괴되어 앞으로 산호초가 자라는 데만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해안이 진흙투성이라 해변이 복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라고 덧붙임

○ JP모간은 이번 1분기 동안 태국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나 2분기부터는 다시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

를 것으로 전망

- 이는 주요 항만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태국 핵심 경제 인프라가 방콕에 위치해 있어 거의 쓰나미에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세금우대 조치로 투자 유인

- 인도네시아 경제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아체 지역도 석유, 석탄광산,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등 주요 경제 자산들이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음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올해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연이어 안와르 재무 장관도 전날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우대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는 대규모 어업시설이 해일에 휩쓸려 갔지만 첸나이의 주요 항만시설에 대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 스리랑카는 대부분의 주요 산업 인프라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광과 어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1%p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머니투데이 1/4〉

프랑스, 경기활성화 정책 발표

- 최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과 게이마르 재경장관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소비·고용촉진 등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
-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까지 산업혁신청을 창설, 20억유로의 예산을 마련하여 동 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액과 동

일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소비촉진을 위해

- 오는 2007년까지 소득세를 약 20% 인하하고, 15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들의 주식매도시 매매차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편
-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액대출조건인 대폭적인 완화를 적극 유도

□ 또한, 고용확대를 위해서

- 2004년 11월말 현재 9.9%(270만명)에 달하는 실업률을 올해 말까지 9.0% 이하로 축소한다는 목표하에
- 기업의 신규 고용시 부과되는 직업세를 감면하고, 특히 수공업·소규모 상업 등 기피업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국정원 국제경제 1/14〉

독일·일본이 미국·영국에게 뒤쳐진 이유는

–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을까?”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리스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비영미권 선진국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선진 국가를 각각 ‘토끼’와 ‘거북이’에 비유하면서 왜 1990년대 이후 ‘토끼’가 ‘거북이’에게 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 이 질문에 대해 울프는 비영미권 선진국들이 ‘(미국) 따라잡기(catch up) 정책’에만 매달린 나머지 세계 경제체제 변화에 따른 정책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비영미권 선진국들

은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따라잡기 정책을 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국제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1990년대 이후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대 영미권 선진국에 밀리기 시작했다고 분석

□ 울프는 이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

- 먼저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저축률과 투자가 필요한데 일본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세력들이 성장에 반대했고 이에 따라 투자도 함께 위축되어 민간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되었으며
- 그와 함께 뒤늦게 산업화에 동참한 독일과 일본 경제는 제조업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취약하여 1980년대에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두 나라의 제조업체들이 원가는 적게 들고 수요가 풍부한 해외로 빠져나간 반면 새로운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서비스 부문이 각종 정부규제에 묶여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 21세기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정보기술(IT)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유럽지역의 강성노조는 대량해고와 공장폐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IT 경제로의 이행도 순탄치 못했음

□ 이러한 세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다 일본과 유럽지역 선진국의 거듭된 정책실패도 한 요인이라 지적

- 일본과 유로화를 채택한 12개 나라들(유로존-eurozone)은 통화 및 재정정책 실패로 내수부진에 시달렸으며 성장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초동조치 실패로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

- 유로존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도 2001~2004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고 정부가 내세운 규제철폐 공약도 이행되지 못했음

□ 1950~60년대 영미권 선진국은 비영미권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뒤쳐졌지만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상황이 역전

- 1950년 미국 GDP의 20% 수준이던 일본의 1인당 GDP는 1991년 85%까지 올라갔지만 2004년 74%로 하향세
- 1991년부터 1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영미권 선진국이 △호주 39% △영국 32% △미국 30% △캐나다 29% 등으로 비영미권 선진국인 △프랑스 19% △이탈리아 17% 독일 15% △일본 14% 등을 크게 앞섬. 이 기간 동안 아일랜드는 131%나 성장
-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영미권 4개 나라의 비중은 절반(48%)에 달했지만 비영미권 4개국은 33%에 머무름
- 1950~60년대 실업률은 미국이 유럽보다 높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역전되어 2004년 독일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했고 프랑스는 9%를 웃돌았으며 이탈리아도 8%를 상회하고 있음.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40년 전과 거의 같음

□ 울프는 일본과 유럽국가가 1950~60년대 '거북이'를 앞질렀다고 자만하면서 향후 성장 대비를 게을리할 때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선진국들이 꾸준히 세계경제 흐름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는 데 성공해 90년대 이후 '토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

〈머니투데이 1/13〉

미국은 몰락하고 있는가.

- 『경제강대국흥망사』 Review

역사학자인 토인비와 슈펜글러는 역사는 돌고 돈다는 순환사관을 가진 대표적 학자이다. 슈펜글러는 탄생→성장→쇠퇴→사망의 역사관을 가졌다. 토인비는 탄생→성장→붕괴→해체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문명이 발전한다고 봤다.

이는 경제사가(經濟史家)들의 경제사관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세계경제의 패권 자리는 언제나 흥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1등은 없고 단지 1등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1980년대 당시 세계경제의 패권을 쥔 미국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을 때 -반대로 일본이 급성장할 때- 많은 경제사가들에게 미국은 쇠퇴 혹은 해체의 수순을 밟는 늙은 호랑이었다.

미국의 석학 폴 케네디는 그의 역저(力著) 『강대국의 흥망』에서 미국의 몰락을 점쳤다. 케네디 교수는 눈덩이처럼 쌓이는 재정적자, 고실업에도 군비증강에만 열을 올리는 레이건 행정부에게 ‘이대로 가면’ 미국은 강대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의 관심사는 과연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 미국은 몰락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뒤이어 세계 경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였다. 현재와 미래의 어려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학자들은 역사를 되짚어 보고 곱씹으며 결론을 내렸다. 경제 강대국에게 언제나 흥망은 있으며 미국은 그 기로에서 있다고.

폴 케네디보다 조금 늦은 1996년 미국 MIT교수 출신 금융학자 킨들버거는 1500~1990년대의 경제사를 분석, 정리한 『경제강대국의 흥망사』를 펴냈다.

저자는 국가도 유기체처럼 생명의 주기가 있으며 탄생과 소멸의 과정 속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 언제나 존재했고 그 1등을 중심으로 세계가 계서제(hierarchy)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국가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왜 지배적이거나 우월하거나 지도적인 국가(dominant, primary, or leading country)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따라잡히는가. 저자는 더욱 새롭고 발전된 문명 단계를 탐사하는 어떤 나라라도 결국 뛰어넘기 힘든 한계나 장벽에 도달한다고 봤다. 그리고 ‘인류 진보의 다음 단계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단속적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경제적 선두와 그 종말에 대해서 특정 국가별로 역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1350년경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로부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쇠퇴(미국이 정말로 쇠퇴중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까지 다루었다. 그리고 항구적인 도전자 프랑스, 두 번씩이나 공격적으로 태양의 자리를 넘보았던 독일, 님버원의 후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본을 다루고 있다.

에스파냐에서 네덜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패권국들의 흥망사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미국이다. 저자 역시 미국의 국가 주기, 즉 고립에 처해 있던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패권 혹은 지도력을 주창하는 나라로 이행했던 궤적은 당시의 논란에 맡겨 두었다. 대신 미국의 쇠퇴 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쇠퇴의 징후를 추가함으로써 미국의 쇠퇴에 힘을 보탠다. 보호관세, 보조금 요구, 이익집단의 로비, 낮은 저축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등 비관주의자들이 말하는 미국 몰락의 증거들을 드러내 놓음으로써 미국이 동맥경화에 이은 쇠퇴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폴 크루그먼의 책 제목을 빌려 “기대가 감소된 시대로 간다”고도 표현한다.

만약 미국이 몰락중이라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가. 저자에 따르면 1973년 이전에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한 국가가 쇠퇴하면 대개 그 자리를 기꺼이 넘겨받으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러기를 열망하는 다른 국가가 흥기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가 말해 주듯이 아직 그 자리가 비지 않았을 때에 이미 계승 후보자들이 존재하기도 했다. 저자는 그러나 독일과 일본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지역적인 우월성을 추구했지만, 둘 중 어느 나라도 17세기 네덜란드나 1770년에서 1870년의 영국, 1945년에서 1971년까지 미국이 향유했던 세계 경제의 선두자리를 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꺼이 지도자 자리를 인수하려는 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는 미국경제가 새로운 회복력을 보이고 미국의 경제와 정치 리더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처럼 다시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봤다. 또한 미국이 1등이라면 (1등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본은 확실한 2등이 될 것이라고 봤다.

킨들버거나 케네디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미국은 90년대를 거치며 제2의 번성기를 맞았다. 닷컴이 닷밤(Dot Bomb, 버블붕괴)으로 변하긴 했지만 2001년의 9·11 테러를 겪으며 미국은 세계 정치, 경제 패권을 다시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난해(難解)함과 난독(難讀)성의 단점에 더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지배(누구나 느끼듯) 속에서 중국의 급성장, 일본의 부활, 유럽연합의 견제 등 신 패권전쟁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졌다. 더구나 경제사가로서 저자는 “가장 두려워할 것은 심판이나 안내자 없이 미국, 일본, 유럽이 세력균형을 이루게 되는 지도자 없는 세계”라고 말해, 서양 특유의 패권주의 혹은 제국주의 사관을 보는 것 같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코노믹리뷰 1/21〉



정책흐름

1. 2004년 국세수입 실적
2.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3.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4.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2004년 국세수입 실적

(’04년도 총세입·세출부 마감관련)

※ 이 자료는 2005년 2월 11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4년 국세수입 실적 117.8조원

- ’03년 실적 114.7조원보다 3.1조원(2.7%) 증가
- ’04년 예산 122.1조원보다 4.3조원(3.5%) 부족

구 분	’03실적	’04예산	’04실적	’03실적 대비	’04예산 대비
일반회계(조원)	104.9	111.2	108.2	+3.3	△3.0
특별회계(조원)	9.8	10.9	9.6	△0.2	△1.3
계	114.7	122.1	117.8	+3.1	△4.3

※ ’04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부족 징수되었으나, 세외 수입(투자증권 매각수입 등)이 예산보다 증가하고 예산절감 등에 따른 세출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세출범위 내에서 보전되었음

□ ’04년 국세세입의 특징

- 일반적으로 국세수입은 GDP(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가되나
- 최근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민간소비는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즉,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높아진 반면 소비기여도는 낮아짐에 따라)
 -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나고
 - 내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
- ※ 주요 세목 세수부족 : 부가가치세 △2.6조원, 교통세 △1.4조원

1. 2004년 주요 세목별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실적 대비		'04예산 대비	
		예 산	실 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총국세	114.7	122.1	117.8	3.1	2.7	△4.3	△3.5
○ 일반회계	104.9	111.2	108.2	3.3	3.1	△3.0	△2.8
• 소득세	20.8	22.0	23.4	2.6	12.7	1.4	6.5
• 법인세	25.6	23.6	24.7	△0.9	△3.7	1.1	4.5
• 상속증여세	1.3	1.2	1.7	0.4	29.9	0.5	42.9
• 부가가치세	33.5	37.2	34.6	1.1	3.4	△2.6	△7.1
• 특별소비세	4.7	5.9	4.6	△0.1	△3.4	△1.3	△22.4
• 증권거래세	1.6	1.8	1.3	△0.3	△19.0	△0.5	△27.3
• 인지세	0.5	0.5	0.5	-	-	-	-
• 과년도수입	1.5	1.8	2.0	0.5	31.5	0.2	7.3
• 교통세	8.6	9.8	8.6	-	-	△1.2	△11.4
• 관 세	6.8	7.4	6.8	-	-	△0.6	△8.8
○ 특별회계	9.8	10.9	9.6	△0.2	△1.2	△1.3	△11.2
• 주 세	2.8	2.8	2.6	△0.2	△5.3	△0.2	△7.4
• 교통세	1.4	1.6	1.4	-	-	△0.2	△11.4
• 교육세	3.7	4.3	3.5	△0.2	△3.3	△0.8	△16.7
• 농특세	1.9	2.2	2.1	0.2	7.2	△0.1	△5.1

* 교통세 세입 중 14.2%는 특별회계로 전출: '05년부터 폐지

2. 2004년 주요 세목별 실적 분석

□ 소득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득세	20.8	22.0	23.4	2.6	12.7	1.4	6.5

○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 지가상승, 임금인상, 임금근로자 증가 등으로 증가

* '04년 부동산가격 상승률(%): (주택) △2.0 (토지) 4.74

* 토지·주택 투기지역(개): (03) 57(주택53, 토지4) (04) 79(주택39, 토지40)

* 임금상승률('04. 10누계, %): 5.4

* 임금근로자(천명): (03) 14,402 (04) 14,894(+492, 3.4%↑)

□ 법인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법인세	25.6	23.6	24.7	△0.9	△3.7	1.1	4.5

○ '04년 세수실적은 '0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 '03년 4/4분기 이후 기업실적이 호전되면서 '04년 법인세 신고실적이 당초 예산편성시 전망보다 증가하여 당

초 예산보다 약 1.1조원 증가

* 12월법인 연간 당기순이익(조원) : (01) 7.7 (02) 23.8 (03) 18.3

* '03년 4/4분기 주요기업 영업이익 전년 대비 51.6% 증가

* '04년 12월결산법인 3/4분기누계 영업이익 56.8%, 순이익 78.8% 증가

□ 상속증여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상속증여세	1.3	1.2	1.7	0.4	29.9	0.5	42.9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 지가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재산가액 상승, 주식증여액 증가, 고액 상속 등 우발적 세수요인에 기인

* 공동주택 기준시가상승률(국세청 고시, %) : (03.11) 23.3 (04.4) 6.7

* '04년도 상장법인 주식증여(상속포함) 현황(증권거래소)

• 증여주식수(천주) : (03) 14,354 (04) 38,971(171.5% ↑)

• 증여금액(억원) : (03) 1,679 (04) 3,972(136.6% ↑)

□ 부가가치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부가가치세	33.5	37.2	34.6	1.1	3.4	△2.6	△7.1

○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늘어나고

○ 내수부진으로 국내분부가가치세는 부진한 데 기인

* 수출규모(통관기준, 억불) : ('03)1,943 (04) 2,542(31.2% ↑)

* 민간소비(%):('03. 4/4)△2.2 ('04. 1/4)△1.4 (2/4)△0.6 (3/4) △0.8

□ 특별소비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특별소비세	4.7	5.9	4.6	△0.1	△3.4	△1.3	△22.4

○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부진, 고유가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로 전년 및 예산보다 세수실적 감소

* '04년 내구소비재 출하(%): (1/4)△6.4 (2/4)△8.4 (3/4)△8.1

* 승용차 판매량(만대): (02)116.8 (03)96.0 (04)81.1(15.5% ↓)

* 특소세 부과대상 유류소비량(전년 대비 증감률, %)

· 등유: △17.2% · 중유: △8.1% · LPG 부탄: △1.2%

* '04. 3 특소세율 30%(자동차 20%) 인하, '04. 9 특소세 과세 대상 품목 축소

□ 증권거래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권거래세	1.6	1.8	1.3	△0.3	△19.0	△0.5	△27.3

○ 코스닥 중심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기인

*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대금(조원): (03)266.4 (04)155.7(41.6% ↓)

* 거래소시장 주식거래대금(조원): (03)547.5 (04)555.8(1.5% ↑)

□ 교통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통세	10.0	11.4	10.1	0.06	0.6	△1.4	△11.4

○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경유 소비 감소에 기인

* 교통세 부과대상 유류소비량(천배럴)

- 휘발유 : (03) 60,517 (04) 58,211(△3.8%)
- 경 유 : (03) 145,877 (04) 144,544(△0.8%)

□ 관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관 세	6.8	7.4	6.8	△0.05	△0.7	△0.6	△8.8

○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액의 증가, 원유·석유 제품 관세율 인하 등 할당관세 확대에 의한 관세 실효율을 하락

* 관세율 인하('04. 4. 30부터) : 원유(3%→1%), 석유제품(7%→5%)

* 수출(억불) : (03) 1,943 (04) 2,542(31.2%↑)

* 수입(억불) : (03) 1,788 (04) 2,245(25.5%↑)

□ 주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 세	2.8	2.8	2.6	△0.2	△5.3	△0.2	△7.4

○ 주류 소비량 감소에 기인

* 주류 출고량(국세청 신고기준)

	'03. 11~'04. 10	'02. 11~'03. 10	증 감
• 맥 주	1,900 (천kl)	1,893kl (천kl)	+0.4%
• 소 주	928	935	△0.7%
• 위스키	10	12	△16.7%

□ 교육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육세	3.7	4.3	3.5	△0.2	△3.3	△0.8	△16.7

○ 교육세가 부과되는 본세 항목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의 실적 부진에 기인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 이 자료는 2005년 1월 27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7일(목) 경총이 주최한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

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내용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율 10%로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

〈최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현황〉

적용 기간	공제율
○ 2000. 1. 1~2000. 6. 30	투자액의 7%
○ 2000. 7. 1~2000. 12. 31	실시하지 않음
○ 2001. 1. 1~2003. 6. 30	투자액의 10%
○ 2003. 7. 1~2004. 12. 31	투자액의 15%
○ 2005. 1. 1~2005. 12. 31	투자액의 10%(예정)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 이유는?

- 2005년부터 법인세율·소득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 법인세율(2%p ↓) : 27→25%, 15→13%
 - 소득세율(1%p ↓) : 36→35%, 27→26%, 18→17%, 9→8%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의 재정 여건 등도 감안하였음
- * 임시투자세액공제규모('04 전망, 15% 공제율) : 1.8조원
- ※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며 금년에는 조특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3. 1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 기업의 투자계획수립 등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

* 91년·93년·94년·97년·98년 및 '03년 7월에도 1년 단위로 제도운용

4.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아래 27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됨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종자 및 목표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 의료업, 노인복지업
 -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 (27개 업종)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 제조업 등 :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 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 등 물류시설도 가능
-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노인복지시설업
: 건물 및 승강기·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건물부착설비

도 가능

6. '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설비투자 1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나?

〈세부담 비교〉: 투자금액의 10%인 1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 과세표준 10억원	○ 과세표준 10억원
○ 납부세액 2.38억원	○ 납부세액 1.38억원
• 1억원 × 13% = 0.13억원	• 2.38억원 - 임투공제액1억원
• 9억원 × 25% = 2.25억원	• 임투공제액 : 10억원 × 10% = 1억원
	※ 세금경감액 1억원

7.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 최저한세가 적용됨

*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을 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최저한세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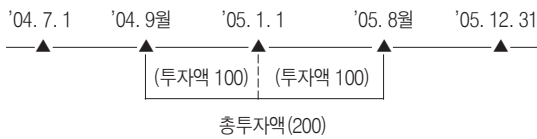
- 법인
 - 대기업: 감면 전 과세표준의 15%(1000억원 이하분은 13%)
 - 중소기업: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
- 법인세율: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 개인 :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

8.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다음 5개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9.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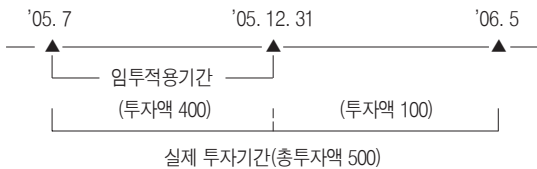
〈사례〉 『04. 9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05. 8월 투자가 완료된 경우



- ① '04년 투자분 → '04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00) (100 × 15% = 15)
- ② '05년 투자분 → '05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00) (100 × 10% = 10)

10. '0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06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의 적용방법은?

〈사례〉 『05. 7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06. 5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적용방법〉

- 금년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400×10%)만 2005 과세연도분 법인세 신고시(2006. 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2006. 5월) 공제받음

11. 투자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 투자의 개시시기

- 제작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경우
 -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
 -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2. 어떤 조치를 거쳐서 시행되는가?

- 2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13. 2월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금년 1월에 투자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것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2005.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령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 이 자료는 2005년 1월 19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말 개정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세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특소세법·부가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 조특법시행령·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 법인세법시행령,
- 주세법시행령·규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농림특례규정 및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

① 조특법시행령·규칙

-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신설
- 도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건설한 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규정

② 소득·법인세법시행령

-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과세 특례

-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③ 주세법시행령·규칙

-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이 50% 경감(30%→15%)되는 소규모 생산 농업인 등의 범위와 경감대상 물량을 규정
- 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④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금년에 조기 시판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05년에 한해 50% 경감

⑤ 농림특례규정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낚시어선업용 선박 및 어획물운반선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임대배건조이송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양식장용 차광막을 추가
- 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에서 연체 등으로 카드발급이 곤란한 농어민을 제외

⑥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05. 1월부터 '06. 12월까지 2년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음식업자가 원재료로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대천 채소류(고사리, 취나물 등)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
-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I.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대상자 등(조특령 § 106의6·§ 106의7)

〈법 개정내용〉

-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 부여
- ⇒ 담보제공 제외자, 담보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담보 제공 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성실납세자 ○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금세공업은 1년 이상)을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 및 결손처분이 없고 -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 □ 납세담보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3%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2%)

〈개정이유〉

- 납세실적 등이 성실한 사업자는 담보제공의무 면제
- 납세담보는 담보할 부가가치세의 120/100 상당액으로 함

〈적용례〉 '05.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도로 건설·운영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령 § 106⑦, 조특규칙 별표1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30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출자한 법인(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 재무적투자자: 연기금 등

〈개정이유〉

-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운영·유지관리하는 경우
 - 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SOC투자 활성화 지원 (예 : 통행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조특령 § 116의2)

〈법 개정내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등 세제지원
- ⇒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달러 이상 <input type="checkbox"/> 물류업 : 투자규모 5백만달러 이상

〈개정이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요건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
 〈적용례〉 '05. 1. 1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현황

구 분	천 안	평 등	대 불	구 미	오 착	진 사	계
소재지	충남 천안	광주시	전남 영암	경북 구미	충북 청원	경남 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나.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 유상감자시 조세지원 배제
 (조특령 §116의6)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input type="checkbox"/> 유상증자분에 대해 5년 또는 7년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 7년 이내 유상감자시 <input type="checkbox"/>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 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 방지
 〈적용례〉 '05. 1. 1 이후 증자 또는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 '00년 외국인투자 5년간 감면결정
- '04년 1,000억원 유상증자
- '05년 1,000억원 유상감자
- 순투자증가액 : 0원
- 총 감면기간 : 5년 + 4년(유상증자분)
- 당초 감면기간 5년보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 없이 4년간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결과 초래
 - 개정안 : 감면기간 연장효과 제거

다. 연구개발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요건 완화
 (조특령 §116의2②)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중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 감면 요건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input type="checkbox"/> 국내 도입 3년 이내인 기술 <input type="checkbox"/> 주로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술	<input type="checkbox"/>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R&D 센터)에 대해서는 요건 적용배제

〈개정이유〉

연구개발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제고
 〈적용례〉 '05. 1. 1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4. 투기지역 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규정
(조특령 § 43의3)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input type="checkbox"/>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시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 06. 12. 31이전 수용시 적용 <input type="checkbox"/>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예정지구지정일 등의 이전 취득분에 한정하여 기준시가 적용 다만,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정지구지정일 등 구체적인 기준시가격 기준일은 시행령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규정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input type="checkbox"/>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input type="checkbox"/>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수립일 등(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 <input type="checkbox"/>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적용

<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례> '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 1~5. 31)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II.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5의2)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5대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input type="checkbox"/> 연로자인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input type="checkbox"/>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input type="checkbox"/>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에도 <input type="checkbox"/>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저당 : 10년 이상, 연금식(매월, 분기별)수령,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 상환

<개정이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 장기저당담보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음

<적용례> 2005.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법인령 § 161)

현 행	개 정(안)
<p><input type="checkbox"/>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p> <p>〈제출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 주식회사 외의 소액출자자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p><input type="checkbox"/>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액면가액, 출자가액×2%) 부과</p>	<p>○ 제출제외대상에 다음 법인 및 소액주주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전문회사 - 공기업·기관투자자 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법인 - 비상장주식회사 소액주주 * 소액주주 : 지분을 1% 미만, 액면가 총액 500만원 이하 <p>(현행과 같음)</p>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사항('04. 11 월)

〈개정이유〉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 〈적용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 주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 범위 (주세령 § 22의2)

〈법 개정내용〉

- 농민·생산자단체 등이 소규모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 일정량 까지 낮은 세율 적용(30% →15%)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낮은 세율 적용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에 500㎏ 이하로 제조한 자 ○ 당해 연도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p><input type="checkbox"/> 낮은 세율 적용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의 총과세출고량 중 200㎏까지

〈개정이유〉

-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경쟁력이 제고되고, 과실 소비촉진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

〈적용례〉 '0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본, EU 사례: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주세율 감감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주세규칙 § 7)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의 명칭, 제조장의 위치 ○ 주류의 종류 ○ 규격(알콜분) ○ 용량 ○ 용기주입연월(일) ○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 상표명 ○ 세포함 출고가격 	<p><input type="checkbox"/> 주류상표의 표시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유지</p> </div> <p>〈삭 제〉</p>

〈개정이유〉

-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조업자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

※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없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었음

<적용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V.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를 적용(특소령 § 4의2)

현 행	개 정(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05년중 특소세 50% 경감 -2,000cc 초과 : 10% → 5% -2,000cc 이하 : 5% → 2.5% *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 '05. 1월부터 유로-3, 유로-4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
유로-4형이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1/2 수준

유로-4 경유승용차 가격이 약 3% 인하효과(2,000cc 기준)

<적용례> '05년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해 적용

V. 농림특례규정

1. 면세유 공급대상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농림특례 § 15 및 별표1)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시설 <input type="checkbox"/> 연근해 어선 <input type="checkbox"/> 어민이 운영하는 양식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총 9종 <input type="checkbox"/> 양어장용 필름 등 11종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자가어획물 운반선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업용 선박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영세율 대상 조정 <input type="checkbox"/> 추가 : 앞담배건조이송기 <input type="checkbox"/> 제외 : 실효성이 미미한 동력절단기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막,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추가 <input type="checkbox"/> 양식장용 차광막 추가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의 절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제고

<적용례> '0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면세유)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농림특례 § 16)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구입권 사용 <input type="checkbox"/> 구매전용카드 사용 -농민 : 전년도 2만 ℓ 이상 -어민 : 전년도 4만 ℓ 이상 <input type="checkbox"/> 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어민이 급유소로부터 선박용 유류 구입시 <신 설>	<input type="checkbox"/> 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완화 <input type="checkbox"/> 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어민이 급유소 또는 공급대행 대리점에서 유류 구입시 -연체자인 농어민이 유류 구입시

<개정이유>

일정기간 외상구입이 가능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VI.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규칙 § 19)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의 3/10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을 5/105('06년 말까지)로 인상

<개정이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

○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률 10% 내외)

※'04. 12월 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

<적용례> '05. 1. 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규칙 별표1)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면세되는 식료품 ○ 신선, 건조, 냉장한 채소류 <신 설>	○ 데친 채소류 -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과세

<개정이유>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나물 생산농가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 데침(Blanching) : 식품의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 열처리하는 과정, 끓는 물에 2~3분정도 담금

** 현재는 신선·냉장 및 건조한 채소만을 면세

<적용례> '0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5년 재산·소비·국제조세 시행령·규칙 개정에 대한〉
문답자료

1.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① 면세금지금 제도란?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러나, 금지금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

⇒ 금지금은 귀금속제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② 납세담보제도의 도입배경은?

□ 면세금지금 제도의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로 판매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판매

○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고의체납을 통한 세금탈루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③ 납세담보의 종류는?

□ 국세기본법(§ 29)상 납세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토지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① 현재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현황은 어떠한가?

□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25개 업체가 총 7억 6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현재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명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사전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됨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현황〉

구분	천안	평등	대불	구미	오창	진사	계
소재지	충남천안	광주시	전남영암	경북구미	충북청원	경남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2. 11. 6 확장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지정이 가능

○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지정할 수 있음

② 연구개발업에 대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적용되는 요건을 배제한 이유는?

□ 그러나 R&D센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게 되므로

○ 기술도입경과기간(3년) 요건과 국내공정수행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함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① 현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고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예: 양도, 상속·증여, 증자·감자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과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 소액주주: 지분을 1% 미만,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주식회사 외 법인(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액출자자는 제출대상 제외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② 제출대상 축소 이유는?

□ 그동안 기업부담 과중과 행정실효성 차원에서 관련업계 및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대상 축소 등 개선요구 제기

□ 이번에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실효성이 낮은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

① 투자회사(Mutual Fund)는 상법상 법인이나

-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수익증권과 유사(투자자금은 환매를 통해 회수)

②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이고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적으며

③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주식회사외 법인의 소액출자자만 제외하고 있으나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도 제외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부담 완화

③ 적용시기는?

□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

① 적용대상 과실주

□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하여 제조하는 주류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

회(예: ○○과수농협) 등

-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려는 데에 목적

□ 농민이 생산하는 과실주 생산업체 수 : 37개 업체

- 복분자주(15), 머루주(8), 포도주(5), 배술(2), 기타(7)

② 경감대상 농업인 및 물량

□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kl 이하인 자와 금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자

□ 경감물량 : 연간 200kl 한도

- 200kl를 초과하는 물량은 정상세율(30%) 적용

③ 세부담 경감사례

□ 소규모 과실주 세부담 경감사례

(단위 : kl, 백만원)

업체	출고량	과세표준	주세납부액		경감액
			현행	개정(안)	
A	464	3,342	1,002	786	△216
B	198	1,186	356	178	△178

<계산근거>

○ A업체 : 3,342 ÷ 464 = 7.2 백만원/kl

- 200kl × 7.2 × 15% = 216
- $\frac{(464-200) \times 7.2 \times 30\%}{}$

786백만원

○ B업체 : 1,186 ÷ 198 = 6.0 백만원/kl

- 198kl × 6.0 × 15% = 178백만원

5.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① 주류의 상표에 표시되는 사항

□ 주세법상 주류의 상표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8개 사항 임

- ①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② 주류의 종류, ③ 규격(알콜분), ④ 용량, ⑤ 용기주입연월(일), ⑥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⑦ 상표명, ⑧ 세포함 출고가격

②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배경

□ 출고가격 표시제도는 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이번 조치로 상표기재사항이 보다 단순해지는 효과 기대
- ※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었음

6.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① 적용대상 차량은?

□ 금년부터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며 그 중 유로-4형 경유승용차(일반형*)가 대상

○ 종전부터 출시되고 있던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

* 일반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 8인 이하(예 : 쏘나타, 아반테, 세라토, SM3 등)

* 다목적형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승용자동차(예 : 스포티지, 투싼, 싼타페 등)

② 유로-4 기준이란?

□ EU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 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

〈유럽 배출가스허용기준 변경내역(경유승용차)〉

기준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유로-1	'92. 7	2.72g/km	-	0.97g/km	0.14/km
유로-2	'96. 1	1.0	-	0.7	0.08
유로-3	'00. 1	0.64	0.50g/km	0.56	0.05
유로-4	'05. 1	0.50	0.25	0.30	0.025

○ 우리나라의 경우 '05.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3, '06.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4에 해당

○ 유로-4가 유로-3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1/2수준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일반형 승용차)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 방법
현 행	0.50g/km	0.02g/km	0.01g/km	0.01g/km	15%	CVS-75모드
'05. 1월	0.64	0.50	0.56	0.05	15	ECE-15및
'06. 1월	0.50	0.25	0.30	0.025	10	EUDC 모드

③ 유로-4 기준 경유승용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 유로-3 경유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정도가 낮은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 보급을 유도하기 위함

※ '03. 5. 30 경제장관간담회 결정내용

국내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되 국내제작사의 기술 수준을 감안,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을 '05년에 한하여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유로-3으로 적용한 후 '06년부터 유로-4 기준을 적용

④ 경유승용차 출시계획

구 분	배기량	차 종	출시시기(2005년)
EURO-3	1,500cc	아반테(현대)	4월
		라비타(현대)	5월
		세라토(기아)	4월
EURO-4	1,500cc	리 오(기아)	3월
		베르나(현대)	4월
		라비타(현대)	12월
		클 릭(현대)	12월
		세라토(기아)	12월
		SM3(삼성)	12월
2,000cc	모 님(기아)	12월	
	쏘나타(현대)	12월	
		옵티마(현대)	12월

※ 수입차도 대부분 EURO-4 차종 판매예정 (대부분 2,000cc급)

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① 이번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선박은?

□ 자기어획물 운반선,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선박

○ 자가어획물 운반선

-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사실상 어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봄

○ 낚시어선업용 선박

- 어로기에는 낚시어업*을 영위(이미 면세유 공급)

* 주낙·외줄낙시 또는 채낙기를 사용하는 어업

- 어한기에는 낚시꾼을 승선시키는 낚시어선업**을 영위(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

** 낚시꾼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어류를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

8.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개념 및 대상자는?

□ 농·어민 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는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2만 ℓ 이상 사용한 농민 및 4만 ℓ 이상 사용한 어민이 사용

②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이 급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이 대상임

○ 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

○ 급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선박용 유류 등은 카드로 구매시

- 어민의 외상구매가 곤란하고 불법전용 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

9.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음식업자 3/103, 가공업자 2/102)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음식업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연혁

- 3/103('94~'99년) ⇒ 5/105('00~'01년) ⇒ 3/103('02년부터)

○ 증빙서류(계산서, 카드전표)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분에 한하여 공제되나

※ 금년부터 간이과세(연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없이도 공제 가능

□ 계산사례(매출 1억원, 농산물구입액 20백만원)

○ 개정전 부가세액 : 342만원

- 1억 원 × 4% (부가율 × 세율) - 20백만원 × (3/103) = 342만원

○ 개정후 부가세액 : 305만원(△37만원)

- 1억 원 × 4% (부가율 × 세율) - 20백만원 × (5/105) = 305만원

10.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데침과 삶음의 차이는?

□ 데침(Blanching):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하는 열처리(2~3분) 과정

⇒ 식품의 성질이 변화(익힌 것, 가공)한 것이 아님

※ 식품가공학상 블렌칭 시간

식 품	블렌칭 시간(물 100도)
강낭콩	3~4분
브로콜리	2~3분
옥수수	2~3분
시금치	1~1.5분
고사리	2~3분

○ 삶음(boiling): 식품에 상당기간(5분 이상)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함

□ 채소류에 대한 면세기준

○ 현 행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	------------	----	----

○ 개 정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	------------	----	----

※ 명암부분은 면세대상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 상반기 59%, 100.2조원 조기 집행 -

※ 이 자료는 2005년 1월 12일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에서 발표한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월 11일(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하였음

□ 금년도 우리 경제는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불안,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급속한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

	'05 상반기	'05 하반기	'05 연간
• 수출	9.2	10.5	9.8
• 소비	0.6	2.9	1.8
• 투자	0.9	3.5	2.3

* 자료출처: 한국은행의 2005년 경제전망('04. 12. 9)

○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9조원의 59.0%인 100.2조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하고

* '04년 상반기 대비 12.7조원 수준의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있으며, 이는 '04년 상반기의 '03년 대비 재정집행 확대규모(4.2조원)의 3배 수준임

○ 특히, 1/4분기중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4분기보다 높은 29.7%(50.4조원)를 집중 시행함으로써
 ⇨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목표의 달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2005년도 상반기 재정집행계획>

(단위: 조원, %)

	2005예산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05 계획 ('04년)	169.9 (159.1)	50.4 (42.8)	29.7 (26.9)	49.8 (44.7)	29.2 (28.1)	100.2 (87.5)	59.0 (55.0)
예 산	121.5	37.1	30.5	35.2	29.0	72.3	59.5
기 금	23.8	5.9	24.7	6.7	28.4	12.6	53.1
공기업	24.6	7.4	30.3	7.9	31.7	15.3	62.0

주: 42개 소관 예산, 35개 사업성 기금, 12개 공기업 주요사업비 기준(붙임 참조)

□ 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내용면에서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둬으로써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

【일자리 창출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의 연간 수혜인원 규모를 '04년 36만명 → '05년 46만명으로 확대
- 모집일정 최대한 단축, 홍보강화 등을 통해 1/4분기에 집중 지원하되 가급적 1~2월중에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

⇒ 1/4분기중에 연간계획의 62%수준을 시행하여 전년동기보다 수혜인원 규모를 약 10만명 수준 확대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취업 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000명: 1/4 60%, 상반기 80% 집행)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5,500명: 1/4 58%, 상반기 81% 집행)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여성부, 3,000명: 1/4 63%, 상반기 100% 집행)

(단위: 만명, %)

	'04년			'05년		
	연간	1/4분기	상반기	연간	1/4분기	상반기
계	36	19(55)	28(80)	46	29(62)	38(81)
청년실업	14	7(53)	12(84)	20	12(58)	16(79)
취약계층·사회적 일자리	16	9(57)	13(80)	21	14(69)	18(87)
공무원·공기업 채용	6	3(51)	3(64)	5	3(52)	4(69)

주: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비율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

- 상반기 집행진도율을 평균(59%)보다 4~6%p 높게 설정하여 중점분야 사업으로 별도 관리
- 단순히 진도율 외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등을 집중 점검

40%, 상반기 70% 집행)

- (서민) 기초생활급여(복지부, 19,880억원 : 1/4 32%, 상반기 62% 집행)
- (중소) 구조개선 사업(중산기금, 6,300억원 : 1/4 36%, 상반기 73% 집행)
- (중소) 소상공인 지원(중산기금, 5,100억원 : 1/4 31%, 상반기 66% 집행)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서민)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 9,337억원:1/4

(단위: 조원, %)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전체 총계	169.9	4,507	50.4(29.7)	100.2(59.0)
• 서민 생활안정 지원	14.1	192	4.6(32.9)	8.9(63.0)
• 중소기업 지원	5.4	162	1.9(35.9)	3.5(65.1)

주: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비율

【SOC·지자체 보조사업】

○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지자체 보조사업은 예년보다 높은 58~61%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

〈주요 대상사업 예시〉

- (SOC)국도유지보수(건교부, 4,372억원:1/4 31.0%, 상

반기 62.0% 집행)

- (SOC)부산신항 건설(해수부, 3,682억원:1/4 34.3%, 상반기 60.4% 집행)
- (지방)4개 시도 산업진흥 2단계(산자부, 1,800억원:1/428.0%, 상반기62.0% 집행)
- (지방)하수처리장 설치(환경부, 5,601억원:1/4 23.5%, 상반기 61.9% 집행)

(단위: 조원, %)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 SOC 건설 지원	21.8	232	6.1(27.7)	12.7(58.5)
• 지자체 보조사업	18.0	233	5.8(32.5)	10.9(60.8)

주: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비율

□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1/4분기중에는 월 2회)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부처별로도 자체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집행 애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 재정 조기집행이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이 아닌 본래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붙임 1〉 재정 조기집행 관련 Q&A

1.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재정 긴축효과 → 추경편성 가능성

- 재정 조기집행은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상반기중 민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 될 경우에,
 - 예산의 집행시기를 가급적 상반기로 앞당겨 경기의 진

폭을 줄임으로써 연중 고르게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 고자 하는 데 1차적인 정책의 목적이 있음

- 올해의 경우도 한은 등 주요 경제 예측기관은 상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3%대, 하반기에는 점진적 인 내수 회복으로 4%대의 성장을 전망하는 등 상저하 고(上低下高)의 경기 패턴을 예상

〈한국은행 경제전망〉

(전년동기 대비, %)

	'04년 경제전망('03. 12월)			'05년 경제전망('04. 12월)		
	'04 연간	상반기	하반기	'05 연간	상반기	하반기
• 수출	13.2	14.4	12.1	9.8	9.2	10.5
• 소비	3.2	2.3	4.1	1.8	0.6	2.9
• 투자	6.5	4.4	8.7	2.3	0.9	3.5

-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더라도 하 반기에 민간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 종합투자계획이 상반기중에 준비작업을 거쳐 하반기부 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재정이 하반기 경제에 긴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경기전망 등을 감안 할 때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연초의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 는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시켜 왔음

○ 1/4분기 29.7%, 상반기 59%의 집행률 목표는 작년 같 은 기간의 실적이 각각 26.9%, 55%인 점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 렷음

○ 작년 연말부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도 사전준비 작업 진행상황, 사업별 집행여건, 국고 자 금사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조정 을 거쳤음

2. 작년 말 국회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연초 재정 조기집행 차질 여부 및 무리한 사업추진 우려

- 금년 예산이 작년 12. 3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연초 재정 집행에 일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 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재정 조기집행이 반드시 무리한 사 업추진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앞으로,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 해 조기집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단순히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

3. 재정 조기집행의 성장 기여 효과

□ 재정 조기집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추경편성 등과 같이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확대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경기 진폭을 완화하여 연중 고르게 경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집행시기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외에 연초 부터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관리를 통해 연도 말 이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음

□ 참고로, 조세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04년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3%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 효과

□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장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 경기회복지원 등으로 위축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먼저 공무원, 공기업 채용 등 공공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이외에
- 각종 직업훈련·연수·인턴 사업 등은 소득 능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기업 수요가 큰 전문지식·기능 등을 갖추도록 하거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인·

구직 불균형을 해소하고,

* 취업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만명),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중기청, 5,500명) 등

-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여성부, 3,000명),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문광부, 1,504명) 등

- 인건비 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2.4만명),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노동부, 542명) 등

□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형식적인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직자·기업 등 수혜자의 반응, 실질적인 취업연결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붙임 2〉 재정집행 점검대상 예산의 범위

□ 재정집행 점검대상: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구 분	'04년	'05년
총 계	159.1조원	169.9조원
예 산	119.2조원	121.5조원
기 금	20.9조원	23.8조원
공기업	19.0조원	24.6조원

- 예산: 42개 소관 주요사업비
 - 총 54개 소관 중 주요투자사업비 없는 국회, 대법원 등 12개 제외
 - 인건비, 기본사업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기준
- 기금: 35개 사업성기금 주요사업비
 - 총 57개 기금 중 사회보험기금(6개), 계정성기금(5개), 금융성기금(9개)을 제외한 사업성기금(37개) 중 국내 지출 비중이 낮은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35개 기금 대상

-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기준
- 공기업: 12개 공기업 주요투자사업비
 - 정부투자기관(13개) 중 주요투자사업이 규모가 낮은 4개 기관(KOTRA 등) 제외한 9개 기관*의 주요투자사업비
 - *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농기반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 정부출자기관(19개) 중 주요투자사업 규모가 낮은 16개 기관(산업은행 등) 제외한 3개기관*의 주요투자사업비
 - *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붙임 3〉 2005년 주요기관별 재정집행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연간예산 (A)	1/4분기 (B)		2/4분기 (C)		3/4분기 (D)		4/4분기 (E)	
			B/A		C/A		D/A		E/A
□ 총 계	1,699,082	504,387	29.7	1,001,800	59.0	1,372,214	80.8	1,699,082	100
○ 예 산(42개)	1,215,041	371,164	30.5	722,797	59.5	993,974	81.8	1,215,041	100
교육인적자원부	259,293	85,707	33.1	151,071	58.3	212,706	82.0	259,293	100
행정자치부	208,371	69,573	33.4	137,167	65.8	178,236	85.5	208,371	100
건설교통부	169,231	49,102	29.0	104,389	61.7	138,283	81.7	169,231	100
보건복지부	87,090	28,641	32.9	54,880	63.0	78,610	90.3	87,090	100
농 립 부	70,412	17,455	24.8	38,161	54.2	47,375	67.3	70,412	100
산업자원부	46,318	12,744	27.5	29,89	62.8	39,819	86.0	46,318	100
정보통신부	36,585	8,297	22.7	18,334	50.1	26,870	73.4	36,585	100
해양수산부	28,257	9,341	33.1	16,433	58.2	21,773	77.1	28,257	100
환 경 부	27,305	7,871	28.8	16,813	61.6	22,787	83.5	27,305	100
과학기술부	18,216	6,035	33.1	12,615	69.3	16,368	89.9	18,216	100
중소기업청	14,864	10,631	71.5	12,278	82.6	14,229	95.7	14,864	100
문화관광부	10,849	3,453	31.8	6,381	58.8	8,870	81.8	10,849	100
여 성 부	6,281	1,594	25.4	3,428	54.6	4,862	77.4	6,281	100
노 동 부	5,239	1,937	37.0	3,403	65.0	4,489	85.7	5,239	100
○ 기 금(35개)	237,556	58,623	24.7	126,078	53.1	178,514	75.1	237,556	100
국민주택	92,057	20,527	22.3	42,478	46.1	60,938	66.2	92,057	100
중산기금	36,029	10,813	30.0	23,056	64.0	30,249	84.0	36,029	100
농안기금	18,570	1,063	5.7	10,281	55.4	15,851	85.4	18,570	100
○ 공기업(12개)	246,485	74,600	30.3	152,925	62.0	199,726	81.0	246,485	100
대한주택공사	91,031	28,214	31.0	56,417	62.0	73,809	81.1	91,031	100
한국전력	36,171	11,212	31.0	22,424	62.0	29,298	81.0	36,171	100
한국도로공사	23,341	7,236	31.0	14,472	62.0	19,140	82.0	23,341	100
한국토지공사	56,000	16,800	30.0	34,720	62.0	45,360	81.0	56,000	100
농업기반공사	15,027	3,730	24.8	9,324	62.0	11,690	77.8	15,027	100
한국수자원공사	9,200	2,770	30.1	5,796	63.0	7,420	80.7	9,200	100

주: 집행계획 금액 및 진도율(%)은 누계 기준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 이 자료는 2005년 1월 19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말 개정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세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특소세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고자

- 조특법시행령·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 법인세법시행령,
- 주세법시행령·규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농림특례규정 및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

① 조특법시행령·규칙

-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신설
- 도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건설한 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규정

② 소득·법인세법시행령

-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과세 특례

-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③ 주세법시행령·규칙

-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이 50% 경감(30%→15%)되는 소규모 생산 농업인 등의 범위와 경감대상 물량을 규정
- 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④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금년에 조기 시판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수세를 '05년에 한해 50% 경감

⑤ 농림특례규정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낚시어선업용 선박 및 어획물운반선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임대배건조이송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양식장용 차광막을 추가
- 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에서 연체 등으로 카드발급이 곤란한 농어민을 제외

⑥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05. 1월부터 '06. 12월까지 2년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
-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음식업자가 원재료로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대천 채소류(고사리, 취나물 등)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
-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I.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대상자 등(조특령 § 106의6·§ 106의7)

〈법 개정내용〉

-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 부여
- ⇒ 담보제공 제외자, 담보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담보 제공 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성실납세자 ○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금세공업은 1년 이상)을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납 및 결손처분이 없고 -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 □ 납세담보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3%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2%)

〈개정이유〉

- 납세실적 등이 성실한 사업자는 담보제공의무 면제
- 납세담보는 담보할 부가가치세의 120/100 상당액으로 함
- 〈적용례〉 '05.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도로 건설·운영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령 § 106⑦, 조특규칙 별표1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30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출자한 법인(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 재무적투자자: 연기금 등

〈개정이유〉

-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운영·유지관리하는 경우
 - 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SOC투자 활성화 지원 (예 : 통행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조특령 § 116의2)

〈법 개정내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등 세제지원
- ⇒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달러 이상 <input type="checkbox"/> 물류업 : 투자규모 5백만달러 이상

〈개정이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요건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
 〈적용례〉 '05. 1. 1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현황

구 분	천 안	평 등	대 불	구 미	오 착	진 사	계
소재지	충남 천안	광주시	전남 영암	경북 구미	충북 청원	경남 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나.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 유상감자시 조세지원 배제
 (조특령 §116의6)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input type="checkbox"/> 유상증자분에 대해 5년 또는 7년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 7년 이내 유상감자시 <input type="checkbox"/>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 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 방지
 〈적용례〉 '05. 1. 1 이후 증자 또는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 '00년 외국인투자 5년간 감면결정
- '04년 1,000억원 유상증자
- '05년 1,000억원 유상감자
- 순투자증가액 : 0원
- 총 감면기간 : 5년 + 4년(유상증자분)
- 당초 감면기간 5년보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 없이 4년간

감면기간만 연장되는 결과 초래

- 개정안 : 감면기간 연장효과 제거

다. 연구개발업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요건 완화
 (조특령 §116의2②)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중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 감면 요건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input type="checkbox"/> 국내 도입 3년 이내인 기술 <input type="checkbox"/> 주로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술	<input type="checkbox"/>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R&D 센터)에 대해서는 요건 적용배제

〈개정이유〉

연구개발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제고
 〈적용례〉 '05. 1. 1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4. 투기지역 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규정
(조특령 § 43의3)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input type="checkbox"/>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시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 06. 12. 31이전 수용시 적용 <input type="checkbox"/>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예정지구지정일 등의 이전 취득분에 한정하여 기준시가 적용 다만,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정지구지정일 등 구체적인 기준시가격 기준일은 시행령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규정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input type="checkbox"/>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input type="checkbox"/>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일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일 등(시행령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 <input type="checkbox"/>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적용

<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적용례> '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 1~5. 31)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II.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 155의2)

현행	개정(안)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5대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input type="checkbox"/> 연로자인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input type="checkbox"/>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input type="checkbox"/>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에도 <input type="checkbox"/>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저당 : 10년 이상, 연금식(매월, 분기별)수령,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 상환

<개정이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장기저당담보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음

<적용례> 2005.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법인령 § 161)

현 행	개 정(안)
<p><input type="checkbox"/>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p> <p>〈제출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 주식회사 외의 소액출자자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p><input type="checkbox"/>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액면가액, 출자가액×2%) 부과</p>	<p>○ 제출제외대상에 다음 법인 및 소액주주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전문회사 - 공기업·기관투자자 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법인 - 비상장주식회사 소액주주 * 소액주주 : 지분을 1% 미만, 액면가 총액 500만원 이하 <p>(현행과 같음)</p>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사항('04. 11월)

〈개정이유〉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 〈적용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 주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과실주 범위 (주세령 § 22의2)

〈법 개정내용〉

- 농민·생산자단체 등이 소규모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 적용(30% →15%)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낮은 세율 적용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에 500㎏ 이하로 제조한 자 ○ 당해 연도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p><input type="checkbox"/> 낮은 세율 적용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의 총과세출고량 중 200㎏까지

〈개정이유〉

-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경쟁력이 제고되고, 과실 소비촉진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

〈적용례〉 '0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본, EU 사례: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주세율 감감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주세규칙 § 7)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의 명칭, 제조장의 위치 ○ 주류의 종류 ○ 규격(알콜분) ○ 용량 ○ 용기주입연월(일) ○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 상표명 ○ 세포함 출고가격 	<p><input type="checkbox"/> 주류상표의 표시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유지</p> </div> <p>〈삭 제〉</p>

〈개정이유〉

-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조업자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

※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없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었음

<적용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V.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를 적용(특소령 § 4의2)

현 행	개 정(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05년중 특소세 50% 경감 -2,000cc 초과 : 10% → 5% -2,000cc 이하 : 5% → 2.5% *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 '05. 1월부터 유로-3, 유로-4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
유로-4형이 유로-3형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1/2 수준

유로-4 경유승용차 가격이 약 3% 인하효과(2,000cc 기준)

<적용례> '05년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해 적용

V. 농림특례규정

1. 면세유 공급대상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농림특례 § 15 및 별표1)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시설 <input type="checkbox"/> 연근해 어선 <input type="checkbox"/> 어민이 운영하는 양식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총 9종 <input type="checkbox"/> 양어장용 필름 등 11종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자가어획물 운반선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업용 선박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영세율 대상 조정 <input type="checkbox"/> 추가 : 앞담배건조이송기 <input type="checkbox"/> 제외 : 실효성이 미미한 동력절단기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막,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추가 <input type="checkbox"/> 양식장용 차광막 추가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의 절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제고

<적용례> '0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면세유)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농림특례 § 16)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구입권 사용 <input type="checkbox"/> 구매전용카드 사용 -농민 : 전년도 2만 ℓ 이상 -어민 : 전년도 4만 ℓ 이상 <input type="checkbox"/> 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어민이 급유소로부터 선박용 유류 구입시 <신 설>	<input type="checkbox"/> 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완화 <input type="checkbox"/> 구매전용카드 사용 제외 -어민이 급유소 또는 공급대행 대리점에서 유류 구입시 -연체자인 농어민이 유류 구입시

<개정이유>

일정기간 외상구입이 가능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VI.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규칙 § 19)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의 3/10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을 5/105('06년 말까지)로 인상

<개정이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

○ 업체당 평균 4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률 10% 내외)

※'04. 12월 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

<적용례> '05. 1. 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규칙 별표1)

현 행	개 정(안)
<input type="checkbox"/> 면세되는 식료품 ○ 신선, 건조, 냉장한 채소류 <신 설>	○ 데친 채소류 -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과세

<개정이유>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나물 생산농가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 데침(Blanching) : 식품의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 열처리하는 과정, 끓는 물에 2~3분정도 담금

** 현재는 신선·냉장 및 건조한 채소만을 면세

<적용례> '05.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5년 재산·소비·국제조세 시행령·규칙 개정에 대한〉
문답자료

1.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① 면세금지금 제도란?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러나, 금지금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

⇒ 금지금은 귀금속제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② 납세담보제도의 도입배경은?

□ 면세금지금 제도의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로 판매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판매

○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고의체납을 통한 세금탈루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③ 납세담보의 종류는?

□ 국세기본법(§ 29)상 납세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토지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① 현재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현황은 어떠한가?

□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25개 업체가 총 7억 6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현재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명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사전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됨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현황〉

구분	천안	평등	대불	구미	오창	진사	계
소재지	충남천안	광주시	전남영암	경북구미	충북청원	경남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2. 11. 6 확장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지정이 가능

○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지정할 수 있음

② 연구개발업에 대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적용되는 요건을 배제한 이유는?

□ 그러나 R&D센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게 되므로

○ 기술도입경과기간(3년) 요건과 국내공정수행 요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함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① 현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고

○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예: 양도, 상속·증여, 증자·감자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과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 소액주주: 지분을 1% 미만,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주식회사 외 법인(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액출자자는 제출대상 제외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② 제출대상 축소 이유는?

□ 그동안 기업부담 과중과 행정실효성 차원에서 관련업계 및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대상 축소 등 개선요구 제기

□ 이번에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실효성이 낮은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

① 투자회사(Mutual Fund)는 상법상 법인이나

-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수익증권과 유사(투자자금은 환매를 통해 회수)

②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이고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적으며

③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재 주식회사외 법인의 소액출자자만 제외하고 있으나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도 제외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부담 완화

③ 적용시기는?

□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

① 적용대상 과실주

□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하여 제조하는 주류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

회(예: ○○과수농협) 등

-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려는 데에 목적

□ 농민이 생산하는 과실주 생산업체 수 : 37개 업체

- 복분자주(15), 머루주(8), 포도주(5), 배술(2), 기타(7)

② 경감대상 농업인 및 물량

□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kl 이하인 자와 금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자

□ 경감물량 : 연간 200kl 한도

- 200kl를 초과하는 물량은 정상세율(30%) 적용

③ 세부담 경감사례

□ 소규모 과실주 세부담 경감사례

(단위 : kl, 백만원)

업체	출고량	과세표준	주세납부액		경감액
			현행	개정(안)	
A	464	3,342	1,002	786	△216
B	198	1,186	356	178	△178

<계산근거>

○ A업체 : 3,342 ÷ 464 = 7.2 백만원/kl

- 200kl × 7.2 × 15% = 216
- $\frac{(464-200) \times 7.2 \times 30\%}{}$

786백만원

○ B업체 : 1,186 ÷ 198 = 6.0 백만원/kl

- 198kl × 6.0 × 15% = 178백만원

5.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① 주류의 상표에 표시되는 사항

□ 주세법상 주류의 상표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8개 사항 임

- ①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② 주류의 종류, ③ 규격(알콜분), ④ 용량, ⑤ 용기주입연월(일), ⑥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⑦ 상표명, ⑧ 세포함 출고가격

②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배경

□ 출고가격 표시제도는 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 이번 조치로 상표기재사항이 보다 단순해지는 효과 기대
- ※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특히 수입주류는 가격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었음

6.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① 적용대상 차량은?

□ 금년부터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며 그 중 유로-4형 경유승용차(일반형*)가 대상

○ 종전부터 출시되고 있던 다목적형 승용차**는 제외

* 일반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 8인 이하(예 : 쏘나타, 아반테, 세라토, SM3 등)

* 다목적형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의 승용자동차(예 : 스포티지, 투싼, 싼타페 등)

② 유로-4 기준이란?

□ EU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 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

〈유럽 배출가스허용기준 변경내역(경유승용차)〉

기준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유로-1	'92. 7	2.72g/km	-	0.97g/km	0.14/km
유로-2	'96. 1	1.0	-	0.7	0.08
유로-3	'00. 1	0.64	0.50g/km	0.56	0.05
유로-4	'05. 1	0.50	0.25	0.30	0.025

○ 우리나라의 경우 '05.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3, '06.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4에 해당

○ 유로-4가 유로-3에 비해 대기오염정도가 1/2수준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일반형 승용차)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 방법
현 행	0.50g/km	0.02g/km	0.01g/km	0.01g/km	15%	CVS-75모드
'05. 1월	0.64	0.50	0.56	0.05	15	ECE-15및
'06. 1월	0.50	0.25	0.30	0.025	10	EUDC 모드

③ 유로-4 기준 경유승용차를 지원하는 이유는?

□ 유로-3 경유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정도가 낮은 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 보급을 유도하기 위함

※ '03. 5. 30 경제장관간담회 결정내용

국내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되 국내제작사의 기술 수준을 감안,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을 '05년에 한하여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유로-3으로 적용한 후 '06년부터 유로-4 기준을 적용

④ 경유승용차 출시계획

구 분	배기량	차 종	출시시기(2005년)
EURO-3	1,500cc	아반테(현대)	4월
		라비타(현대)	5월
		세라토(기아)	4월
EURO-4	1,500cc	리 오(기아)	3월
		베르나(현대)	4월
		라비타(현대)	12월
		클 릭(현대)	12월
		세라토(기아)	12월
		SM3(삼성)	12월
1,100cc	모 님(기아)	12월	
	2,000cc	쏘나타(현대)	12월
		옵티마(현대)	12월

※ 수입차도 대부분 EURO-4 차종 판매예정 (대부분 2,000cc급)

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① 이번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선박은?

□ 자가어획물 운반선,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선박

○ 자가어획물 운반선

- 자가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사실상 어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봄

○ 낚시어선업용 선박

- 어로기에는 낚시어업*을 영위(이미 면세유 공급)

* 주낙·외줄낙시 또는 채낙기를 사용하는 어업

- 어한기에는 낚시꾼을 승선시키는 낚시어선업**을 영위(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

** 낚시꾼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어선의 선상(船上)에서 어류를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

8.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①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개념 및 대상자는?

□ 농·어민 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는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2만 ℓ 이상 사용한 농민 및 4만 ℓ 이상 사용한 어민이 사용

②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이 급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이 대상임

○ 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

○ 급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선박용 유류 등은 카드로 구매시

- 어민의 외상구매가 곤란하고 불법전용 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

9.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의 일정률(음식업자 3/103, 가공업자 2/102)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음식업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연혁

- 3/103('94~'99년) ⇒ 5/105('00~'01년) ⇒ 3/103('02년부터)

○ 증빙서류(계산서, 카드전표)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분에 한하여 공제되나

※ 금년부터 간이과세(연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없이도 공제 가능

□ 계산사례(매출 1억원, 농산물구입액 20백만원)

○ 개정전 부가세액 : 342만원

- 1억 원 × 4% (부가율 × 세율) - 20백만원 × (3/103) = 342만원

○ 개정후 부가세액 : 305만원(△37만원)

- 1억 원 × 4% (부가율 × 세율) - 20백만원 × (5/105) = 305만원

10.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데침과 삶음의 차이는?

□ 데침(Blanching):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하는 열처리(2~3분) 과정

⇒ 식품의 성질이 변화(익힌 것, 가공)한 것이 아님

※ 식품가공학상 블렌칭 시간

식 품	블렌칭 시간(물 100도)
강낭콩	3~4분
브로콜리	2~3분
옥수수	2~3분
시금치	1~1.5분
고사리	2~3분

○ 삶음(boiling): 식품에 상당기간(5분 이상)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함

□ 채소류에 대한 면세기준

○ 현 행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	------------	----	----

○ 개 정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	------------	----	----

※ 명암부분은 면세대상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 상반기 59%, 100.2조원 조기 집행 -

※ 이 자료는 2005년 1월 12일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에서 발표한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월 11일(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하였음

□ 금년도 우리 경제는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불안,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급속한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

	'05 상반기	'05 하반기	'05 연간
• 수출	9.2	10.5	9.8
• 소비	0.6	2.9	1.8
• 투자	0.9	3.5	2.3

* 자료출처: 한국은행의 2005년 경제전망('04. 12. 9)

○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9조원의 59.0%인 100.2조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하고

* '04년 상반기 대비 12.7조원 수준의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있으며, 이는 '04년 상반기의 '03년 대비 재정집행 확대규모(4.2조원)의 3배 수준임

○ 특히, 1/4분기중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4분기보다 높은 29.7%(50.4조원)를 집중 시행함으로써
 ⇨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의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목표의 달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2005년도 상반기 재정집행계획>

(단위: 조원, %)

	2005예산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05 계획 ('04년)	169.9 (159.1)	50.4 (42.8)	29.7 (26.9)	49.8 (44.7)	29.2 (28.1)	100.2 (87.5)	59.0 (55.0)
예 산	121.5	37.1	30.5	35.2	29.0	72.3	59.5
기 금	23.8	5.9	24.7	6.7	28.4	12.6	53.1
공기업	24.6	7.4	30.3	7.9	31.7	15.3	62.0

주: 42개 소관 예산, 35개 사업성 기금, 12개 공기업 주요사업비 기준(붙임 참조)

□ 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내용면에서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둬으로써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

【일자리 창출사업】

-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의 연간 수혜인원 규모를 '04년 36만명 → '05년 46만명으로 확대
- 모집일정 최대한 단축, 홍보강화 등을 통해 1/4분기에 집중 지원하되 가급적 1~2월중에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

⇒ 1/4분기중에 연간계획의 62%수준을 시행하여 전년동기보다 수혜인원 규모를 약 10만명 수준 확대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취업 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000명: 1/4 60%, 상반기 80% 집행)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5,500명: 1/4 58%, 상반기 81% 집행)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여성부, 3,000명: 1/4 63%, 상반기 100% 집행)

(단위: 만명, %)

	'04년			'05년		
	연간	1/4분기	상반기	연간	1/4분기	상반기
계	36	19(55)	28(80)	46	29(62)	38(81)
청년실업	14	7(53)	12(84)	20	12(58)	16(79)
취약계층·사회적 일자리	16	9(57)	13(80)	21	14(69)	18(87)
공무원·공기업 채용	6	3(51)	3(64)	5	3(52)	4(69)

주: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비율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

- 상반기 집행진도율을 평균(59%)보다 4~6%p 높게 설정하여 중점분야 사업으로 별도 관리
- 단순히 진도율 외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등을 집중 점검

40%, 상반기 70% 집행)

- (서민) 기초생활급여(복지부, 19,880억원 : 1/4 32%, 상반기 62% 집행)
- (중소) 구조개선 사업(중산기금, 6,300억원 : 1/4 36%, 상반기 73% 집행)
- (중소) 소상공인 지원(중산기금, 5,100억원 : 1/4 31%, 상반기 66% 집행)

〈주요 대상사업 예시〉

- (서민)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 9,337억원:1/4

(단위: 조원, %)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전체 총계	169.9	4,507	50.4(29.7)	100.2(59.0)
• 서민 생활안정 지원	14.1	192	4.6(32.9)	8.9(63.0)
• 중소기업 지원	5.4	162	1.9(35.9)	3.5(65.1)

주: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비율

【SOC·지자체 보조사업】

○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지자체 보조사업은 예년보다 높은 58~61%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

〈주요 대상사업 예시〉

- (SOC)국도유지보수(건교부, 4,372억원:1/4 31.0%, 상

반기 62.0% 집행)

- (SOC)부산신항 건설(해수부, 3,682억원:1/4 34.3%, 상반기 60.4% 집행)
- (지방)4개 시도 산업진흥 2단계(산자부, 1,800억원:1/428.0%, 상반기62.0% 집행)
- (지방)하수처리장 설치(환경부, 5,601억원:1/4 23.5%, 상반기 61.9% 집행)

(단위: 조원, %)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 SOC 건설 지원	21.8	232	6.1(27.7)	12.7(58.5)
• 지자체 보조사업	18.0	233	5.8(32.5)	10.9(60.8)

주: ()는 연간계획 대비 집행비율

□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1/4분기중에는 월 2회)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부처별로도 자체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집행 애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 재정 조기집행이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이 아닌 본래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붙임 1〉 재정 조기집행 관련 Q&A

1.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재정 긴축효과 → 추경편성 가능성

- 재정 조기집행은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상반기중 민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 될 경우에,
 - 예산의 집행시기를 가급적 상반기로 앞당겨 경기의 진

폭을 줄임으로써 연중 고르게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 고자 하는 데 1차적인 정책의 목적이 있음

- 올해의 경우도 한은 등 주요 경제 예측기관은 상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3%대, 하반기에는 점진적 인 내수 회복으로 4%대의 성장을 전망하는 등 상저하 고(上低下高)의 경기 패턴을 예상

〈한국은행 경제전망〉

(전년동기 대비, %)

	'04년 경제전망('03. 12월)			'05년 경제전망('04. 12월)		
	'04 연간	상반기	하반기	'05 연간	상반기	하반기
• 수출	13.2	14.4	12.1	9.8	9.2	10.5
• 소비	3.2	2.3	4.1	1.8	0.6	2.9
• 투자	6.5	4.4	8.7	2.3	0.9	3.5

-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더라도 하 반기에 민간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 종합투자계획이 상반기중에 준비작업을 거쳐 하반기부 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재정이 하반기 경제에 긴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경기전망 등을 감안 할 때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연초의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 는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시켜 왔음

○ 1/4분기 29.7%, 상반기 59%의 집행률 목표는 작년 같 은 기간의 실적이 각각 26.9%, 55%인 점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 려움

○ 작년 연말부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도 사전준비 작업 진행상황, 사업별 집행여건, 국고 자 금사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조정 을 거쳤음

2. 작년 말 국회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연초 재정 조기집행 차질 여부 및 무리한 사업추진 우려

- 금년 예산이 작년 12. 3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연초 재정 집행에 일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 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재정 조기집행이 반드시 무리한 사 업추진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앞으로,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 해 조기집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단순히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

3. 재정 조기집행의 성장 기여 효과

□ 재정 조기집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추경편성 등과 같이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확대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경기 진폭을 완화하여 연중 고르게 경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 아울러, 집행시기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외에 연초 부터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관리를 통해 연도 말 이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음

□ 참고로, 조세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04년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3%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 효과

□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장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 경기회복지원 등으로 위축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먼저 공무원, 공기업 채용 등 공공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이외에
- 각종 직업훈련·연수·인턴 사업 등은 소득 능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기업 수요가 큰 전문지식·기능 등을 갖추도록 하거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인·

구직 불균형을 해소하고,

* 취업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만명),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중기청, 5,500명) 등

-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여성부, 3,000명),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문광부, 1,504명) 등

- 인건비 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2.4만명),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노동부, 542명) 등

□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형식적인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직자·기업 등 수혜자의 반응, 실질적인 취업연결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붙임 2〉 재정집행 점검대상 예산의 범위

□ 재정집행 점검대상: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구 분	'04년	'05년
총 계	159.1조원	169.9조원
예 산	119.2조원	121.5조원
기 금	20.9조원	23.8조원
공기업	19.0조원	24.6조원

- 예산: 42개 소관 주요사업비
 - 총 54개 소관 중 주요투자사업비 없는 국회, 대법원 등 12개 제외
 - 인건비, 기본사업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기준
- 기금: 35개 사업성기금 주요사업비
 - 총 57개 기금 중 사회보험기금(6개), 계정성기금(5개), 금융성기금(9개)을 제외한 사업성기금(37개) 중 국내 지출 비중이 낮은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35개 기금 대상

-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기준
- 공기업: 12개 공기업 주요투자사업비
 - 정부투자기관(13개) 중 주요투자사업이 규모가 낮은 4개 기관(KOTRA 등) 제외한 9개 기관*의 주요투자사업비
 - *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농기반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 정부출자기관(19개) 중 주요투자사업 규모가 낮은 16개 기관(산업은행 등) 제외한 3개기관*의 주요투자사업비
 - *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붙임 3〉 2005년 주요기관별 재정집행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연간예산 (A)	1/4분기 (B)		2/4분기 (C)		3/4분기 (D)		4/4분기 (E)	
			B/A		C/A		D/A		E/A
□ 총 계	1,699,082	504,387	29.7	1,001,800	59.0	1,372,214	80.8	1,699,082	100
○ 예 산(42개)	1,215,041	371,164	30.5	722,797	59.5	993,974	81.8	1,215,041	100
교육인적자원부	259,293	85,707	33.1	151,071	58.3	212,706	82.0	259,293	100
행정자치부	208,371	69,573	33.4	137,167	65.8	178,236	85.5	208,371	100
건설교통부	169,231	49,102	29.0	104,389	61.7	138,283	81.7	169,231	100
보건복지부	87,090	28,641	32.9	54,880	63.0	78,610	90.3	87,090	100
농 립 부	70,412	17,455	24.8	38,161	54.2	47,375	67.3	70,412	100
산업자원부	46,318	12,744	27.5	29,89	62.8	39,819	86.0	46,318	100
정보통신부	36,585	8,297	22.7	18,334	50.1	26,870	73.4	36,585	100
해양수산부	28,257	9,341	33.1	16,433	58.2	21,773	77.1	28,257	100
환 경 부	27,305	7,871	28.8	16,813	61.6	22,787	83.5	27,305	100
과학기술부	18,216	6,035	33.1	12,615	69.3	16,368	89.9	18,216	100
중소기업청	14,864	10,631	71.5	12,278	82.6	14,229	95.7	14,864	100
문화관광부	10,849	3,453	31.8	6,381	58.8	8,870	81.8	10,849	100
여 성 부	6,281	1,594	25.4	3,428	54.6	4,862	77.4	6,281	100
노 동 부	5,239	1,937	37.0	3,403	65.0	4,489	85.7	5,239	100
○ 기 금(35개)	237,556	58,623	24.7	126,078	53.1	178,514	75.1	237,556	100
국민주택	92,057	20,527	22.3	42,478	46.1	60,938	66.2	92,057	100
중산기금	36,029	10,813	30.0	23,056	64.0	30,249	84.0	36,029	100
농안기금	18,570	1,063	5.7	10,281	55.4	15,851	85.4	18,570	100
○ 공기업(12개)	246,485	74,600	30.3	152,925	62.0	199,726	81.0	246,485	100
대한주택공사	91,031	28,214	31.0	56,417	62.0	73,809	81.1	91,031	100
한국전력	36,171	11,212	31.0	22,424	62.0	29,298	81.0	36,171	100
한국도로공사	23,341	7,236	31.0	14,472	62.0	19,140	82.0	23,341	100
한국토지공사	56,000	16,800	30.0	34,720	62.0	45,360	81.0	56,000	100
농업기반공사	15,027	3,730	24.8	9,324	62.0	11,690	77.8	15,027	100
한국수자원공사	9,200	2,770	30.1	5,796	63.0	7,420	80.7	9,200	100

주: 집행계획 금액 및 진도율(%)은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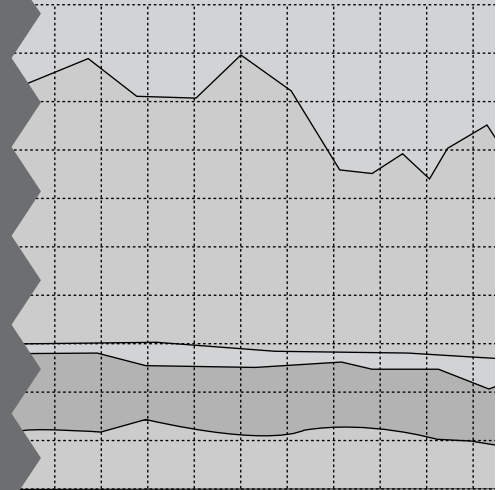
재정통계

• 부가가치세 Ⅱ편

• 부가가치세 Ⅲ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3.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4.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5. 부가가치세 소송사건

• 특별소비세 Ⅰ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형태별 인원(개인)

(단위: 명)

연도	합계	농림업분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분야	기타업종
1997	746,419	51,339	2,101	4,906	4,699	25,852	415,459	190	21,733	19,093	192,134	1,865	7,048
1998	755,144	51,367	1,676	5,242	4,741	25,026	430,048	181	24,699	20,227	180,014	2,645	9,278
1999	777,720	53,606	1,681	5,689	4,988	24,410	418,659	231	27,522	21,765	205,321	2,792	11,056
1990	838,922	55,346	1,596	6,197	6,038	26,623	424,421	234	39,467	23,539	238,891	2,773	13,807
1991	881,048	59,044	1,546	6,489	7,566	29,792	414,717	300	45,034	25,908	270,654	2,770	17,238
1992	990,379	60,951	1,708	7,142	8,418	32,004	405,937	302	48,133	27,762	371,842	3,167	23,013
1993	1,080,462	64,130	1,629	7,735	9,343	36,036	420,300	317	53,000	29,433	428,516	3,524	26,499
1994	1,121,705	65,790	1,588	8,445	10,664	39,912	416,332	335	54,658	31,568	461,350	3,843	27,220
1995	1,265,931	65,275	1,368	8,384	11,298	44,778	425,581	285	56,869	33,225	580,610	4,694	33,564
1996	1,319,051	63,807	1,343	8,125	11,652	44,560	378,291	323	56,467	34,727	583,998	5,136	130,622
1997	836,709	62,813	1,086	8,288	11,584	51,066	378,762	422	55,386	36,519	150,034	6,741	74,008
1998	873,879	56,393	788	9,908	7,796	59,333	374,863	922	50,022	39,061	223,219	8,777	42,797
1999	637,113	46,507	657	11,022	6,323	53,049	217,357	1,120	47,322	41,929	189,687	10,216	11,924
2000	725,720	47,771	681	11,215	8,085	57,458	219,740	1,442	52,600	44,552	253,927	13,057	15,192
2001	875,095	50,060	598	12,142	16,167	66,111	208,536	1,747	64,061	49,653	354,185	16,735	35,100
2002	975,209	47,252	547	11,871	25,763	72,278	203,753	1,801	66,715	53,788	418,496	17,585	55,360
2003	959,632	46,567	399	12,907	24,006	77,105	181,118	2,097	71,076	54,985	415,269	30,037	44,06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5	합계	1기	2,446,864	141,540	1,009,885	-	120,980	14,450	120,980	-	119,508	170,034	3,662	70,999	-	95,373
		2기	2,526,198	150,023	1,103,567	-	128,101	11,424	128,101	-	115,321	169,490	4,206	73,239	-	92,045
	서울특별시	1기	731,415	54,167	354,559	-	35,688	5,378	35,688	-	21,748	41,301	1,078	21,239	-	18,984
		2기	741,246	57,292	375,913	-	31,891	3,876	31,891	-	18,052	49,373	1,385	22,297	-	19,691
	부산광역시	1기	231,344	12,223	108,303	-	13,784	1,744	13,784	-	13,091	23,628	581	9,056	-	13,991
		2기	239,156	13,008	118,739	-	16,295	1,362	16,295	-	12,931	23,892	704	9,628	-	13,560
	대구광역시	1기	142,110	6,338	66,152	-	8,153	393	8,153	-	7,815	9,244	84	4,396	-	4,764
		2기	144,920	6,410	68,726	-	9,599	491	9,599	-	6,965	9,745	190	4,539	-	5,016
	인천광역시	1기	142,379	9,660	69,672	-	8,933	789	8,933	-	6,874	14,484	198	6,376	-	7,910
		2기	150,229	10,270	76,298	-	10,719	799	10,719	-	9,220	15,235	278	7,040	-	7,917
	광주광역시	1기	88,776	4,646	26,762	-	2,660	587	2,660	-	5,793	4,497	189	1,411	-	2,897
		2기	85,990	4,942	29,855	-	3,426	244	3,426	-	5,480	5,814	60	1,809	-	3,945
	대전광역시	1기	77,502	3,446	26,628	-	4,742	400	4,742	-	4,521	7,866	172	1,520	-	6,174
		2기	81,505	3,764	30,719	-	3,163	343	3,163	-	3,511	6,547	97	3,007	-	3,443
	시계	1기	1,408,526	90,480	652,076	-	72,870	9,291	72,870	-	59,842	101,020	2,302	43,998	-	54,720
		2기	1,443,046	95,686	700,250	-	75,093	7,115	75,093	-	56,159	104,606	2,714	48,320	-	53,572
	경기도	1기	286,832	16,893	124,395	-	17,696	2,031	17,696	-	12,795	21,279	321	9,918	-	11,040
		2기	300,443	17,972	140,810	-	21,540	1,415	21,540	-	18,251	21,564	393	9,880	-	11,291
	강원도	1기	87,466	3,226	24,596	-	4,872	259	4,872	-	8,700	8,939	63	3,459	-	5,417
		2기	91,200	3,400	28,307	-	5,522	454	5,522	-	5,029	5,826	98	2,646	-	3,082
	충청북도	1기	85,059	4,091	23,844	-	2,967	294	2,967	-	3,759	1,891	70	927	-	894
		2기	90,028	4,255	27,422	-	2,989	212	2,989	-	3,937	3,502	70	1,228	-	2,204
	충청남도	1기	97,462	4,232	24,312	-	3,534	312	3,534	-	6,292	2,510	72	1,167	-	1,271
		2기	99,954	4,588	26,861	-	2,913	308	2,913	-	5,684	3,292	42	821	-	2,429
	전라북도	1기	103,518	4,308	28,477	-	2,691	435	2,691	-	5,200	4,859	38	1,321	-	3,500
		2기	106,141	4,605	31,669	-	3,079	285	3,079	-	4,715	4,523	121	1,574	-	2,828
	전라남도	1기	86,470	3,622	22,401	-	2,766	281	2,766	-	6,302	4,425	22	1,352	-	3,051
		2기	90,193	3,882	25,528	-	3,116	166	3,116	-	4,060	3,822	38	1,059	-	2,725
	경상북도	1기	124,110	5,839	39,128	-	4,832	483	4,832	-	8,464	7,867	134	2,813	-	4,920
		2기	128,952	6,291	43,449	-	5,283	618	5,283	-	7,416	6,435	133	2,233	-	4,069
	경상남도	1기	143,463	7,628	61,710	-	7,861	990	7,861	-	7,546	15,582	614	5,436	-	9,532
		2기	153,562	8,035	69,213	-	7,616	750	7,616	-	9,326	15,188	572	5,458	-	9,138
	제주도	1기	23,958	1,221	8,946	-	891	74	891	-	578	1,662	26	608	-	1,028
		2기	23,679	1,309	10,058	-	950	121	950	-	554	732	25	20	-	687
	도계	1기	1,038,338	51,060	357,809	-	48,110	5,159	48,110	-	59,666	69,014	1,360	27,001	-	40,653
		2기	1,083,152	54,337	403,317	-	53,008	4,309	53,008	-	59,162	64,884	1,492	24,919	-	38,473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1996	합계	171	2,560,731	157,206	1,153,395	-	1,240,130	238,398	14,789	119,163	-	104,446	174,628	3,915	81,638	-	89,075
		271	2,580,113	169,512	926,841	273,197	1,210,563	247,671	14,052	102,483	47,395	83,741	171,722	4,095	68,831	21,020	77,776
	서울특별시	171	740,694	59,348	384,102	-	297,244	52,345	5,793	27,335	-	19,217	43,026	1,448	24,167	-	17,411
		271	773,465	63,289	306,450	89,928	313,798	63,769	5,066	29,607	14,682	14,414	52,477	1,299	24,966	9,702	16,610
	부산광역시	171	215,755	11,530	111,315	-	92,910	20,379	1,270	11,373	-	7,736	12,855	420	7,605	-	9,960
		271	222,279	12,333	87,436	32,127	90,383	22,919	1,171	7,206	5,322	9,220	17,983	454	5,203	1,272	5,924
	대구광역시	171	146,740	6,876	71,029	-	68,835	16,015	571	8,462	-	6,982	14,370	137	8,078	-	6,155
		271	148,257	7,172	60,399	13,619	67,067	19,000	611	8,960	1,846	7,583	11,701	288	5,640	648	5,125
	인천광역시	171	151,828	10,736	80,374	-	60,718	11,467	571	7,194	-	3,702	7,587	161	4,322	-	3,104
		271	100,705	7,650	42,596	10,670	39,789	10,445	546	4,643	1,998	3,258	8,978	192	4,621	856	3,309
	광주광역시	171	75,271	4,382	28,696	-	42,193	7,296	348	3,181	-	3,767	3,228	55	1,406	-	1,767
		271	75,712	4,831	25,006	5,475	40,400	6,080	335	1,834	928	2,983	4,728	146	1,652	294	2,636
	대전광역시	171	89,550	3,795	32,324	-	47,431	10,830	307	5,875	-	4,648	8,744	64	4,428	-	4,252
		271	80,885	4,521	26,009	9,009	41,346	8,294	338	2,492	2,801	2,663	7,196	36	3,375	507	3,278
	시계	171	1,413,838	96,667	707,840	-	609,331	118,332	8,860	63,420	-	46,052	94,940	2,285	50,006	-	42,649
		271	1,401,303	99,796	547,896	160,828	592,783	130,507	8,067	54,742	27,577	40,121	97,933	2,415	45,357	13,279	36,882
	경기도	171	304,815	19,312	151,499	-	134,004	37,081	2,658	20,020	-	14,403	29,021	669	14,741	-	13,611
		271	341,738	25,109	135,640	36,790	144,199	38,280	1,585	20,462	8,236	7,997	24,782	709	8,833	2,896	12,344
	강원도	171	93,623	3,531	31,367	-	58,725	11,345	265	4,267	-	6,813	4,975	25	1,660	-	3,290
		271	91,462	3,884	23,384	10,606	53,588	7,185	371	2,698	1,916	2,200	6,131	102	1,396	621	4,012
	충청북도	171	92,716	4,947	29,548	-	58,221	8,266	278	4,089	-	3,899	4,423	61	1,753	-	2,609
		271	88,992	4,811	24,625	6,188	53,368	4,680	308	1,735	401	2,236	3,167	35	900	221	2,011
	충청남도	171	103,740	4,340	29,964	-	69,436	11,809	298	5,159	-	6,352	4,224	95	1,180	-	2,949
		271	103,664	4,959	26,190	5,470	67,045	6,639	329	2,188	482	3,640	3,944	54	1,336	278	2,276
	전라북도	171	105,863	4,839	34,519	-	66,505	9,822	405	3,656	-	5,761	4,224	60	1,721	-	3,059
		271	106,440	5,155	29,051	7,185	64,049	10,906	457	3,585	991	5,873	6,421	142	2,302	144	3,833
	전라남도	171	103,923	5,134	29,480	-	69,309	10,232	303	4,676	-	5,253	6,459	112	2,359	-	3,988
		271	102,538	5,604	24,964	5,682	66,288	10,498	767	2,544	1,124	6,063	5,905	29	1,824	526	3,726
	경상북도	171	132,111	6,531	45,650	-	79,930	13,037	629	5,260	-	7,148	7,055	164	2,530	-	4,361
		271	135,481	7,211	38,429	12,292	77,549	12,978	590	6,076	1,722	4,590	7,656	33	2,426	1,557	3,640
	경상남도	171	177,188	10,554	83,442	-	83,192	17,403	1,079	8,053	-	8,271	16,382	427	4,919	-	11,036
		271	184,089	11,457	68,446	24,323	79,863	23,814	1,544	7,244	4,528	10,498	14,908	537	4,431	1,382	8,558
	제주도	171	22,914	1,351	10,086	-	11,477	1,071	14	563	-	494	2,309	17	769	-	1,523
		271	25,406	1,526	8,216	3,833	11,831	2,184	34	1,209	418	523	875	39	226	116	494
	도계	171	1,136,893	60,539	445,555	-	630,799	120,066	5,929	55,743	-	58,394	79,688	1,630	31,632	-	46,426
		271	1,178,810	69,716	378,945	112,369	617,780	117,164	5,985	47,741	19,818	43,620	73,789	1,680	23,474	7,741	40,894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7	합계	1기	2,672,987	180,758	959,250	372,542	1,160,437	16,099	110,276	96,100	114,433	189,404	6,009	69,731	28,876	84,788
		2기	2,930,116	192,333	1,004,852	490,034	1,242,897	18,398	126,460	109,462	115,082	151,269	3,803	54,280	32,014	61,172
	서울특별시	1기	762,020	67,031	295,800	106,662	292,527	4,553	26,506	26,254	20,089	53,534	2,413	26,547	9,774	14,800
		2기	802,574	69,639	303,602	123,400	305,933	5,361	37,610	28,319	32,305	36,527	1,109	15,468	7,516	12,434
	부산광역시	1기	232,866	12,997	89,040	39,599	91,230	1,244	9,042	7,997	9,733	18,730	726	6,103	3,083	8,818
		2기	254,474	13,731	92,986	53,480	94,277	1,505	9,734	9,623	5,757	15,002	408	5,555	4,013	5,026
	대구광역시	1기	151,098	7,580	62,191	22,996	58,331	763	6,789	4,543	4,465	10,625	345	3,901	1,671	4,708
		2기	163,928	7,942	63,807	32,494	59,685	693	6,613	6,932	4,753	8,822	178	3,674	1,798	3,172
	인천광역시	1기	110,645	8,249	44,815	15,092	42,489	809	6,596	5,070	7,037	9,759	217	4,475	1,479	3,587
		2기	122,546	8,626	46,335	21,013	46,572	900	6,131	6,973	5,706	7,799	140	3,053	1,635	2,971
	광주광역시	1기	78,914	5,066	25,770	8,433	39,645	539	2,773	1,859	3,318	5,162	159	1,004	281	3,718
		2기	85,394	5,555	27,244	11,027	41,568	750	4,050	2,510	3,120	4,945	92	1,760	843	2,250
	대전광역시	1기	80,258	4,724	25,993	12,338	37,203	519	3,955	3,336	2,380	4,756	150	797	1,113	2,696
		2기	85,276	4,955	27,136	14,942	38,243	553	3,019	3,794	3,029	4,272	82	1,230	808	2,152
	울산광역시	1기	46,329	2,936	17,422	9,932	16,039	247	1,546	2,552	2,985	4,395	94	1,365	600	2,336
		2기	54,557	3,212	18,545	15,214	17,586	349	2,214	3,312	1,362	3,400	133	1,175	1,109	983
	시계	1기	1,462,130	108,583	561,031	215,052	577,464	8,674	57,177	51,611	50,017	106,960	4,104	44,192	18,001	40,663
		2기	1,568,749	113,660	579,655	271,570	603,864	10,111	69,371	61,463	56,032	80,767	2,142	31,915	17,722	28,988
	경기도	1기	404,290	27,508	159,914	60,158	156,710	2,766	23,796	22,076	23,663	33,397	893	12,000	4,171	16,333
		2기	457,504	29,608	170,378	82,056	175,462	3,022	24,793	19,615	25,012	26,108	716	9,619	6,102	9,671
	강원도	1기	89,899	3,958	24,054	13,766	48,121	529	2,811	2,951	3,324	4,910	105	1,194	662	2,949
		2기	100,792	4,515	24,943	18,008	53,326	537	3,656	3,202	3,456	4,281	101	912	902	2,366
	충청북도	1기	81,739	5,067	25,482	9,040	42,150	622	2,707	2,635	5,339	4,991	167	1,485	512	2,827
		2기	92,954	5,394	26,927	13,190	47,443	403	3,373	3,713	3,232	4,950	96	1,616	957	2,281
	충청남도	1기	100,743	5,388	28,182	7,738	59,435	682	5,499	2,165	5,411	5,100	103	1,674	403	2,920
		2기	108,457	5,887	30,061	9,371	63,138	597	3,986	1,905	3,837	4,439	96	1,195	406	2,742
	전라북도	1기	106,211	5,594	29,980	9,674	61,023	480	4,356	2,770	5,158	8,015	178	2,160	994	4,743
		2기	118,804	6,020	32,087	13,059	67,638	835	4,626	2,947	5,082	6,798	111	2,027	984	3,676
	전라남도	1기	106,528	6,136	26,651	7,755	65,986	481	3,072	1,703	4,376	5,587	163	1,046	636	3,742
		2기	124,451	7,017	30,690	10,626	76,118	970	4,500	2,405	5,746	7,029	125	1,956	808	4,140
	경상북도	1기	136,137	7,655	40,670	18,365	69,447	861	4,697	3,673	4,313	6,444	32	1,953	1,157	3,302
		2기	143,696	8,073	42,095	27,487	66,041	733	4,625	5,814	4,566	5,559	163	1,376	1,205	2,815
	경상남도	1기	155,022	9,242	54,657	23,155	67,988	770	5,848	5,474	12,490	12,400	247	3,614	2,080	6,462
		2기	179,321	10,382	59,112	33,557	76,270	1,063	6,565	6,204	7,010	9,032	222	3,068	1,951	3,791
	제주도	1기	30,288	1,687	8,629	7,839	12,133	294	313	1,042	342	1,597	17	413	320	847
		2기	35,388	1,777	8,904	11,110	13,597	127	965	2,194	1,119	2,306	31	596	977	702
	도계	1기	1,210,857	72,175	398,219	157,490	582,973	7,425	53,099	44,489	64,416	82,444	1,905	25,539	10,875	44,125
		2기	1,361,367	78,673	425,197	218,464	639,033	8,287	57,089	47,999	59,060	70,502	1,661	22,365	14,292	32,184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1998	합계	171	2,862,249	189,020	976,553	521,047	1,165,629	274,514	14,623	98,742	90,838	320,716	9,993	125,595	81,716	103,412
		271	2,855,369	197,185	979,285	546,161	1,132,738	306,366	18,016	108,340	103,222	325,554	10,559	126,712	85,111	103,172
	서울특별시	171	785,852	68,393	295,731	129,284	292,444	71,025	5,904	30,664	20,163	84,190	3,318	37,117	20,157	23,588
		271	766,320	70,635	290,736	127,279	277,670	75,242	6,343	30,964	22,436	81,705	3,378	35,526	19,891	22,910
	부산광역시	171	245,066	13,233	89,877	57,326	84,620	22,869	1,192	9,066	8,381	29,724	986	11,925	8,786	8,027
		271	246,809	13,764	86,569	61,796	84,680	26,659	1,447	9,453	10,204	30,046	983	11,615	9,672	7,776
	대구광역시	171	157,971	7,690	62,173	36,410	51,688	15,110	555	5,539	6,478	24,195	629	9,204	6,904	7,458
		271	160,334	7,987	62,519	40,907	48,921	16,081	780	5,982	6,534	24,386	358	8,282	5,556	3,190
	인천광역시	171	116,066	8,354	44,074	21,519	42,119	10,312	257	3,875	4,748	20,719	573	7,184	7,021	5,941
		271	117,697	8,593	44,018	24,284	40,802	14,027	819	5,112	5,251	22,260	498	5,410	3,275	3,077
	광주광역시	171	85,413	4,775	26,131	13,483	41,024	9,110	393	3,010	2,770	10,325	161	3,735	2,321	4,308
		271	73,307	4,755	24,236	11,825	32,491	8,311	483	2,844	2,736	8,639	293	3,306	1,437	3,603
	대전광역시	171	82,746	4,655	25,812	15,106	37,173	8,727	423	2,955	3,604	9,304	270	3,337	2,437	3,260
		271	90,184	5,170	26,950	13,716	44,348	6,616	328	1,909	2,756	13,643	389	4,759	3,140	5,355
	울산광역시	171	53,163	3,062	17,603	16,589	15,909	7,251	401	2,789	2,762	6,028	172	1,971	2,549	1,336
		271	51,775	3,191	17,047	17,333	14,204	6,696	445	2,413	3,105	5,431	170	1,826	2,486	949
	시계	171	1,526,267	110,162	561,401	289,717	564,987	144,404	9,125	57,898	48,906	184,685	6,109	74,473	50,175	53,928
		271	1,506,426	114,095	552,075	297,140	543,116	153,632	10,645	58,657	53,022	169,110	6,069	70,724	45,457	46,860
	경기도	171	442,908	29,750	166,509	84,563	162,086	41,492	1,410	15,620	16,265	43,669	1,694	20,301	10,492	11,182
		271	463,681	31,259	171,365	89,024	172,033	55,604	3,061	21,232	17,114	44,908	1,486	18,185	12,167	13,070
	강원도	171	95,436	4,593	24,199	18,730	47,914	9,283	346	2,545	3,569	8,351	170	2,095	2,276	3,810
		271	97,637	4,779	24,662	20,572	47,624	9,955	372	2,382	4,298	8,922	256	2,782	2,698	3,186
	충청북도	171	88,867	5,400	26,087	12,922	44,458	9,903	531	3,085	3,283	9,110	200	3,334	1,715	3,861
		271	95,171	5,768	26,590	13,613	49,200	10,317	500	3,035	3,803	13,381	438	4,412	2,322	6,209
	충청남도	171	106,415	6,082	30,349	9,231	60,753	10,293	481	3,247	1,690	6,664	198	2,516	897	3,053
		271	109,473	6,299	30,801	9,169	63,204	14,424	703	4,639	3,385	11,673	419	4,012	710	6,532
	전라북도	171	117,689	5,898	31,414	13,625	66,752	11,700	513	3,624	2,795	14,052	207	4,494	2,337	7,014
		271	105,135	6,258	30,996	13,393	54,488	11,787	578	3,331	3,436	14,970	340	4,287	1,982	5,361
	전라남도	171	120,365	7,370	29,534	10,934	72,527	11,426	606	3,402	2,240	13,917	247	4,220	1,873	7,577
		271	107,172	7,930	29,248	10,129	59,865	11,215	634	3,621	1,881	12,535	314	4,503	1,754	5,964
	경상북도	171	142,598	8,152	41,530	30,396	62,520	13,407	683	2,522	3,030	11,972	275	3,712	3,367	4,618
		271	147,302	8,612	43,994	35,583	59,113	15,625	631	4,834	6,363	18,724	426	6,104	5,943	6,251
	경상남도	171	176,700	9,838	56,975	38,495	71,392	18,491	836	6,000	6,641	22,983	638	8,728	6,275	7,242
		271	189,089	10,352	61,304	45,075	72,358	19,923	784	5,855	7,673	27,666	612	9,557	9,054	8,443
	제주도	171	35,004	1,775	8,555	12,434	12,240	4,115	92	799	2,419	805	255	1,722	2,309	1,127
		271	34,283	1,833	8,250	12,463	11,737	3,884	108	754	2,247	6,665	199	2,146	3,024	1,296
	도계	171	1,325,982	78,858	415,152	231,330	600,642	130,110	5,498	40,844	41,932	136,031	3,884	51,122	31,541	49,484
		271	1,348,943	83,090	427,210	249,021	589,622	152,734	7,371	49,683	50,200	156,444	4,490	55,988	39,654	56,312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9	합계	1기	2,905,482	211,709	1,009,578	587,026	586,800	1,097,169	485,327	28,070	166,047	137,778	153,432	12,798	113,777	95,383	114,547
		2기	2,998,956	232,474	1,059,109	586,800	586,800	1,120,573	505,153	31,957	179,833	144,900	148,463	10,549	104,948	92,595	91,862
	서울특별시	1기	787,090	75,924	303,520	138,728	288,918	119,309	10,156	49,989	31,931	27,223	27,223	4,351	33,773	21,258	24,649
		2기	817,029	84,135	315,462	142,980	274,452	123,665	12,486	50,814	30,621	29,744	29,744	3,591	30,732	21,543	20,049
	부산광역시	1기	250,972	14,390	88,661	66,532	81,389	39,124	1,794	13,515	14,800	9,015	9,015	879	9,631	10,341	6,545
		2기	252,500	15,234	92,146	68,146	76,974	38,089	1,942	14,127	14,581	7,439	7,439	780	8,628	9,929	5,047
	대구광역시	1기	159,921	8,329	63,176	44,004	44,412	25,769	945	9,183	11,331	4,310	4,310	473	6,745	7,702	4,289
		2기	164,531	9,108	66,005	44,975	44,443	28,029	1,239	10,756	11,490	4,544	4,544	371	6,069	7,248	2,769
	인천광역시	1기	121,257	9,314	46,032	26,825	39,086	23,625	1,444	8,927	7,604	5,660	5,660	666	6,007	4,829	4,573
		2기	150,975	12,526	59,977	30,082	48,390	27,539	1,449	10,445	8,114	7,531	7,531	495	5,312	4,799	3,617
	광주광역시	1기	80,304	5,842	24,149	10,568	39,745	13,746	766	4,550	4,509	3,921	3,921	405	3,145	2,860	3,832
		2기	80,587	6,292	26,848	15,705	31,742	16,649	898	5,688	4,208	5,875	5,875	319	3,223	3,033	3,150
	대전광역시	1기	86,684	5,585	27,780	14,440	38,879	15,946	743	4,931	4,329	5,943	5,943	309	3,469	2,859	5,386
		2기	95,726	6,101	29,218	13,245	47,162	17,473	851	5,155	4,114	7,353	7,353	209	3,150	2,656	4,582
	울산광역시	1기	53,651	3,445	17,988	18,922	13,346	9,723	462	3,088	1,902	1,271	1,271	178	2,050	3,239	1,371
		2기	54,590	3,730	18,863	18,474	13,523	10,102	492	3,245	5,269	1,066	1,066	178	2,021	3,312	865
	시계	1기	1,539,879	122,829	571,256	320,019	525,775	247,242	16,310	94,193	76,406	57,333	57,333	7,261	64,820	53,088	50,645
		2기	1,615,938	137,126	608,519	333,607	536,686	261,546	19,357	100,230	78,397	63,582	63,582	6,033	59,135	52,520	40,079
	경기도	1기	467,244	34,119	177,066	90,903	165,156	84,374	4,749	30,884	19,306	29,435	29,435	2,046	19,063	15,280	18,217
		2기	487,554	35,951	184,641	88,900	178,062	96,275	5,349	36,358	23,048	31,520	31,520	1,707	18,469	14,573	16,115
	강원도	1기	97,315	5,165	24,975	21,472	45,703	16,876	694	4,020	4,248	7,914	7,914	316	2,935	3,488	5,090
		2기	99,761	5,572	25,604	20,776	47,809	16,300	747	3,847	5,957	5,749	5,749	257	2,955	3,591	4,184
	충청북도	1기	98,485	6,160	27,544	14,537	50,244	16,593	853	4,441	3,166	8,133	8,133	404	3,196	2,304	5,460
		2기	95,713	6,680	27,155	10,044	51,834	15,457	854	4,614	4,107	5,882	5,882	378	2,971	1,951	4,722
	충청남도	1기	113,837	6,528	31,445	9,666	66,198	17,828	876	5,244	2,111	9,597	9,597	357	3,970	1,557	8,056
		2기	109,548	7,179	31,738	8,150	62,461	17,629	920	5,192	2,114	9,403	9,403	425	3,425	1,188	5,881
	전라북도	1기	107,849	6,682	29,477	14,031	57,659	20,097	779	5,259	3,489	10,570	10,570	402	3,865	2,467	7,035
		2기	107,286	7,069	32,380	12,006	55,831	20,323	907	5,922	3,689	9,805	9,805	334	3,568	2,450	5,564
	전라남도	1기	100,898	7,804	32,241	15,854	44,989	18,138	998	4,426	2,424	10,290	10,290	362	3,369	1,643	7,375
		2기	103,466	8,601	29,598	10,247	55,020	17,347	998	5,122	2,517	8,750	8,750	381	3,188	1,583	5,791
	경상북도	1기	153,040	9,334	45,494	39,002	59,210	27,307	1,219	7,245	10,046	8,797	8,797	416	5,250	6,406	5,355
		2기	150,773	10,099	47,134	40,346	53,194	24,650	1,219	7,602	10,787	5,042	5,042	488	4,708	6,143	3,972
	경상남도	1기	192,127	11,159	61,694	48,117	71,157	30,772	1,415	9,017	10,570	9,770	9,770	533	6,527	6,877	6,488
		2기	192,894	12,112	63,540	48,893	68,349	29,469	1,410	9,660	10,883	7,516	7,516	569	5,774	6,373	4,934
	제주도	1기	34,808	1,929	8,366	13,425	11,068	6,100	177	1,318	3,012	1,593	1,593	101	782	2,293	846
		2기	36,023	2,085	8,780	13,831	11,327	6,157	236	1,306	3,401	1,214	1,214	77	755	2,223	620
	도계	1기	1,365,603	88,880	438,322	267,007	571,394	238,085	11,760	71,854	58,372	96,089	96,089	4,937	48,957	42,295	63,902
		2기	1,383,018	95,348	450,590	253,193	583,887	243,607	12,600	79,623	66,503	84,881	84,881	4,516	45,813	40,075	51,783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2000	합계	171	3,231,274	255,840	1,136,159	614,219	1,225,056	-	39,042	259,147	222,715	10,667	395,388	14,114	145,926	145,866	89,482
		271	3,390,772	278,657	1,442,987	1,669,128	-	33,978	211,703	238,172	-	-	319,699	13,679	148,507	157,513	-
	서울특별시	171	849,665	95,100	329,548	142,695	282,322	17,450	71,505	42,224	1,981	97,552	5,108	42,983	30,484	18,977	
		271	865,376	104,309	417,632	363,435	-	13,448	57,684	41,341	-	78,426	5,042	42,781	30,603	-	
	부산광역시	171	266,292	16,193	98,168	71,432	79,499	2,110	22,306	15,288	511	30,985	839	12,041	13,502	4,503	
		271	270,132	17,301	129,630	123,201	-	1,963	18,977	16,571	-	25,406	932	14,003	10,571	-	
	대구광역시	171	176,418	9,772	70,647	49,271	46,728	1,221	16,371	11,245	277	22,287	466	8,848	10,307	2,666	
		271	192,899	10,478	93,392	89,029	-	1,143	12,599	15,681	-	17,607	572	8,889	8,146	-	
	인천광역시	171	164,468	13,425	65,237	33,027	52,779	1,577	15,088	10,938	453	19,144	676	7,602	6,972	3,894	
		271	171,794	14,352	82,540	74,902	-	1,440	12,758	12,569	-	18,699	909	9,413	8,377	-	
	광주광역시	171	85,845	6,761	28,466	15,807	34,811	998	8,491	7,701	537	13,354	432	4,813	4,755	3,354	
		271	91,245	7,643	39,128	44,474	-	890	6,814	6,960	-	9,241	293	4,816	4,132	-	
	대전광역시	171	106,223	6,803	32,533	12,763	53,124	1,000	8,288	7,957	601	15,620	451	5,053	5,111	5,005	
		271	117,416	7,562	44,145	65,709	-	16,357	973	6,639	8,745	11,167	483	4,706	5,978	-	
	울산광역시	171	59,054	4,031	20,310	21,530	13,183	505	5,795	4,089	61	8,101	266	2,788	4,257	790	
		271	60,061	4,314	27,325	28,422	-	494	4,419	5,756	-	6,031	296	2,897	2,838	-	
	시계	171	1,705,965	152,085	644,909	346,525	562,446	24,861	147,844	99,442	4,421	207,043	8,338	84,128	75,388	39,189	
		271	1,788,923	165,959	833,792	789,172	-	20,351	119,890	107,623	-	166,577	8,427	87,505	70,645	-	
	경기도	171	537,277	39,621	203,906	91,740	202,010	101,336	6,375	49,754	43,018	2,189	63,993	2,427	24,666	20,286	16,614
		271	558,724	43,737	253,791	261,196	-	91,516	5,891	41,937	43,688	-	49,865	1,722	22,949	25,194	-
	강원도	171	106,319	5,867	27,042	20,651	51,759	16,895	773	5,948	9,715	459	13,764	372	3,685	5,579	4,128
		271	107,194	6,405	33,827	66,962	-	16,530	779	4,774	10,977	-	13,059	507	3,995	8,557	-
	충청북도	171	104,438	7,410	29,565	10,199	57,264	16,590	899	6,422	8,810	459	14,394	441	4,296	4,817	4,840
		271	117,793	8,121	37,511	72,161	-	15,328	908	5,164	9,256	-	9,736	369	3,543	5,824	-
	충청남도	171	112,979	7,729	33,482	8,120	63,648	17,928	1,049	6,676	9,694	509	15,968	432	4,396	6,266	4,874
		271	131,529	8,731	41,030	81,768	-	16,734	967	5,456	10,311	-	12,037	454	3,842	7,741	-
	전라북도	171	125,584	7,659	35,954	12,335	69,636	19,985	939	7,567	10,634	845	16,649	422	4,692	5,665	5,870
		271	126,453	8,227	41,054	77,162	-	18,157	1,004	6,554	10,599	-	13,412	436	4,591	8,385	-
	전라남도	171	128,115	9,288	32,652	11,622	74,553	18,967	1,032	6,716	10,440	779	14,425	437	4,300	4,144	5,544
		271	128,047	9,465	39,074	79,508	-	16,170	990	5,538	9,642	-	11,843	444	3,916	7,483	-
	경상북도	171	175,372	10,929	52,804	50,972	60,667	26,217	1,253	12,022	12,684	258	20,434	438	6,555	10,071	3,370
		271	184,917	11,628	68,166	105,123	-	26,691	1,323	9,040	16,328	-	18,847	588	8,237	10,022	-
	경상남도	171	199,423	13,017	66,616	49,307	70,483	30,588	1,599	13,769	14,656	564	23,536	713	7,970	10,565	4,288
		271	209,190	13,953	81,660	113,577	-	28,963	1,458	11,302	16,203	-	20,709	724	8,432	11,553	-
	제주도	171	36,802	2,235	9,229	12,748	12,590	6,497	262	2,429	3,622	184	5,182	94	1,238	3,085	765
		271	38,002	2,431	13,072	22,499	-	5,900	307	2,048	3,545	-	3,614	8	1,497	2,109	-
	도계	171	1,525,309	103,755	491,250	267,694	662,610	255,003	14,181	111,303	123,273	6,246	188,945	5,776	61,798	70,478	50,293
		271	1,601,849	112,698	609,195	879,956	-	235,989	13,627	91,813	130,549	-	153,122	5,252	61,002	86,868	-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1	합계	1기	3,574,467	297,790	1,469,009	1,807,688	-	513,890	36,337	231,032	246,521	-	376,324	13,939	164,635	197,750	-
		2기	3,709,035	321,204	1,573,217	1,814,614	-	558,599	36,508	245,873	276,218	-	333,256	11,209	143,892	178,155	-
	서울특별시	1기	909,289	109,951	418,050	381,288	-	118,297	13,590	61,752	42,955	-	91,411	5,324	48,254	37,833	-
		2기	946,001	117,208	444,139	384,654	-	132,908	13,876	68,139	50,893	-	80,222	3,958	41,185	35,079	-
	부산광역시	1기	300,159	18,503	135,100	146,556	-	38,068	2,111	19,315	16,642	-	29,240	1,017	14,925	13,298	-
		2기	306,198	20,425	137,405	148,368	-	38,642	2,174	17,626	18,842	-	23,464	661	11,200	11,603	-
	대구광역시	1기	209,895	11,212	95,834	102,849	-	26,758	1,118	12,626	13,014	-	19,838	556	9,310	9,972	-
		2기	197,433	11,855	94,213	91,365	-	28,490	1,223	13,397	13,870	-	17,132	436	7,582	9,114	-
	인천광역시	1기	178,584	15,320	82,802	80,462	-	28,434	1,658	13,613	13,163	-	20,176	641	9,390	10,145	-
		2기	194,276	16,649	91,020	86,607	-	30,286	1,496	14,124	14,666	-	19,454	591	8,813	10,050	-
	광주광역시	1기	93,129	7,792	38,765	46,572	-	16,232	913	7,121	8,198	-	11,612	408	5,151	6,053	-
		2기	104,137	8,579	43,593	51,965	-	18,147	1,028	7,992	9,127	-	11,874	368	5,036	6,470	-
	대전광역시	1기	118,312	8,308	45,312	64,692	-	17,451	999	7,340	9,112	-	12,668	336	5,160	7,172	-
		2기	124,523	8,768	47,175	68,580	-	19,096	1,076	7,447	10,573	-	12,115	366	4,904	6,845	-
	울산광역시	1기	72,997	4,765	29,399	38,833	-	11,449	539	5,017	5,893	-	7,959	231	3,464	4,264	-
		2기	75,627	5,009	30,823	39,795	-	11,995	618	4,824	6,553	-	7,434	199	3,272	3,963	-
	시계	1기	1,882,365	175,851	845,262	861,252	-	256,689	20,928	126,794	108,977	-	192,904	8,513	95,654	88,737	-
		2기	1,948,195	188,493	888,368	871,334	-	279,564	21,491	133,549	124,524	-	171,695	6,579	81,992	83,124	-
	경기도	1기	591,655	47,077	262,803	281,775	-	103,740	6,469	49,745	47,526	-	68,259	2,227	30,321	35,711	-
		2기	632,657	52,247	302,360	278,050	-	120,036	6,614	60,339	53,083	-	60,612	1,750	27,263	31,599	-
	강원도	1기	110,703	6,781	33,260	70,662	-	17,416	939	5,405	11,072	-	12,979	318	3,761	8,900	-
		2기	116,243	7,496	36,260	72,487	-	18,257	858	5,003	12,396	-	12,158	349	3,663	8,146	-
	충청북도	1기	122,977	8,720	38,833	75,424	-	16,353	1,021	5,757	9,575	-	13,088	385	4,102	8,601	-
		2기	120,309	9,395	40,179	70,735	-	16,404	923	5,321	10,160	-	10,794	363	3,652	6,779	-
	충청남도	1기	139,855	9,603	42,743	87,509	-	18,470	1,226	6,344	10,900	-	14,068	442	4,645	8,981	-
		2기	136,461	10,184	43,938	84,339	-	18,873	1,157	5,783	11,933	-	10,661	328	3,180	7,153	-
	전라북도	1기	130,298	8,739	42,559	79,000	-	19,193	1,174	7,309	10,710	-	14,485	429	4,904	9,102	-
		2기	137,151	9,820	46,678	80,653	-	20,109	1,065	7,168	11,856	-	11,705	267	3,864	7,574	-
	전라남도	1기	130,011	10,202	39,072	80,737	-	16,859	1,195	5,758	9,906	-	12,707	415	4,184	8,108	-
		2기	136,387	11,019	43,735	83,633	-	17,623	1,135	5,549	10,939	-	11,593	391	3,907	7,295	-
	경상북도	1기	196,897	12,503	66,983	117,411	-	26,340	1,386	9,663	15,291	-	19,773	523	6,894	12,356	-
		2기	201,112	13,736	68,971	118,405	-	27,558	1,367	8,869	17,322	-	18,067	511	6,687	10,869	-
	경상남도	1기	223,419	15,492	82,965	124,962	-	32,309	1,671	12,041	18,597	-	23,144	592	8,800	13,752	-
		2기	231,110	15,779	88,189	127,142	-	33,327	1,615	12,309	19,403	-	21,071	584	8,234	12,253	-
	제주도	1기	46,287	2,822	14,529	28,936	-	6,521	328	2,226	3,967	-	4,967	95	1,370	3,502	-
		2기	45,410	3,035	14,539	27,836	-	6,848	263	1,983	4,602	-	4,900	87	1,450	3,363	-
	도계	1기	1,682,102	121,939	623,747	946,416	-	257,201	15,409	104,248	137,544	-	183,420	5,426	68,981	109,013	-
		2기	1,760,840	132,711	684,849	943,280	-	279,035	15,017	112,324	151,694	-	161,561	4,630	61,900	95,031	-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범인	일반	간이	특례					
2002	합계	171	3,833,195	329,233	1,665,208	1,838,754	-	608,909	38,624	300,458	269,827	-	420,148	16,934	184,433	218,781	-
		271	3,963,454	345,292	1,774,268	1,843,894	-	630,461	33,839	281,010	315,612	-	380,113	15,018	168,935	196,160	-
	서울특별시	171	975,704	120,291	468,625	386,788	-	149,532	14,880	84,444	50,208	-	100,859	6,264	51,491	43,104	-
		271	1,013,969	125,026	500,799	388,144	-	150,098	12,809	81,188	56,091	-	88,768	5,853	46,125	36,790	-
	부산광역시	171	316,219	20,947	141,394	153,878	-	41,298	2,429	20,608	18,261	-	31,314	1,211	14,785	15,318	-
		271	317,842	21,719	146,180	149,943	-	38,308	2,011	19,307	16,990	-	27,347	879	13,650	12,818	-
	대구광역시	171	198,564	11,984	97,140	89,440	-	29,585	1,306	13,755	14,524	-	22,347	661	10,268	11,418	-
		271	196,653	11,371	97,625	87,657	-	28,240	1,158	12,860	14,222	-	19,956	533	9,053	10,370	-
	인천광역시	171	207,779	17,022	98,358	92,399	-	33,858	1,769	17,675	14,414	-	22,559	760	10,342	11,457	-
		271	211,508	17,824	106,114	87,570	-	36,203	1,572	17,331	17,300	-	23,618	904	11,434	11,280	-
	광주광역시	171	100,969	8,944	42,361	49,654	-	17,978	1,057	8,238	8,683	-	13,902	473	6,512	6,917	-
		271	109,719	9,396	44,919	55,404	-	19,964	1,002	7,676	11,286	-	14,620	679	7,150	6,791	-
	대전광역시	171	125,084	8,973	48,950	67,161	-	19,683	1,044	8,630	10,009	-	15,176	498	6,086	8,592	-
		271	135,777	9,279	50,679	75,819	-	23,505	976	7,486	15,043	-	15,846	702	6,682	8,462	-
	울산광역시	171	76,689	5,069	30,347	41,273	-	11,645	485	5,319	5,841	-	9,441	276	4,389	4,776	-
		271	78,412	5,282	31,309	41,821	-	13,544	477	4,974	8,093	-	9,975	319	4,352	5,304	-
	시계	171	2,000,998	193,230	927,175	880,593	-	303,579	22,970	158,669	121,940	-	215,598	10,143	103,873	101,582	-
		271	2,063,880	199,897	977,625	886,358	-	309,852	20,005	150,822	139,025	-	200,130	9,869	98,446	91,815	-
	경기도	171	683,463	54,905	339,831	288,727	-	139,785	7,159	78,996	53,630	-	79,373	2,674	36,766	39,933	-
		271	728,964	58,745	378,238	291,981	-	143,413	6,396	73,621	63,396	-	66,506	2,061	32,099	32,346	-
	강원도	171	122,897	7,709	38,235	76,953	-	18,450	893	6,004	11,553	-	14,246	416	4,311	9,519	-
		271	120,562	8,419	40,043	72,100	-	18,870	833	5,437	12,600	-	15,884	492	4,819	10,573	-
	충청북도	171	125,088	9,073	42,241	73,774	-	18,091	961	7,046	10,084	-	14,218	535	4,802	8,881	-
		271	130,471	9,646	43,955	76,870	-	19,505	916	6,172	12,417	-	11,091	328	3,633	7,130	-
	충청남도	171	131,411	10,290	44,862	76,259	-	20,019	1,127	7,369	11,523	-	14,833	551	4,966	9,316	-
		271	139,648	10,724	47,844	81,080	-	23,259	997	6,413	15,849	-	12,461	327	3,883	8,251	-
	전라북도	171	140,083	9,900	48,199	81,994	-	20,453	1,053	7,849	11,551	-	15,795	491	5,803	9,501	-
		271	142,767	10,257	49,981	82,529	-	23,671	851	6,462	16,338	-	12,496	359	4,505	7,632	-
	전라남도	171	144,101	11,068	46,721	86,312	-	17,932	931	6,608	10,393	-	15,044	543	4,816	9,685	-
		271	148,731	11,898	48,776	88,057	-	21,094	872	5,870	14,352	-	14,184	271	4,167	9,746	-
	경상북도	171	193,501	13,724	69,936	109,841	-	28,537	1,424	10,979	16,134	-	20,959	635	7,603	12,721	-
		271	192,193	15,550	74,531	102,112	-	29,185	1,154	9,963	18,088	-	19,702	495	7,097	12,110	-
	경상남도	171	243,124	16,309	92,718	134,097	-	34,318	1,798	14,192	18,328	-	24,748	796	9,616	14,336	-
		271	246,813	17,109	97,107	132,597	-	33,596	1,541	14,022	18,033	-	20,636	658	7,654	12,324	-
	제주도	171	48,519	3,025	15,290	30,204	-	7,745	308	2,746	4,691	-	5,334	150	1,877	3,307	-
		271	49,425	3,047	16,168	30,210	-	8,016	274	2,228	5,514	-	7,023	158	2,632	4,233	-
	도계	171	1,832,197	136,003	738,033	958,161	-	305,330	15,654	141,789	147,887	-	204,350	6,791	80,560	117,199	-
		271	1,899,574	145,395	796,643	957,536	-	320,609	13,894	130,188	176,587	-	179,983	5,149	70,489	104,345	-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계속)

(단위:명)

연도	시도	과세기간	총사업자			신규자			폐업자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2003	합계	1기	3,949,410	352,224	1,801,107	1,796,079	-	542,494	33,367	259,436	249,691	-	436,589	19,587	205,396	211,606	-
		2기	3,994,665	359,154	1,861,707	1,773,804	-	464,285	27,820	239,686	196,779	-	420,444	21,708	204,094	194,642	-
	서울특별시	1기	1,021,808	126,310	505,784	389,714	-	126,352	12,988	64,717	48,667	-	94,856	8,367	52,027	34,462	-
		2기	1,036,044	128,296	521,266	386,482	-	104,895	11,281	58,356	35,258	-	90,579	8,784	54,107	27,688	-
	부산광역시	1기	315,246	22,587	144,281	148,378	-	35,235	1,896	19,683	13,956	-	33,517	1,238	17,001	15,278	-
		2기	309,264	21,114	149,696	138,454	-	30,894	1,587	16,653	12,654	-	31,879	1,570	16,850	13,459	-
	대구광역시	1기	196,139	11,458	96,125	88,556	-	28,369	1,107	13,254	14,008	-	24,357	759	11,897	11,701	-
		2기	197,831	12,015	97,558	88,258	-	23,049	841	11,567	10,641	-	24,508	879	11,781	11,848	-
	인천광역시	1기	228,878	20,110	117,610	91,158	-	30,900	1,309	15,200	14,391	-	23,666	767	12,038	10,861	-
		2기	231,302	20,588	126,589	84,125	-	24,823	1,111	13,245	10,467	-	24,115	1,017	11,467	11,631	-
	광주광역시	1기	100,420	9,123	43,598	47,699	-	16,678	984	7,371	8,323	-	14,735	465	7,006	7,264	-
		2기	103,628	9,405	44,099	50,124	-	14,187	745	6,855	6,587	-	13,084	696	6,272	6,116	-
	대전광역시	1기	130,792	13,314	50,255	67,223	-	18,065	838	8,082	9,145	-	16,114	578	6,977	8,559	-
		2기	136,192	9,699	53,269	73,224	-	15,783	644	7,082	8,057	-	15,984	629	6,792	8,563	-
	울산광역시	1기	78,396	5,700	34,222	38,474	-	12,172	490	5,317	6,365	-	10,169	286	4,202	5,681	-
		2기	74,254	5,897	33,691	34,666	-	10,177	349	4,632	5,196	-	9,802	271	4,240	5,291	-
	시계	1기	2,071,679	208,602	991,875	871,202	-	267,771	19,592	133,324	114,855	-	217,414	12,460	111,148	93,806	-
		2기	2,088,515	207,014	1,026,168	855,333	-	223,808	16,558	118,390	88,860	-	209,951	13,846	111,509	84,596	-
	경기도	1기	711,953	59,458	378,954	273,541	-	116,086	6,232	63,587	46,267	-	82,519	3,236	43,332	35,951	-
		2기	728,623	60,458	389,569	278,596	-	109,100	5,499	66,005	37,596	-	86,694	3,427	44,522	38,745	-
	강원도	1기	127,866	8,569	43,598	75,699	-	17,068	705	6,132	10,231	-	16,417	305	4,975	11,137	-
		2기	139,006	10,247	49,170	79,569	-	15,573	587	5,263	9,723	-	14,060	432	4,652	8,976	-
	충청북도	1기	132,748	13,448	44,148	75,152	-	16,101	878	6,529	8,694	-	15,470	447	5,912	9,111	-
		2기	125,736	9,621	44,559	71,556	-	13,698	614	6,222	6,862	-	12,633	485	5,309	6,839	-
	충청남도	1기	131,678	3,259	47,853	80,566	-	19,833	915	8,236	10,682	-	17,500	519	5,813	11,168	-
		2기	141,713	11,311	50,795	79,607	-	17,761	771	6,931	10,059	-	15,820	555	5,630	9,635	-
	전라북도	1기	138,464	10,159	49,771	78,534	-	19,320	1,055	7,349	10,916	-	17,181	547	6,908	9,726	-
		2기	132,419	10,698	50,698	71,023	-	16,239	668	6,379	9,192	-	15,196	580	6,030	8,586	-
	전라남도	1기	143,585	12,569	48,363	82,633	-	18,502	929	6,427	11,146	-	15,338	567	5,306	9,465	-
		2기	136,628	11,969	50,436	76,223	-	14,006	756	5,452	7,798	-	14,394	723	5,256	8,415	-
	경상북도	1기	199,975	15,914	77,962	106,099	-	24,133	1,090	10,522	12,521	-	22,591	534	8,767	13,290	-
		2기	208,895	15,856	80,179	112,860	-	21,516	984	9,397	11,135	-	21,782	679	8,743	12,360	-
	경상남도	1기	245,538	17,025	103,025	125,488	-	35,887	1,717	14,858	19,312	-	25,108	730	10,996	13,382	-
		2기	239,507	18,569	100,369	120,569	-	26,096	1,172	13,336	11,588	-	24,587	832	10,469	13,266	-
	제주도	1기	45,924	3,221	15,558	27,145	-	7,793	254	2,472	5,067	-	7,051	242	2,239	4,570	-
		2기	51,623	3,411	19,764	28,448	-	6,488	211	2,311	3,966	-	5,327	149	1,954	3,224	-
	도계	1기	1,877,731	143,622	809,232	924,877	-	274,723	13,775	126,112	134,836	-	219,175	7,127	94,248	117,800	-
		2기	1,906,150	152,140	835,539	918,471	-	240,477	11,262	121,296	107,919	-	210,493	7,862	92,585	110,046	-

자료: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77	549	-	549	353	63	219	71	490	196
1978	3,410	196	3,214	3,390	707	1,987	696	625	20
1979	1,169	20	1,149	1,153	310	554	289	299	16
1980	947	16	931	885	303	412	170	183	62
1981	1,284	62	1,222	1,125	484	480	161	367	159
1982	1,555	159	1,396	1,440	589	643	208	721	115
1983	1,450	115	1,335	1,351	503	669	179	1,152	99
1984	1,145	99	1,046	1,040	437	491	112	521	105
1985	1,004	105	899	933	428	450	55	891	71
1986	924	71	853	864	347	466	51	314	60
1987	516	60	456	511	210	275	26	398	5
1988	280	5	275	268	89	161	18	374	12
1989	270	12	258	264	80	157	27	172	6
1990	292	6	286	275	76	172	27	197	17
1991	282	17	265	272	96	155	21	155	10
1992	276	10	266	265	84	163	18	332	11
1993	515	11	504	487	127	314	46	1,089	28
1994	362	28	334	347	27	285	35	1,128	15
1995	640	15	625	624	105	426	93	1,993	16
1996	427	16	411	413	59	249	105	1,452	14
1997	519	14	505	485	44	257	184	5,348	34
1998	823	34	789	751	38	394	319	5,094	72
1999	988	72	916	882	72	515	295	8,127	106
2000	1,044	106	938	939	57	516	366	18,516	105
2001	2,327	105	2,222	2,124	101	1,245	778	14,172	203
2002	2,882	203	2,679	2,610	239	1,556	815	19,604	272
2003	3,096	272	2,824	2,808	275	1,598	935	18,500	28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77	117	-	117	56	4	38	14	94	61
1978	1,976	61	1,915	1,911	93	1,449	369	1,213	65
1979	706	97	609	642	19	444	179	473	64
1980	546	64	482	470	56	293	121	648	76
1981	734	76	658	580	62	369	149	1,041	154
1982	1,175	154	1,021	999	109	647	243	5,721	176
1983	1,204	176	1,028	1,122	101	859	162	2,334	82
1984	819	82	737	737	81	584	72	1,280	82
1985	699	82	617	641	67	535	39	1,213	58
1986	850	58	792	748	86	624	38	378	102
1987	728	102	626	674	45	587	42	335	54
1988	499	54	445	449	31	389	29	480	50
1989	542	50	492	478	38	412	28	889	64
1990	529	64	465	470	32	410	28	301	59
1991	744	59	685	654	28	595	31	865	90
1992	714	90	624	648	37	583	28	770	66
1993	955	66	889	854	64	730	60	1,809	101
1994	1,042	101	941	940	61	751	128	5,019	102
1995	1,099	102	997	1,004	64	854	86	2,408	95
1996	837	95	742	763	33	652	78	5,804	74
1997	740	74	666	668	50	493	125	8,300	72
1998	946	72	874	799	55	580	164	17,713	147
1999	1,121	147	974	929	33	624	272	35,298	192
2000	512	192	320	465	25	213	227	51,638	47
2001	534	47	487	419	35	273	111	5,389	115
2002	624	115	509	447	22	295	130	7,080	177
2003	583	177	406	479	47	303	129	146	1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부가가치세 소송사건

(단위: 건)

연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 종결건수							계 류 건 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 하	각 하	국 승	국가일부 패소	국 패	기 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8	14	-	14	-	-	-	-	-	-	-	14	-	-	-
1979	72	14	58	33	-	-	10	-	13	10	39	-	-	-
1980	80	40	40	35	-	-	13	-	12	10	45	-	-	-
1981	116	45	71	45	-	-	19	-	13	13	71	-	-	-
1982	146	71	75	37	-	-	19	-	14	4	109	-	-	-
1983	272	109	163	83	-	-	30	-	35	18	189	-	-	-
1984	374	189	185	135	-	-	56	-	48	31	239	-	-	-
1985	468	239	229	218	-	-	55	-	135	28	250	-	-	-
1986	425	250	175	132	-	-	41	-	66	25	293	-	-	-
1987	574	293	281	251	-	-	89	-	122	40	323	-	192	131
1988	466	323	143	198	-	-	31	-	128	39	268	-	131	137
1989	397	268	129	188	-	-	86	-	102	-	209	-	139	70
1990	330	209	121	117	-	-	80	-	37	-	213	-	159	54
1991	350	213	137	117	-	-	82	-	35	-	233	-	177	56
1992	397	201	196	150	-	-	104	-	46	-	247	-	178	69
1993	429	248	181	212	-	-	142	-	70	-	217	-	169	48
1994	429	217	212	162	-	-	124	-	38	-	267	-	215	52
1995	480	267	213	194	-	-	165	-	29	-	286	-	216	70
1996	526	286	240	314	-	-	249	-	65	-	212	-	172	40
1997	368	212	156	171	-	-	136	-	35	-	197	-	165	32
1998	301	197	104	146	-	-	128	-	18	-	155	80	45	30
1999	337	156	181	116	-	-	104	-	12	-	221	147	43	31
2000	400	221	179	121	-	-	116	-	5	-	279	176	63	40
2001	517	279	238	187	59	4	103	6	15	-	330	203	92	35
2002	614	330	284	237	65	6	145	6	15	-	377	240	88	49
2003	655	377	278	243	78	6	135	6	18	-	412	240	134	38

주: 2002년 『국세통계연보』부터 취하, 각하, 국가일부패소란 추가, 기타란 삭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개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고령친화산업’ 육성 빈틈 없이 추진해야

이미 2000년 65살 노령인구가 7%가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요양산업 등 8대 고령친화산업과 역모기지제 등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08년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완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1세대가 등장하는 의미 있는 해다. 노령인구 비율도 10%가 넘어선다. 과거처럼 자식에게 부양받는 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퇴직 전 소득의 4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강력한 소비 주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령세대가 민간소비의 20~30%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본격적인 연금시대 개막을 눈앞에 둔 올해에야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들도 적지 않다. 우선은 이런 산업 육성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유기적 통합성을 잃기 쉽다. 관련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나 관료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도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따로 놀게 돼 효율성 저하와 자원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과도한 민자 의존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고령자에게는 ‘낮은 비용, 양질의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예산 배분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 제정될 특별법은 고령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개발제한 행위 완화로 방향이 잡힐 것이다. 개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특정 목적을

벗어난 용도 전환 등을 통해 불법·편법적인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년 1월 24일자 한겨레사설

세금보다 더 많은 준조세

중소기업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준조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가 그동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도 부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가 40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준조세는 평균 1억 2,494만여원으로 세금보다 오히려 25.3%나 많았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준

조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기술개발 여력을 갉아먹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성 준조세 부담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복지사회 실현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과제인 반면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은 아직 허술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복지성 준조세도 기업들의 임시직·일용직 선호경향을 촉발해 고용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나마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행정수수료와 과태료·회비·관공서 및 관변단체 등에 내는 행사 후원금과 기부금 등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 여지가 큰 것이다. 정부가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정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79.2%가 최근 3년간 준조세성 경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체감도는 영 판관이다. 준조세가 여전히 많은 것은 세금과 달리 행정관청이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통제를 받지않아 거둬들이기도 사용하기도 쉽다는 데 있다. 준조세가 줄어 들지 않는 이유로 60%가 넘는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폐지 반대 및 정책의지 빈약을 꼽았다는 점은 새겨볼 만하다. 준조세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및 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2005년 1월 12일자 서울경제신문 사설

단독주택시장 치명타 안 되게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이 어제 첫 공시됐다. 건교부가 앞으로 과세될 주택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과포로 적용할 기준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나 고급빌라 등에 대한 기준가격만 있었을 뿐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의 가격은 처음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번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선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시가의 30~40%에 머무르던 집값 현실화율을 크게 올린 만큼 올해부터 단독주택보유자의 재산세나 거래세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건교부 당국 설명으로는 총재산세가 대략 10% 오르고 거래 관련세(취득·등록세)도 5~10% 오르리라 한다. 특히 시가 10억원이 넘는 6000여 채의 종부세 대상자 재산세는 50%나 급증할 것이다.

이번 전국 13만호를 대상으로 한 표준주택가격 설정은 바뀐 주택세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데다 '시가 80% 선' 방침도 예고한 바 있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별로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계층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꽤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서울의 목 좋은 아파트도 거래가 푹 끊긴 마당에 가뜩이나 인기 없는 단독이나 다세대, 특히 지방의 경우 과연 거래세와 보유세를 올리면 매매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점이다. 지방 소도시 단독주택에 살다가 대도시로 직장 등을 이유로 이사하려 할 경우 현금화가 원천적으로 안 될 가능성마저 농후하다고 본다.

그러면 누구도 단독주택에 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지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값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을 조사해 놓은 게 엉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당국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기 바란다. 작년 말 국회가 종부세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가장 많았던 지적은 바로 '준비 부족'이었다.

전국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모두 676만호에 이르고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값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나중에 재산세 고지를 받고 나면 '집값이 적정한가'를 논

고 엄청난 이익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당국은 새로운 재산세제를 집행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너무 죽이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세금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

2005년 1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 사설

외국자본 탈세 속수무책인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최근 행태는 우리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절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들의 봉이자 신나는 놀이터가 돼 있음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이다.

5년 전 제일은행을 단돈 5,000억 원에 사들인 뉴브리지캐피탈은 본전의 2~3배가 넘는 1조 2,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17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그동안 회수한 돈이 12조 3,000억 원에 불과, 결국 5조 3,0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우리 정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국내 빌딩 거래사상 최고가(9,300억 원 추정)로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 2,600억 원의 매매

차익을 올린 론스타도 세금을 낼 것 같지 않다. 외국계 법인이 빌딩을 사고팔 때 주식으로 거래하면 세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자본 역차별부터 없애야

국내경기의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피나는 구조조정과 개방의 상징으로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매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가 단기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얼마나 헐값에, 그리고 얼마나 큰 국부유출을 초래했는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 금융기법이나 기업금융 선진화도 연목구어에 불과했다.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할 때가 됐음도 상기시켜 준다. 정부가 외국자본에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금지, 국내은행이 줄줄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제일에 이은 외환, 한미은행 등이 그 예다. 국내외 자본이 공평한 룰 아래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왜곡과 국부유출을 막는 길이다.

세금 제대로 내면 오히려 바보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뉴브리지캐피탈이 한국 기업이라면 최고 4,3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은 83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려 하지 않는다. 본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있거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제조세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자본은 마치 바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다. 금년 초 한미은행 지분을 매각, 3년여 만에 무려 7,017억 원의 차익을 챙긴 칼라일 펀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금융을 받았던 각종 금융기관과 워크아웃 기업들이 올해부터 M&A(인수·합병)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총자산 123조 원의 우리은행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한통운 대우조선 등 우량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서울의 크고 작은 빌딩들도 외국자본의 손으로 속속 넘어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그들의 빌딩 구입은 점차 가속화, 작년 한 해에만 16곳 1조 8,000억 원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이 외국자본들은 우리

은행과 기업과 빌딩을 샀다가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특전을 만끽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외교부의 교섭과 조세당국의 노력에 따라서는 그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약 개정해서라도 과세 근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세협약의 개정이다. 룬스타의 경우 주식 매각을 통해 조세 탈피를 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식 매각이면 무조건 근거지 국가가 조세권을 갖는 나라의 하나인 벨기에에 그 본사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 등 25개국과는 부동산 거래성 주식매각의 경우에는 한국이 조세권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다. 벨기에와 조세협정을 영국 수준으로 재협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서도 그 근거지인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악질적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세금 회피의 특혜를 박탈하는 방향에서 국제 공조를 얻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심화될 외국자본의 세금 회피를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대책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17일자 헤럴드경제 사설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세제를 제대로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투기적 이익을 차단할 수단 있다면 부동산 투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무산됐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제도 정비 없이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최근 일고 있는 투기 조짐이 더 확산될지를 가름하는 핵심 제도다. 최근 아파트값 오름세는 서울 강

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촉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아파트값 오름세가 일반 아파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개발이익의 일부만을 환수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당국의 투기억제 정책도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대통령에서부터 실무 담당자들까지 두루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지난 연말 오락가락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1년여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리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또다시 2년 전과 같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투기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2005년 2월 14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자식 世代에게 빚 떠넘겨서는 안 돼

국민연금이 2047년부터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연금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現)세대는 월 급여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후(後)세대들은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마다 후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재정적인 부담을 다소 많이 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세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서 청년들이 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금개혁을 늦추면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세대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빚을 떠넘기려 한다면 '세대 이기주의'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적자금은 IMF쇼크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출된 돈이다.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손실액 49조원을 2002년부터 매년 2조원씩 갚아 나갈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대가 당연히 맡아야 할 부담까지 후세대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연금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고통이 커진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짧고 사회보장비 지출부담도 선진국처럼 많지 않다.

하루라도 일찍 고칠 수 있다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1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단독주택 보유자 퇴로 열어주어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될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과거 실제시가의 30~40% 정도인 과세 시가표준액이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유세 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단 대도시의 고가주택은 상당부분 오르지만 대부분의 중저가 주택은 도리어 지난

해보다 낮아져 정부가 의도하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고가주택이라도 보유세 상승률을 전년도의 50%로 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집을 감안한다면 이미 잠잠해진 거래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거래세 부담이 커져 단독주택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취득·등록세율을 기존의 5.8%에서 4%로 낮추었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전국 대부분의 단독주택 거래세가 많게는 두 배, 적어도 50%나 급증하기 때문에 오는 5월 이후 단독주택을 살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는 결국 단독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는 것으로 특히 저가주택에서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하려는 서민층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적은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데도 지금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 정책으로 6년 만에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이 무산될 정도로 청약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계약 포기도 늘고 있다. 반면에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양상이 나타날 조짐이다. 따

라서 정부는 지난해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더 컸던 단독주택의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 서민층의 주택거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16일자 서울경제신문 사설

2005년 2월호 통권 제10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월간재정포럼 / 2005년 2월 15일 발행 / 제10권 제2호(통권 제10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가라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